2023년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세 통계자료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 연구

- 2023. 12.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홍익대학교 교수 조형태

국세 통계자료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 연구

2023. 12.

연구책임자 조 형 태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연 구 원 김 완 용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연 구 원 유 현 수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 출 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세 통계자료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조형태 (홍익대학교 교수)

2023. 12.

사단법인 한국재정학회

연구 요약

❑ 세수추계는 국가재정운용의 시작점이고, 세수추계 오차의 정도가 현저할수록 후속되는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는 곧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임

- ㅇ 세수 추계와 실제 세수와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정부의 공공재 및 행정 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수 있음
- ㅇ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정부 이전재원(e.g. 지방교부세)에도 영향을 주어 지방정부의 행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세수추계 오차의 문제 즉 국세수입 예측력 하락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이며, 현행 세수추계는 대체적으로 거시자료에 기반한 세수예측임

- ㅇ 세수추계 오차 문제는 언론은 물론이고, 감사원, 시민단체, 입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임
- ㅇ 현재의 세수추계 모형은 GDP 등 거시변수에 토대를 둔 모형이어서, 납세자 수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제 변화(e.g. 공제 한도, 공제율 변경 등)를 반영할 수 없는 측면도 있음

❑ 이에 따라 미시자료에 의거한 세수추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왔고, 해외에서도 미시변수를 반영한 세수추계 모형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시데이터의 공개도 이뤄짐

- ㅇ 미국, 영국 등에서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오픈 포맷을 이용해 다양하고 세분화된 세금 등의 징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ㅇ 유럽에서는 과학적 목적 등으로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기밀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EC Regulation No. 223/2009)이 마련되었고 영국의 경우 특별허가(Special License)를 받은 연구자는 보다 자세한 납세자 자료에 접근 가능함
- ㅇ 미국의 경우 미시자료 사본(transcript)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우리나라 국세청(국세통계센터)에서도 2018년부터 납세자 수준의 미시자료 형태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추정을 시도하였음

○ 양도소득세는 법인세와 더불어 세수오차율이 가장 높은 세목이며, 현재까지도 예측의 어려움이 많은 세금임

○ 연금소득세는 세수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적정한 추계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짐

❑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계하기 위해 미시정보, 거시정보 및 지역 및 인적정보를 고려하여 설계하였음

○ 미시정보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 따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세율을 사용하여 추정을 실시하였음

항목	자료출처	모형	
		실제모형	추정모형
양도가액	국세통계센터	원본자료 사용	Ln[(연도·부동산소재지별 KB매매가격지수증감률의 평균값) × 취득가액]
취득가액	국세통계센터	원본자료 사용	원본자료 사용
필요경비	국세통계센터	원본자료 사용	원본자료 사용
= 양도차익	국세통계센터	원본자료 사용	추정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직접계산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추정장기보유특별공제 각 연도별 공제율을 이용하여 추정양도차익 곱하여 산출함
= 양도소득 금액	국세통계센터	원본자료 사용	추정양도차익-추정장기특별공제
감면대상 소득금액	(미고려)		
양도소득 기본공제	직접계산	250만원	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직접계산	원본자료 사용	추정양도소득금액-250만원
x 세율	직접계산	각 연도별 양도세율 적용	추정양도소득금액을 이용하여, 각 연도별 양도세율 적용
= 산출세액	국세통계센터	원본자료 사용	추정양도소득과세표준 × 표준세율

출처: 저자 작성

○ 거시정보는 한국은행기준금리, 경제활동인구,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양도소득세에 미칠 수 있는 거시정보를 통제하였음

항목	자료출처	적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	연도기준 평균값을 이용함
경제활동인구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천명)변수를 이용함
소비자 물가지수	국가통계포털 (KOSIS)	연도기준 평균값을 이용함

출처: 저자 작성

○ 지역 및 인적정보는 해당 인원의 부동산소재지, 연령 구간, 보유 기간을 사용하여 개별 표본의 특성을 통제하였음

항목	자료출처	적요
부동산소재지	국세통계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개별더미변수를 산출하여 지역특성을 통제
연령구간	국세통계센터	20세 미만=1, 20-30세미만=2, 30-40세미만=3, 40-50세미만=4, 50-60세미만=5, 60-70세미만=6, 70세이상=7로 구성되어있는 자료를 이용해 개별더미변수를 산출하여 인적특성을 통제
보유기간	국세통계센터	보유기간이 20년 초과인 경우, 20년으로 한정하며, 20년 미만인 경우 해당 보유기간을 더미로 사용

출처: 저자 작성

❑ 또한 연금소득세를 추계하기 위해 일정한 가정하에 연금소득 관련 항목을 계산하였고,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미시정보, 거시정보, 인적정보를 고려하여 설계하였음

○ 연금소득세 추정의 경우, 미시정보는 전년도 총수입금액, 한계세율을 이용하였고, 거시정보는 GDP, GDP증감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한국은행기준금리를 이용하였고, 인적정보는 연령과 성별을 이용함

❑ 본 연구에서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연금소득세 추계를 시도하였고, 아래와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나 자료 제약 등의 문제로 모형의 설명력, 오차율 등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해 유용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현재 이용가능한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토대로 구성된 세수추계 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실

제 세수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27%이고, 가중치는 2.291667, 연도별 세수 오차율은 약 3%~50% 수준임

- *Ln_추정양도소득세액 = [0.1717248 + (0.4277419*Ln_추정양도가액) + (0.3485907*Ln_취득가액) + (0.0231909*Ln_필요경비) + (0.8746994*추정과세표준세율) + (-0.0411536*Ln_추정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0.8866198*양도자산종류) + (-0.148515*한국은행기준금리) + (0.000074*경제활동인구) + (0.0840289*소비자물가지수) + (0.2271657*부동산소재지_부산) + (0.392885*부동산소재지_대구) + (-0.049928*부동산소재지_인천) + (0.3306322*부동산소재지_광주) + (-0.0726429*부동산소재지_대전) + (0.1187658*부동산소재지_울산) + (0.816103*부동산소재지_세종) + (-0.5794964*부동산소재지_경기도) + (-0.0460563*부동산소재지_강원도) + (-0.3948238*부동산소재지_충북) + (-0.6239534*부동산소재지_충남) + (-0.161559*부동산소재지_전북) + (0.0303928*부동산소재지_전남) + (-0.257425*부동산소재지_경북) + (-0.1770929*부동산소재지_경남) + (-0.3696811*연령구간_2) + (-0.3846749*연령구간_3) + (-0.3058103*연령구간_4) + (-0.2286158*연령구간_5) + (-0.1356396*연령구간_6) + (0.1904779*보유기간_2) + (0.2165534*보유기간_3) + (0.2493628*보유기간_4) + (0.3146582*보유기간_5) + (0.3956175*보유기간_6) + (0.3367209*보유기간_7) + (-0.1102069*보유기간_8) + (0.0305877*보유기간_9) + (-0.0261796*보유기간_10) + (-0.1176569*보유기간_11) + (-0.1044356*보유기간_12) + (-0.1467956*보유기간_13) + (-0.1526165*보유기간_14) + (-0.1638678*보유기간_15) + 0.0000000000418] x 2.291667(weight)*

- *추정양도소득세액 = exp (Ln_추정양도소득세액)*

출처: 저자 작성

○ 반면 연금소득세의 경우 아예 국세통계센터에서 미시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일정한 가정하에 계산된 연금소득세로 추계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추정된 연금소득세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약 15%이고, 가중치는 약 2.975936이고, 분석대상기간의 연도별 세수 오차율은 약 2%~13%수준임

- *Ln추정연금소득세 = [174.7 -9.399×lngdp +31.91×gdp증감률 −23.93×소비자물가상승률 −2.339×한국은행기준금리 +0.00371×연령+ 0.0541×성별 dummy −0.0463×ln전년도총수입금액 +8.873×한계세율 −0.000000000382] x 2.975936(weight)*

- *추정연금소득세 = exp (Ln 연금추정소득세)*

출처: 저자 작성

❑ 현재의 국세통계 기초자료가 거시변수를 활용한 세수추계의 보완 목적으로 활용되기에 부족한 이유는 아래와 같으며 세수 추계 목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 공개 기준의 불분명성)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가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비식별처리됨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공 기준이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세수추계 분석 목적으로 표본 선정 기준, 자료 제공의 범위를 공론화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따라 기초 자료의 공개 범위, 표본 추출 기준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공익목적으로 수행되는 세수추계 분석을 위해 어떻게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공론화의 시작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표본 추출 방법의 유용성)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의 표본 추출 방법은 국세통계연보 표축 구간별로 10% 추출하는 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표본 추출 방식은 전체 세수에 기여도가 높은 고소득 납세자 집단을 상대적으로 작게 반영되고, 저소득 집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하여 전체 세수를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고소득자 계층을 보다 세분화하여 표본이 추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 라이센스(Special License) 제도를 적용하여 해당 등급을 가진 자는 세수 추계 목적으로 높은 데이터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세데이터 간의 연계성) 현재의 국세통계 기초자료는 동일 납세자의 경상소득 데이터와 자본소득, 이전소득 간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지 않고, 양도 물건의 보유 기간의 자료(e.g. 공시지가 등) 연계도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양도소득과 같이 일시적으로 과세소득이 실현하는 유형의 소득에 대한 세수 추계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음. 외부의 기관 데이

터는 결합키를 활용하여 국세통계센터에서 결합이 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국세청 내부 부서간의 데이터 연계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 (기초자료 제공 범위) 국세통계 기초자료는 일반적으로 국세통계연보 상의 통계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납세자 수준의 미시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연금소득세 자료 등 국세통계연보상에는 공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료 수준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제공 여부도 연구자가 확인과정을 거쳐야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음. 기본적으로 국세통계연보에서 공시되는 통계자료의 기초자료는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어디까지 제공가능한지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센터 이용) 현재 국세통계센터는 서울과 세종에만 존재하여 이 센터에서만 자료 접근이 가능하며, 연구팀당 이용할 수 있는 pc의 제한, 인터넷 제약으로 통계프로그램 명령문 사용에 제한이 있는 문제가 있음. 자료의 보안 문제로 특정 센터에 자료 접근을 한정할 수 밖에 없는 문제는 이해는 되나, 자료의 기밀성이 낮고 전체 표본을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는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현자료의 원격 접근 허용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임
- (과세정보의 접근 문제) 국세통계센터가 자료 제공에 신중성을 가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에 기인함. 따라서 자료 제공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세자 인적 정보 비식별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서 세수 추계 목적으로 특정 기관에 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관의 연구자에게는 특별 라이센스(Special License)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현재의 거시자료로 수행되는 세수추계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가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오차율이 크다고 평가되는 양도소득세와 점차적으로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소득세의 추정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수추계 목적상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음

- 연금소득세의 경우 자료의 제한으로 실제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일정한 가정하에 계산된 연금소득세를 이용하여 분석이 되었다는 점
- 양도소득세의 경우 분석대상이 주택으로 한정되었고, 자료 제한으로 인해 양도 물건의 보유 단계 정보(e.g. 양도 물건의 보유 단계의 가격 정보, 양도자의 양도 이전의 경상소득 등)

가 없는 상태에서 양도 물건을 특정하여 분석이 되었다는 점

< 목 차 >

I. 서 론 ····· 1

II. 국세정보 공개 현황 분석 ····· 7

1. 우리나라 국세통계정보 현황 ····· 7
   가. 국세통계정보의 개관 ····· 7
   나. 국세통계센터의 역할 및 정보제공 ····· 12
   다. 국세통계 활용현황 ····· 19
   라. 관련 법령의 이해 ····· 31

2. 주요국의 사례 ····· 36
   가. 주요국의 조세·재정 관련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 36
   나. 주요국의 조세관련 통계 제공현황 ····· 39
   다. 시사점 ····· 51

III.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추정 ····· 54

IV.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한 연금소득세 추정 ····· 71

V. 문제점 및 제언 ····· 84

VI. 결론 ····· 96

참고문헌 ····· 101

첨부1: 국세통계연보 구조(2021년 귀속) ····· 104
첨부2: 데이터명세서(예시) ····· 123
첨부3: 데이터 수집과정 ····· 128

< 표 목 차 >

<표 1>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예측 오차율 ····· 2
<표 2> 국세수입의 세부항목별 오차율 분석: 2011~2021년 ····· 3
<표 3> 국세정보 관련 자료 및 규정 등의 현황 ····· 5
<표 4> 국세통계의 주요 내용 ····· 8
<표 5> 국세통계의 세목별 제공 데이터 내역 ····· 9
<표 6> 신규 과세정보 제공 사례 ····· 11
<표 7> 국세통계센터 제공 미시자료 항목 ····· 20
<표 8> 소득세법 별지 제40호 서식(4)와 국세통계센터 제공 자료 비교 ····· 23
<표 9> 소득세법 별지 제84호 서식과 국세통계센터 제공 자료 비교 ····· 25
<표 10> 부가가치세법 별지 제21호 서식과 국세통계센터 제공 자료 비교 ····· 27
<표 11> 주요국의 조세재정 관련 미시적 모의실험 모형 현황 ····· 36
<표 12> 사업소득자 신고서(Self-employment returns) ····· 49
<표 13> 공동기업 신고서(Partnership returns) ····· 50
<표 14> 양도소득세 추정 관련 제공 데이터 ····· 54
<표 15> 연도별 빈도분석 ····· 55
<표 16> 양도소득세 및 추정양도소득세 산출 모형(미시변수) ····· 56
<표 17> 연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동표 ····· 56
<표 18> 연도별 양도세득세 세율 변동표 ····· 57
<표 19> 양도소득세 및 추정양도소득세 산출 모형(거시변수) ····· 58
<표 20> 양도소득세 및 추정양도소득세 산출 모형(지역 및 인적특성변수) ····· 58
<표 21> 추정양도소득세 및 실제양도세 산출 모형 ····· 59
<표 22> 양도자산종류별 빈도분석 ····· 60
<표 23> 부동산소재지별 빈도분석 ····· 60
<표 24> 연령구간별 빈도분석 ····· 61
<표 25> 보유기간별 빈도분석 ····· 61
<표 26> 추정모형 및 실제모형 원본데이터 기술통계량 ····· 62
<표 27> 실제모형 기술통계량 ····· 63
<표 28> 추정모형 기술통계량 ····· 63
<표 29> 변수 간 상관계수 ····· 65

<표 30> 양도소득세 회귀분석 ····· 67
<표 31> 2015년-2021년 추정률 및 가중치 ····· 69
<표 32> 추정양도소득세 산출 모형 ····· 69
<표 33> 2015년-2021년 연도별적중률 ····· 70
<표 34> 연도별 연금소득세(원천분) 추이 ····· 71
<표 35> 2차 시도(연금) 요청 자료 ····· 71
<표 36> 국세통계연보 상의 총수입금액 연금 비중 ····· 72
<표 37> 연금유형별 적립금 비중 ····· 73
<표 38> 총수입금액, 연금총수입금액(추정),사적연금총수입금액(추정)의 분포 ····· 73
<표 39> 연금소득공제 산식 ····· 74
<표 40> 연도별 법정세율 ····· 75
<표 41> 연도별 연금소득세 기술통계량 ····· 76
<표 42> 변수 간 상관계수 ····· 77
<표 43> ln연금총수입금액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 78
<표 44> ln연금소득세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 79
<표 45> 추정연금도소득세 산출 모형 ····· 80
<표 46> 분석대상기간 전체의 추정연금소득세와 계산연금소득세 비교 ····· 80
<표 47> 연도별 추정연금소득세와 계산연금소득세 비교 ····· 81
<표 48> 연금소득 세법개정안 ····· 81
<표 49>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으로 인한 연금소득세 변동분 추정 ····· 82
<표 5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분포 ····· 87
<표 51> 비밀유지 예외 규정 ····· 92
<표 52> 대안 1의 신구조문 대비표 ····· 93
<표 53> 추정양도소득세 산출 모형 ····· 97
<표 54> 추정연금소득세 산출 모형 ····· 98
<첨표 1> 1차 시도 데이터 요청 자료(양도, 미양도 포함) ····· 128
<첨표 2> 2차 시도 데이터 요청 자료(양도건만 포함)_한국부동산원 포함 ····· 129
<첨표 3> 2차 시도 데이터 요청 자료(양도건만 포함)_한국부동산원 제외 ····· 130
<첨표 4> 3차 시도 데이터 요청 자료(양도 건만 포함) ····· 130
<첨표 5> 1차 시도(연금) 요청 자료 ····· 131
<첨표 6> 소득세법 별지24호 서식(5) 내용 ····· 133
<첨표 7> 2차 시도(연금) 요청 자료 ····· 134

< 그 림 목 차 >

[그림 1] 국세통계센터 제공자료 구축 현황 ····· 13
[그림 2] 국세통계센터의 이용절차 ····· 13
[그림 3] 결합전문기관 업무절차 ····· 16
[그림 4] 데이터 결합신청 절차 ····· 18
[그림 5] 미국 국세청 소득통계국 조직도(2022. 11. 기준) ····· 41

I. 서 론

❑ 세수추계 오차의 문제는 언론을 포함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문제이며, 제도나 방법 측면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음

- ㅇ 세수추계 오차 문제는 언론은 물론 감사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임[1)]
- ㅇ 세수추계 방법에 대한 대안 제시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상설화하자는 제도개선 주장도 있음(박명호, 2022)

❑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국세수입 예측력의 하락을 지적하면서 추계모형의 구축단위를 세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국세수입예측력의 하락을 지적한 선행연구도 있음(박명호, 2022)

- ㅇ 평균오차율은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1.44%에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9.62%로 과소추계 편의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고함
- ㅇ 평균절대백분율오차는 2000년부터 2009년 동안 4.00%에서 2020년부터 2022년 동안 11.17%로 예측 정확성도 하락하였음
- ㅇ 이런 국세수입의 예측오차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자산과세로부터 유발되는 측면이 있음

❑ 과거 기간 동안의 세수추계 오차와 세목별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아래의 세수추계 오차의 추정치는 주로 거시변수를 활용한 추정치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미시 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

- ㅇ 이 중 최근의 오차율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1) 3년 연속 세수오차에 “세수추계 모형부터 손질해야…외평기금 동원 궁여지책” 비판(경향신문 (2023.09.18.)), [세수 재추계 결과] 역대 최대 '적자 오차'…"추경은 없다" 재확인(아주경제 (2023.09.18.)) 등

〈표 1〉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예측 오차율

(단위: 조원, %)

	본예산	결산	오차	오차율	절대오차율
2000	79.70	92.93	−13.23	−14.24	14.24
2001	95.90	95.79	0.11	0.11	0.11
2002	103.65	103.97	−0.32	−0.31	0.31
2003	113.62	114.66	−1.04	−0.91	0.91
2004	122.07	117.80	4.27	3.63	3.63
2005	130.59	127.47	3.12	2.45	2.45
2006	135.33	138.04	−2.71	−1.96	1.96
2007	147.30	161.46	−14.16	−8.77	8.77
2008	165.56	167.31	−1.75	−1.04	1.04
2009	175.42	164.54	10.88	6.61	6.61
2010	170.46	177.72	−7.26	−4.09	4.09
2011	187.64	192.38	−4.74	−2.47	2.47
2012	205.76	203.01	2.74	1.35	1.35
2013	216.43	201.89	14.53	7.19	7.19
2014	216.45	205.52	10.93	5.32	5.32
2015	221.14	217.89	3.26	1.49	1.49
2016	222.94	242.56	−19.62	−8.09	8.09
2017	242.26	265.38	−23.12	−8.71	8.71
2018	268.13	293.57	−25.44	−8.67	8.67
2019	294.79	293.45	1.34	0.46	0.46
2020	292.00	285.55	6.45	2.26	2.26
2021	282.74	344.08	−61.34	−17.83	17.83
2022	343.38	396.65	−53.27	−13.43	13.43
기 간				<ME>	<MAPE>
2000~09				−1.44	4.00
2010~19				−1.62	4.78
2020~22				−9.67	11.17
전체기간				−2.59	5.28
과대추계 기간				3.09	
과소추계 기간				−6.96	

출처: 박명호(2022)

〈표 2〉 국세수입의 세부항목별 오차율 분석: 2011~2021년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ME	MAPE	2/3 Spread
총국세	−2.47	1.35	7.20	5.32	1.49	−8.09	−8.71	−8.67	0.46	2.26	−17.83	5.80	17.83	10.93
<일반회계>	−3.92	−0.56	6.90	4.97	1.44	−8.35	−9.04	−8.77	0.40	2.84	−17.59	5.89	17.59	11.61
내국세	−5.55	−1.68	7.94	4.88	1.36	−9.35	−10.31	−10.52	−0.07	1.66	−19.19	6.59	19.19	11.97
1. 소 득 세	−5.32	0.01	5.59	1.98	−5.58	−11.21	−12.49	−13.69	−3.82	−5.04	−21.29	7.82	21.29	12.50
신고분	−3.58	−7.13	6.42	1.79	−17.07	−20.01	−18.35	−24.08	−2.80	−13.99	−36.69	13.81	36.69	17.21
종합소득세	−22.54	−12.86	2.55	12.47	−1.58	−9.25	−9.77	−4.62	6.04	8.31	3.05	8.46	22.54	15.81
양도소득세	17.71	0.52	12.75	−13.46	−33.77	−31.29	−27.43	−42.96	−12.02	−29.14	−54.00	25.00	54.00	34.29
원천분	−6.34	4.38	5.11	2.09	2.37	−5.12	−8.34	−6.16	−4.48	1.62	−8.08	4.92	8.34	8.71
이자소득세	−2.55	5.99	17.68	36.03	30.15	24.77	−3.05	−2.80	−9.35	−19.06	15.52	15.18	36.03	27.82
배당소득세	22.12	25.54	10.45	4.84	−5.15	−7.26	−10.57	−20.08	−12.44	−12.62	−35.83	15.17	35.83	23.07
사업소득세	−1.70	1.00	6.32	2.89	−4.61	−6.68	−10.69	−4.62	−2.93	6.98	−1.35	4.53	10.69	7.51
근로소득세	−10.32	3.48	1.13	−1.70	2.53	−5.86	−9.33	−6.02	−3.25	2.26	−7.85	4.88	10.32	10.11
기타소득세	−6.04	−1.18	1.23	17.12	−7.94	3.67	−0.60	−7.06	−10.79	25.45	1.53	7.51	25.45	10.73
퇴직소득세	1.01	−7.94	75.86	−24.46	−26.78	−29.24	17.07	11.89	−8.80	7.43	3.73	19.48	75.86	36.36
2. 법 인 세	−7.96	−3.02	9.65	7.90	2.26	−11.74	−8.83	−11.12	9.80	16.04	−24.28	10.24	24.28	20.78
신고분	−9.96	−5.68	11.53	8.90	0.23	−16.30	−11.52	−11.62	15.64	18.78	−28.38	12.59	28.38	23.15
원천분	−1.46	4.93	4.77	5.37	7.65	3.54	1.76	−8.97	−14.10	7.25	−9.03	6.26	14.10	14.34
3. 상속 증여세	−7.22	−8.27	12.83	0.02	2.27	−2.24	−19.79	−16.40	−13.22	−19.93	−39.36	12.87	39.36	19.81
상속세	3.30	−25.92	28.43	18.43	4.03	−1.97	−12.95	−23.38	−14.13	−25.29	−51.94	19.07	51.94	29.31
증여세	−13.60	4.90	3.67	−10.65	1.17	−2.41	−23.40	−12.04	−12.67	-16.70	−28.52	11.79	28.52	17.87
4. 부가가치세	1.99	2.04	5.21	2.30	8.67	−6.04	−8.28	−3.82	−2.93	6.15	−6.39	4.89	8.67	11.25
5. 개별소비세	−9.48	13.16	7.08	6.36	−3.80	−2.61	−8.63	−2.65	5.97	10.95	7.49	7.11	13.16	11.29
6. 증권거래세	−8.37	15.42	47.50	27.81	−20.88	−15.05	−10.89	−35.93	1.35	−49.94	−50.41	25.78	50.41	51.35

7. 인 지 세	−14.67	1.56	2.72	−4.64	−24.40	−10.23	−1.32	6.23	11.62	9.02	−1.36	7.98	24.40	16.46
8. 과년도수입	7.04	−22.96	18.23	35.27	45.15	−15.41	−14.42	−22.19	−27.54	29.85	−10.77	22.62	45.15	52.04
교통에너지환경세	7.11	−0.89	−1.87	0.30	−4.19	−7.46	−1.12	6.88	1.47	12.84	−5.47	4.51	12.84	11.07
관 세	3.42	18.29	4.04	20.98	16.32	8.23	5.41	6.84	14.89	24.55	1.46	11.31	24.55	14.25
교육세	8.58	2.88	5.95	−3.21	−2.55	1.91	1.32	2.92	−4.82	10.55	3.97	4.42	10.55	8.50
종합부동산세	−3.07	−6.01	−10.56	−12.86	−8.43	−1.26	−14.35	−4.95	6.67	−7.77	−16.58	8.41	16.58	9.79
<특별회계>	−7.46	23.82	16.06	16.46	3.18	0.97	3.54	−4.76	2.60	−14.98	−24.66	10.77	24.66	23.52
주 세	4.63	−1.69	4.66	5.42	0.77	2.60	9.86	7.15	−1.97	10.61	21.54	6.45	21.54	9.09
농특세	−13.70	43.69	25.49	25.91	5.21	−0.46	−1.45	−13.55	6.68	−27.28	−38.53	18.36	43.69	39.19

출처: 박명호(2022)

❑ 특히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는 오차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ㅇ 지난 11년간 평균오차율이 -19.4%로 과소추계로의 중심성 이탈 수준이 높고, 평균절대백분율오차는 25.0%로 정확성이 낮고, 2/3 Spread 지표도 34.3%가 되어 예측불확실성이 높음(박명호, 2022)

❑ 이러한 세수오차에 대한 관심의 급증에 따라 국세정보의 제공범위 확대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세 정보의 제공은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청 훈령 등에서 기본적인 사항과 제공 유형을 규율받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통계자료, 기초자료, 표본자료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표 3〉 국세정보 관련 자료 및 규정 등의 현황

자료형태	근거법규	제공대상	제공내용	비고
통계자료	국세기본법§85조의6①~③ 국세기본법시행령67조	일반국민에 정기적 공개	「국세통계연보」	국세통계포털 등
통계자료 (국회 요구)	국세기본법§85조의6④ 국세기본법시행령67조	국회 소관 상임위, 국회예산정책처	세법 제정·개정안, 세입예산안 심사 또는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상임위)
통계자료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세기본법§85조의6⑥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의 요구 통계자료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기초자료	국세기본법§85조의6⑦ 국세기본법시행령67조의2	국세기본법§85조의6⑦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등 활용을 위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국세청 내 시설 이용(국세통계센터)
표본자료	국세기본법§85조의6⑧ 국세기본법시행령67조의3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이용하려는 자	표본형태로 처리한 소득세 작성 기초자료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자매체 수록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

출처: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국회예산정책처)

❑ 이 중 기초자료와 표본자료는 개인 단위의 자료로서 국세정보 제공범위 확대에 따라 나타났는데, 표본 추출의 적정성 등 다음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ㅇ 기초자료는 실제 납세자료를 기초로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추출항목 및 조건을 달리하여 연구의도에 맞춘 자료 제공 등이 가능하지만, 별도 절차가 요구되고 물리적 접근에 한계가 있음
- ㅇ 표본자료의 경우 접근과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고정된 양식에 기반하여 제한된 내용만을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음

❑ 이 중에서도 본 연구는 연구 의도에 따른 자료 제공이 가능한 국세통계 기초자료 제공방식과 그 내용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화하고 국세정보가 세수추계에 보다 실효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ㅇ 기초자료의 제공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국세신고서의 내용과 비교하고, 기존의 국세통계연보와도 대사 및 검토하고자 함
- ㅇ 표본추출 방식을 검토하여 대표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수행
- ㅇ 정보의 확보 절차에 있어 그 용이성이 어느 수준인지도 검토함

❑ 또한 국세통계센터가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소득세 분야 미시 추계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며, 특히 세수추계 오차 문제가 심한 양도소득세와 점차적으로 세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연금소득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현재의 제공된 국세정보로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지를 파악할 예정임

- ㅇ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 중 유효한 자료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양도소득세 추정 검토
- ㅇ 연금소득세 추정과 동시에 최근 개정세법에 반영된 연금소득세제의 세수 변화에 대한 추정도 검토함

II. 국세정보 공개 현황 분석

1. 우리나라 국세통계정보 현황

가. 국세통계정보의 개관

❑ 국세통계의 정의

○ 행안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빅데이터(Big Data in the Public Sector)'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의미

- 특히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등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특정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유형의 행정데이터를 통합한 형태를 의미(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 국세통계의 경우, 행정자료 중에서도 정형데이터에 해당하는데 이는 행정·규제·법집행 목적으로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에 의하여 작성 및 공개하고 있음
-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자료로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된 것을 말함
-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르면 '과세정보'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처럼, 공공빅데이터와 국세통계 및 과세정보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결국 세금과 관련된 국세통계는 납세자가 제출한 정보와 제3자 제공정보 및 기타 온라인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됨

❑ 국가승인통계 중에서 국세통계의 위치

○ 통계 작성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 사항의 성별 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2] 통계청장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함

-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

2) 통계법 제18조 제1항.

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통계법 제3조 제1호)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국가승인통계는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30개 분야에 걸쳐 모두 1,307종임
- 그 중에서 국세통계는 '정부·재정 분야' 21종의 통계 중 한 가지 항목으로서 작성기관은 국세청, 통계종류는 일반통계, 작성방법은 보고통계[3]로 구분하고 있음

❑ 국세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세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음

〈표 4〉 국세통계의 주요 내용

통계명	국세통계
승인번호/일자	133001 / 19761207
작성기관/통계 분야	국세청 / 정부·재정
통계 종류/작성 방법	일반통계 / 보고통계
작성 목적	국세의 세목별 징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세입 구조 실태, 변동 등에 따른 대책 수립, 경제효과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작성주기/조사 대상/대상지역	1년 / 기타 / 전국
조사대상 기간/조사실시 기간	1월 1일~12월 31일 / 1월 1일~1월 31일
작성체계	세무서 → 지방국세청 → 국세청
공표주기/공표시기	1년 / 작성 기준 연도 익년 12월
Open API 제공 여부	미제공

출처 : 국세청. 2019.『국세통계』통계정보보고서, 한국재정정보원. 2020.「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p.30.

- 연말공개(책자 발간 및 온라인 공개) : 국세통계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12월에 공개

3) 통계는 작성방법에 따라 조사통계와 보고통계, 가공통계로 구분할 수 있음(2020 통계행정편람, 통계청)
- 보고통계 : 법령에 의한 개인,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 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로부터 작성되는 통계로 최근에는 행정통계라고도 함. 보고통계는 조사대상 집단을 전수로 파악할 수 있어 세부적인통계작성 가능
- 조사통계 :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statistical survey)를 통해 얻어진 통계로 조사대상 전체를 모두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일부분만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나눌 수 있음.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조사통계를 작성할 경우 예산과 조사원 확보, 응답자의 비협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
- 가공통계 : 조사통계나 보고통계에 어떠한 연산을 추가해서 작성한 통계로 해석적 특성이 있는 통계

- 분기별공개(온라인 공개) :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연구를 지원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국세통계를 2회 공개하여 왔음
- 2021년부터는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시기에 따른 분기별공개로 전환하고 국세통계포털(TASIS)를 통해 온라인(https://tasis.nts.go.kr)으로 공개하고 있음

○ 국세통계를 통해 제공하는 통계표의 제목은 아래 <표 5>와 같음
- 13개 세목 등 총 15개 분야 552종의 통계표를 공개하고 있음[4)]
- 국세통계 공개항목은 2015년 396개, 2016년 418개, 2017년 440개, 2018년 490개, 2019년 510개, 2020년 538개, 2021년 546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세청 소관 국세의 세목별 신고·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세입구조 실태, 변동 등에 따른 정책수립, 경제효과 분석 등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

〈표 5〉 국세통계의 세목별 제공 데이터 내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수)
1.총괄	1-1.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1-2. 국세 징세비 현황 1-3. 세목별·지역별 납세인원 현황	3
2. 징수	2-1. 세수 현황 2-2. 환급현황 2-3. 체납액 정리 현황 2-4. 수납 현황 2-5. 납세유예 실적	35
3. 종합소득세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3-2.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 3-4. 계정과목 신고 현황 3-5.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54
4. 원천세	4-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현황 4-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4-3. 기타 연말정산 신고 현황 4-4. 기타 원천징수 신고 현황	37
5. 양도세	·5-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5-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5-3.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5-4. 기타 양도소득세 현황	43
6. 상속증여세	6-1. 상속세 신고 현황 6-2. 상속세 결정 현황	34

4) 국세통계연보의 소분류 내용은 별첨으로 제시됨

	6-3. 증여세 신고 현황 6-4. 증여세 결정 현황	
7. 종합부동산세	7-1.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7-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7-3.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7-4.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7-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현황	15
8. 법인세	8-1. 법인세 신고 현황 8-2.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8-3. 법인세 신고 주요항목 명세서 8-4. 법인의 재무제표 신고 현황 8-5. 법인세 결정·경정 및 징수 실적 8-6. 법인수 8-7. 공익법인	76
9. 부가가치세	9-1.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총괄 9-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9-3.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9-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9-5. 부가가치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9-6.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신고 현황 9-7. 부가가치세 결정 경정 현황 9-8. 사업자 현황 9-9. 전자 세원관리 현황 9-1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	165
10. 주세	10-1. 주세 신고 현황 10-2. 주류 출고 현황 10-3. 주류 면허 현황	12
11. 소비제세	11-1. 소비제세 신고 현황 총괄 11-2.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11-3. 개별소비세 주요품목별·지역별 신고 현황 11-4. 개별소비세 감면 신고 현황 1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11-6.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신고 현황 11-7.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1/2) 11-8.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 현황(1/2) 11-9. 인지세 납부 현황 11-10. 인지세 과세문서 종류별 납부 현황 11-11. 교육세의 세원별 현황 11-12. 농어촌특별세의 세원별 현황	6
12. 국제조세	12-1. 외국법인 현황 12-2. 외국인투자법인 현황 12-3. 외국인 소득세 신고 현황 12-4. 외국계기업 국내진출 현황 12-5.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30
13. 세무조사	13-1. 개인사업자 조사 현황 13-2. 양도소득세 조사 현황 13-3. 법인사업자 조사 현황 13-4. 부가가치세 조사 현황	3

	13-5.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현황 13-6. 주식변동 조사 현황 13-7. 자료상 조사 현황 13-8.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 현황 13-9. 탈세제보자료 처리 현황 13-1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 13-11. FIU 제공정보 이용 조사 현황 13-12. FIU 제공정보 체납징수 활용 현황 13-13. 상속·증여세 조사 현황 13-14. 차명계좌신고 처리 현황 13-15.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13-16. 가짜석유 불법유통 추적조사 현황 13-17.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업태별 조사 현황 13-18. 중점관리 분야 조사 현황	
14. 근로자녀장려금	14-1. 근로·자녀장려금 신고현황 종괄 14-2. 근로·자녀장려금별 신청 현황 14-3. 근로·자녀장려금별 지급 현황 14-4.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	111
15. 기타	15-1. 납세자 권리 구제 15-2. 납세자 권리 보호 15-3.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 등	22

출처 : 국세통계 홈페이지(https://stats.nts.go.kr/)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5)

○ 2020년에는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 부과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26종)를 공정위, 국토부 등에 새롭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행정부 밖의 한국은행도 포함됨

〈표 6〉 신규 과세정보 제공 사례

수요기관	제 공 정 보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법상 담합·사익편취 혐의, 부당내부거래 등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정보(6종)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개정·시행('20. 1. 1.)
인사혁신처	▸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 임의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퇴직공무원의 기타소득 과세정보(1종) ▸근거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개정·시행('20. 6. 4.)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작성에 추가로 필요한 과세정보(4종) - (기존) 표준재무제표 등 → (추가) 업종별 매출·매입내역 등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한국은행법」 제86조
행정안전부	▸국세증명의 발급·유통·제출 편의제고를 위해 정부24(전자지갑)에 납세증명서 등의 과세정보 제공(15종) ▸근거법령 : 전자정부법 제9조('20년 말 시행)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2020. 6. 30.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 추진"

5) 국세청 보도자료. 2020. 6. 30.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 추진" 2019년 38개 기관에 제공하던 238종 과세정보를 2020년 266종으로 확대

나. 국세통계센터의 역할 및 정보제공

(1) 국세통계센터의 역할

❑ 국세통계센터 개요

○ 국세통계센터는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임

-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이용자가 조세·재정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국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분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최초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24개), 국회(사무처, 예정처 등 5개 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을 이용대상으로 하였음
-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의 경우 당초에는 국세청장과 업무협약(MOU) 필요하였으나,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개정(2021.2.10.)을 통해 업무협약 체결 없이 이용신청 및 승인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되었음
- 2018년 6월 세종에 개소한 이래 수도권 소재 이용기관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서울분원을 설치하였음[6)]

○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조세재정연구원, 통계청 등에 정책 수립, 연구·분석 지원을 위한 맞춤형 비식별 데이터 제공하고 있음

- 2018년 6월 국세통계센터 개소 이후 국세통계센터 설치·운영 및 이용대상 확대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였음(국세기본법 제85조의6 ⑦ 신설)

○ 현재 기초자료를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특정 납세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후 통계센터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총 9개 분야의 데이터셋[7)]으로 구성된 것을 발표

---

6) 국세기본법 §85의6 ('19. 12. 31. 개정) 및 시행령 §67의2 ('20. 2. 11. 개정), 국세통계센터 운영규정(훈령) §6 ('21. 2. 10. 개정)

7) 연구기간 동안 조회된 데이터 신청 단위는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로 7개 분야였음

[그림 1] 국세통계센터 제공자료 구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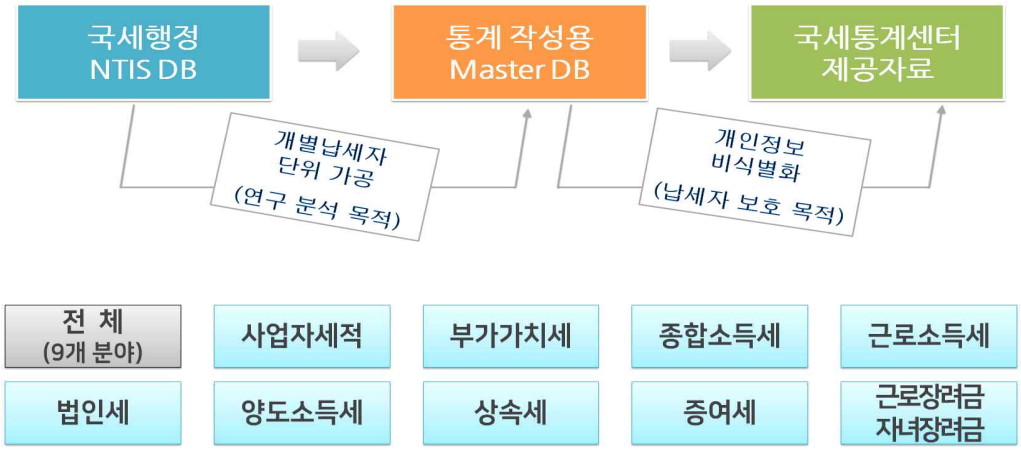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신설" 2020.9.24.

❑ 국세통계센터의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2] 국세통계센터의 이용절차

(1단계) 이용 방법, 자료목록 등에 관한 문의 및 상담

(2단계) 이용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 이용신청 범위와 연구목적 부합 여부 등을 검토·승인

(3단계)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비식별 처리하여 이용자 맞춤형 기초자료 제공

(4단계)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기초자료 연구·분석

(5단계) 이용종료 후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출신청서 작성 및 제출

(6단계) 분석결과물에 대해 연구목적과 통계왜곡, 개인 식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반출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신설" 2020.9.24.

○ (사전상담) 사전상담 시에는 연구목적에 맞는 자료 변수 등 이용 관련 사전상담이 이뤄짐

– 이용가능한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연구계획서 및 요청자료 목록이 국세통계센터 이메일(ntsdata@korea.kr)로 발송되면

협의가 이뤄짐

- 다음 단계인 이용신청 단계로 가기 전에 국세통계센터 담당자와 국세청 소관부서(e.g.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등) 간의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음

○ (이용신청) 이용신청 단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센터 이용 신청 접수 단계가 이뤄지며 소관부서의 공식적인 심의 및 이용신청 승인이 이뤄짐

- 이용신청서, 재직(또는 기타 소속)증명서, 연구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등의 서류가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됨
- 제공 항목에 대한 소관부서 심의가 이뤄지고, 이용신청 승인이 이뤄짐(이용신청 범위와 연구목적 부합 여부 등을 검토·승인)

○ (센터이용 및 분석) 데이터의 이용신청이 승인이 이뤄지면 공식적으로는 약 30일이 경과되어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가 이용가능하게 되고, 국세통계센터의 방문을 통해서만 분석이 가능해짐

- 세종 본원 또는 서울 분원에 방문하여 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온라인 접속을 통한 이용은 불가함
- 센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그 이외의 시간에는 사용이 불가함

○ (이용종료 및 반출신청) 데이터 분석이 완료되면 분석 결과는 반출가능하나 별도의 반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국세통계센터의 승인이 필요하며 반출 신청 후 공식적으로 최소 약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됨

- 반출 시 기초데이터의 반출은 불가하며, 분석된 통계 결과표(e.g. 기초통계량, 상관 분석, 회귀 분석 결과 등)만 반출이 가능함
- 통계 결과표 상에서도 특정 납세자를 지칭할 수 있는 수치는 반출될 수 없음(e.g. 표본의 최소값, 최대값)

○ (분석결과물 반출) 국세통계누리집을 통해 반출 신청을 하면 승인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수령할 수 있음

- 분석결과물에 대해 개인 식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반출
- 공식적으로 최소 약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됨
-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반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운로드 가능함

❑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음(국세통계센터 운영규정 제15조)

- 기초자료는 반드시 국세통계센터내에서만 이용가능하며, 외부반출 금지
- 기초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용

도 사용 금지

- 기초자료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고자 시도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연구 중에 있는 중간결과물은 반출하거나 외부에 공표할 수 없으며, 승인받은 최종 연구 분석물에 한하여 반출 가능[8)]
- 분석 결과를 언론 보도나 출판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해야함
- 분석 결과가 학술지나 논문, 기타 서적등에 등재되거나 출판된 경우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함
- 기타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 사항 준수
-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 할 경우 국세통계센터의 이용이 중단 및 제한됨

(2)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서의 국세통계센터

❑ 국세통계센터는 외부데이터와 결합 가능한 신용정보법 상의 데이터전문기관 및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결합전문기관임

- ㅇ 비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의 데이터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결합전문기관에서 수행하며 국세청은 2022년 4월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됨
- ㅇ 금융분야와 금융/비금융분야의 데이터 결합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하여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수행하며 국세청은 2020년 12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됨

8)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중간결과물은 3회까지 반출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최종결과물도 반출 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 국세데이터와 결합과 관련된 결합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3] 결합전문기관 업무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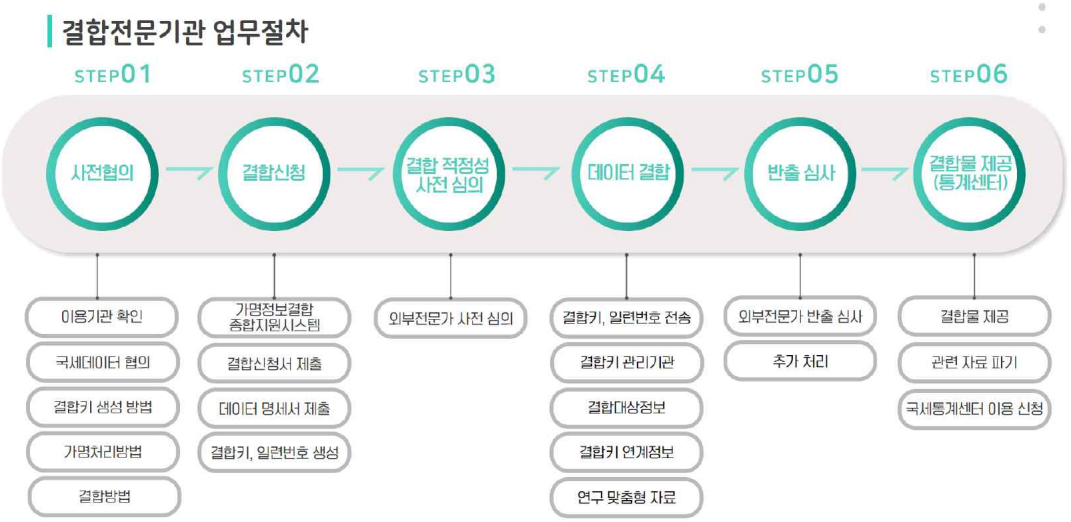

출처 : 결합전문기관 결합절차 소개 자료 발췌본(국세통계센터 제공)

○ (사전협의) 결합키 생성을 위한 공통속성자, 생성방식, 데이터 전송방법을 협의

- 사전 준비로 결합을 신청하는 기관은 가명정보 결합 목적을 정하고, 결합가능 정보를 탐색후, 목적별 계획서를 작성
- 가명정보 제공기관과 국세통계센터 간의 사전협의(가명정보, 결합 일정 및 절차)가 있어야 하며, 결합키 관리기관인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도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여야 함

○ (결합신청) 결합신청기관은 결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함

- 연구계획서, 사전 가명처리 수행 확약서, 보안서약서, 정보집합물의 데이터 명세서를 이용기관별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데이터 명세서[9]는 모집단 데이터의 속성, 분포 등을 포함하는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데이터 소유기관이 작성해야 함)
- 복수의 결합신청기관은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전심의)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결합신청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짐

○ (정보집합물 전달) 결합신청기관은 정보집합물을 국세통계센터에 전달함

- 결합신청기관은 국세청이 사전 배부하는 보안 USB, 파일암호화, 암호화된

9) 첨부 2 서식 참조

통신망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정보집합물을 전달함

- 이때 결합키(이름+생년월일+성별 3개 정도를 조합하여 구성. 주민등록번호로 결합 불가)와 일련번호가 결합키관리기관인 KISA를 경유하여 국세통계센터로 수신되며, 일련번호와 결합대상정보가 국세청으로 수신됨
- 가명처리 수준 검토가 이뤄지며 필요 시 추가 처리 요청도 이뤄질 수 있음

○ (결합) 국세통계센터 내 결합공간에서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업무가 수행됨

○ (적정성 평가) 적정성 평가 위원회에서 결합된 정보집합물간의 결합 적정 여부를 검토함

- 전원찬성인 경우 적정으로 판정됨
- 결합신청기관은 사후관리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평가에 대한 결과물을 수령하게 됨

○ (과세자료와의 결합 및 국세통계센터 이용) 다음으로 정보집합물과 과세자료가 결합되고, 그 결합물이 국세통계센터에서 이용됨

- 앞서 언급된 국세통계센터의 이용절차가 적용됨
-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활용 및 분석되며, 국세통계센터 이용 규정이 준수되어야 함
- 이용 후 관련파일은 일체 파기됨

❑ 실무적으로 결합의 신청 접수부터 결합 반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적어도 2개월이 소요됨

○ 현재 국세통계센터에 접수된 건 중 1년이 넘게 진행된 건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짐

[그림 4] 데이터 결합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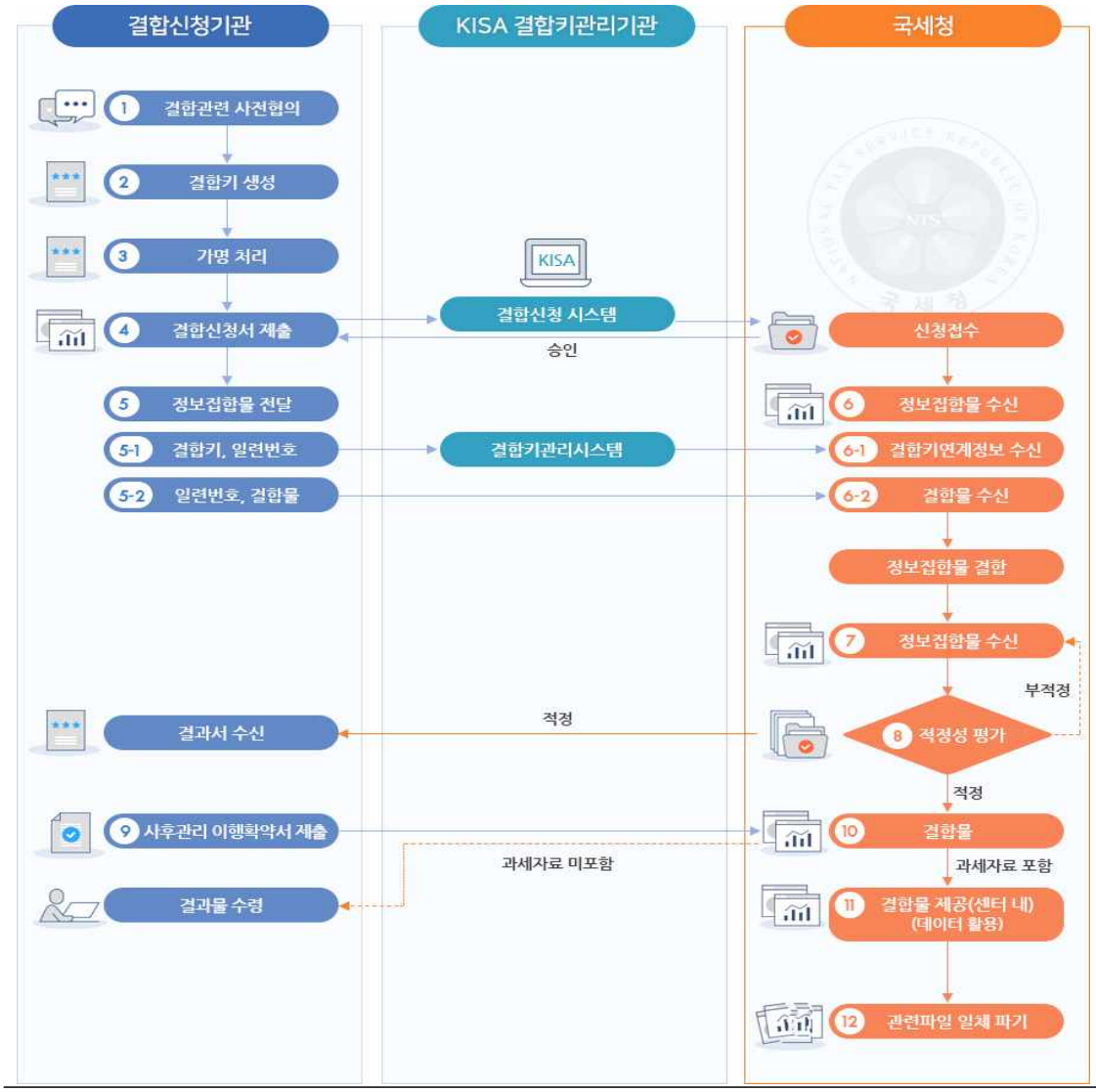

출처 : 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https://datalab.nts.go.kr/)

❑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결합을 하는 경우 결합키관리기관을 통하는 경유하는 결합 절차가 생략됨

○ 결합전문기관으로서 비금융분야간의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결합키관리기관(가명정보결합 종합지원시스템 : https://link.privacy.go.kr/nadac/index.do)을 통하여 결합키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전문기관과 차이가 존재함

다. 국세통계 활용현황

❑ 국세통계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에 따라 국회의 의정활동 및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계 등의 연구수행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ㅇ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중 국세통계를 활용한 연구가 존재함

❑ 국세통계센터를 활용하는 연구는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서 더욱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됨[10)]

- ㅇ 우리나라는 2018년 도입이후 연평균 이용실적이 62건, 미국은 2012년 도입 이후 연평균 9건, 영국은 2011년 도입이후 연평균 13건의 이용실적을 보고하고 있음
- ㅇ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한 정책연구의 사례로 다음을 비롯하여 128개 연구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음[11)]
  - – 기업성장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와 소득세 효과에 대한 연구(한국노동연구원)
  - –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심층분석(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행태반응 분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 ㅇ 또한 소득세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유료제공)과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 번째 공개사례라 밝히고 있음
  - – 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용신청[12)]을 통하여 자료의 사용목적 등을 밝히고 승인을 통하여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음
  - – 연도별 종합소득세 표본자료는 소득분위, 성별, 연령대, 지역, 업태, 신고유형, 기장의무,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ㅇ 현행 국세통계는 전체 신고서를 대상으로 합산한 거시적 통계만을 공개하고 있어 특정 제도가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과 같은 정책효과 분석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함

---

10) 국세통계센터 홍보브로슈어, 국세데이터담당관실, 202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국 데이터랩(Datalab) 운영 및 외부기관 제공사례, 2022. 8.를 인용한 것으로 해당 홍보브로슈어에 언급하고 있으나, 당 원문은 비공개 문헌임)

11) 국세통계센터 홍보브로슈어, 국세데이터담당관실, 2023.

12) https://datalab.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main/index.xml

- 선행연구(정다운 외, 2018)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국세통계센터 개소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함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장을 달리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고자 함

(3)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가능한 미시 자료

○ 국세통계 기초자료로써 제공가능한 미시 자료는 다음 표와 같으며 주로 세액 계산 단계별 수치가 제공됨[13)]

〈표 7〉 국세통계센터 제공 미시자료 항목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과세기간년도, 신고서기장의무구분코드, 신고서소득세신고유형코드, 거주자구분코드, 내외국인구분코드, 성별코드, 연령, 시도코드, 주업종코드, 업태코드, 총수입합계금액, 부동산사업소득총수입금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부동산소득총수입금액, 근로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합계금액, 소득금액, 부동산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과세소득금액, 인적공제금액, 기본공제금액, 추가공제금액,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 기타연금보험료공제금액, 특별공제합계금액, 실제소득공제금액,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소득세법세액공제금액, 공제세액, 감면세액, 결정세액, 가산세합계세엑, 추가납부세액,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환급예정세액, 차감납부예정세액
	종합소득세 대차대조표 주요계정과목 현황	
		과세기간년도, 주업종코드, 업태코드, 소득세신고유형코드,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금, 당기순손익, 자본총계
	종합소득세 손익계산서 주요계정과목 현황	
		과세기간년도, 주업종코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원천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내역	
		귀속년도, 귀속년도시작일자, 귀속년도종료일자, 신고구분상세코드, 제출년월, 징수의무자시도코드,소득자연령,,소득자성별코드,과세대상급여금액, 근로소득공제합계금액, 과세대상소득금액, 기본공제합계금액, 추가공제합계금액, 연금보험료공제합계금액, 특별공제합계금액, 차가감소득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 근로소득산출세액, 세액감면합계금액, 세액공제합계금액, 소득세결정세액, 결정세액합계금액
	사업(연말정산)소득세 신고내역	

13) 이용신청 단계에서 국세통계센터에 신청가능한 데이터 목록(2021년 귀속 기준)을 정리한 자료임

		귀속년도, 사업소득구분코드, 시도코드, 성별코드, 연령, 내외국인구분코드, 지급금액, 보험모집수입합계금액, 방문판매수입합계금액, 음료배달수입합계금액,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세과세표준금액, 사업소득연말정산산출세액, 합계지급금액, 소득세결정세액, 농어촌특별세결정세액, 주민세결정세액, 결정세액합계금액, 소득세차감징수세액, 농어촌특별세차감징수세액, 주민세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합계금액
양도세		
	양도소득세 예정, 확정 신고내역	
		과세기간년월, 신고구분코드, 양도자산종류구분코드, 시도명, 성별코드, 연령,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금액,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내역	
		과세기간년월, 연령, 성별코드, 시도명,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인상속재산가액, 상속인제외유증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금액, 기초공제합계금액, 산출세액합계금액, 공제합계금액, 과세표준금액, 결정세액
	증여세 신고내역	
		과세기간년월, 연령, 성별코드, 시도명, 증여재산가액합계금액,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세액공제합계, 결정세액(자진납부할세액)
법인세		
	법인세 대차대조표 주요 계정과목 현황	
	법인세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과목 현황	
		Ⅰ. 매출액, Ⅴ. 영업손익,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Ⅸ. 당기순손익
	법인세 신고내역	
		사업연도, 주업종코드, 업태, 개별연결구분코드, 법인종류, 영리여부, 법인규모, 조정구분, 최저한세적용여부, 수입금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결산서상당기순손익, 익금산입, 손금산입, 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산출_과세표준, 산출세액 총계, 산출세액, 조정전납부할세액, 차감납부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과세기간년월, 개인법인구분코드, 사업자구분코드, 주업종코드, 업태명, 시도코드, 과세분매출과세표준금액, 과세분매출세액, 영세율매출과세표준금액, 면세분매출수입금액, 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차감환급할세액, 과세표준_금액, 매출과세세금계산서발급_금액, 매출과세세금계산서발급_세액, 매출과세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_금액, 매출과세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_세액, 매출과세카드현금발행_금액, 매출과세카드현금발행_세액, 매출과세기타_금액, 매출과세기타_세액, 매출영세율세금계산서발급_금액, 매출영세율기타_금액, 매출대손세액가감_세액, 매입세금계산서수취일반_금액, 매입세금계산서수취일반_세액, 매입세금계산서수취고정자산_금액,

		매입세금계산서수취고정자산_세액, 매입신용카드매출전표등제출분일반매입_금액, 매입신용카드매출전표등제출분일반매입_세액, 매입신용카드매출전표등제출분고정자산_금액, 매입신용카드매출전표등제출분고정자산_세액, 의제매입공제_금액, 의제매입공제_세액, 매입세액과세표준금액, 매입세액_차감합계세액, 공제받지못할매입합계_금액, 공제받지못할매입합계_세액, 매입세액차감합계_금액, 매입세액차감합계_세액, 납부환급세액, 과세표준명세합계수입금액, 간이_1차과세표준과세_금액, 간이_1차과세표준과세_세액, 간이_2차과세표준과세_금액, 간이_2차과세표준과세_세액, 간이_3차과세표준과세_금액, 간이_3차과세표준과세_세액, 간이_4차과세표준과세_금액, 간이_4차과세표준과세_세액, 간이_과세표준영세율금액, 간이_매입세금계산서공제_금액, 간이_매입세금계산서공제_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공제_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공제_세액, 기타공제세액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내역	
		귀속년도, 시도명, 복지신청유형코드, 근로장려신청금액, 자녀장려신청금액, 가구원구성코드, 자영업사업자유형코드, 주업종코드, 환산대상소득유형코드, 근로장려세제대상금액, 복지업종소득조정율, 성별코드, EITC연령대코드, 부양아동규모코드, 부양자녀수, 사업장시도명, 기한후여부, 복지대상종교인소득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내역	
		귀속년도, 시도명, 법정동코드, 복지신청유형코드, 근로장려신청금액, 자녀장려신청금액, 복지지급유형코드, 근로장려심사금액, 자녀장려심사금액, 가구원구성코드, 근로장려금액산정구간코드, 자녀장려금액산정구간코드, 환산대상소득유형코드, 근로장려세제대상금액, 복지업종소득조정율, 성별코드, EITC연령대코드, 부양아동규모코드, 근로구분코드, 복지근로구분코드, 부양자녀수, 자녀장려수급모형구간명, 자녀장려복지금액, 사업장시도명, 기한후여부, 복지대상종교인소득금액, 세대재산합계금액, 근로장려결정결과구분코드, 자녀장려결정결과구분코드, 근로장려세제대상근로소득금액, 근로장려세제대상사업소득금액, 자가주택건수, 근로장려지급제외사유코드, 자녀장려지급제외사유코드, 근로장려수급대상여부, 자녀장려수급대상여부, 근로장려지급제외대상여부, 자녀장려지급제외대상여부, 복지지급상세유형코드, 심사결정여부

출처 :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 이용신청 목록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2021년 귀속 기준)

○ 이러한 제공가능한 미시 자료는 신고서 상의 모든 자료는 아니며, 일부의 경우 합계금액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신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가 있음

-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상세 내역이 이용가능한 정보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구분이 되지 않음.

예를 들어 별지 제40호서식(4)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자용) 상에서 기초자료로 제공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표 8〉 소득세법 별지 제40호 서식(4)와 국세통계센터 제공 자료 비교

별지제40호서식(4)(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자용)			
	1. 기본사항		제공여부
		1. 성명	N/A
		2. 주민등록번호	N/A
		3. 주소	N/A
		4. 전자우편주소	N/A
		5. 주소지 전화번호	N/A
		6. 주사업장 전화번호	N/A
		7. 휴대전화번호	N/A
		8. 신고유형	O
		9. 기장의무	O
		10. 신고구분	O
	2. 환급금 계좌신고		
		11. 금융기관/체신관서명	N/A
		12. 계좌번호	N/A
	3.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13. 종합소득금액	O
		14. 소득공제	O
		15. 기본공제(본인)	X
		16. 기본공제(배우자)	X
		17. 기본공제(부양가족)	X
		18. 추가공제(경로우대자)	X
		19. 추가공제(장애인)	X
		20. 추가공제(부녀자)	X
		21. 추가공제(한부모가족)	X
		22.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X
		23. 연금보험료공제	O
		2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X
		25. 개인연금저축공제	X
		2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X
		2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X
		28.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X
		29.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X
		30.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X
		31. 과세표준	O
		32. 세율	X
		33. 산출세액	O
		3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	X
		35.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X
		36. 세액공제	O

		37.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X
		38. 자녀세액공제	X
		39. 연금계좌세액공제	X
		40. 기부금세액공제	X
		41. 표준세액공제	X
		42. 납세조합공제	X
		43.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X
		44.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X
		45. 전자신고세액공제	X
		46. 결정세액	O
		47. 가산세액	O
		48. 가산세액(무신고)	X
		49. 가산세액(과소신고)	X
		50. 가산세액(납부지연)	X
		51. 가산세액(보고 불성실)	X
		52. 가산세액(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X
		53. 가산세액(무기장)	X
		54. 가산세액(신용카드거부)	X
		55. 가산세액(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X
		56. 가산세액(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X
		57. 총결정세액	O
		58. 기납부세액	O
		59.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O
	4.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60. 과세표준	N/A
		61. 세율	N/A
		62. 산출세액	N/A
		63. 가산세액	N/A
		64. 합계	N/A
		65. 기납부세액	N/A
		66. 납부할 세액	N/A
	5. 사업소득명세		
		67. 일련번호	N/A
		68. 사업장 상호	N/A
		69. 사업자등록번호	N/A
		70. 소득구분코드	O
		71. 업종코드	O
		72. 총수입금액	O
		73. 단순경비율	X
		74. 필요경비	O
		75. 소득금액	O
	6. 원천징수세액		
		76.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X
		77.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사업자등록번호	X
	7.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명세		
		78. 소득구분코드	X
		79. 일련번호	X

		80. 소득의 지급자 상호	X
		81. 소득의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X
		82. 총수입금액	X
		83. 필요경비	X
		84. 소득금액	X
		85. 원천징수세액(소득세)	X
		86. 원천징수세액(농어촌특별세)	X
	8.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명세		
		87. 특별소득공제(보험료 공제)	X
		88.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공제)	X
		89. 그밖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X
		90. 그밖의 소득공제(우리사주조합 출연금)	X
		91. 그밖의 소득공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X
		92.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등 사용액)	X
		93. 그밖의 소득공제(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X
		94. 합계	O
	9.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95.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X
		96.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	X
		97.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X
		98. 조세조약	X
		99. 합계	O
	10.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100. 근로소득세액공제	X
		101. 특별세액공제(보험료)	X
		102. 특별세액공제(의료비)	X
		103. 특별세액공제(교육비)	X
		104.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X
		105. 외국납부세액공제	X
		106. 월세액 세액공제	X
		107. 합계	O

주) O: 제공, X: 미제공, N/A: 개인정보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것으로 보이는 항목
출처: 신고서 서식과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 이용 신청 목록을 비교하여 저자작성

–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액공제, 면적, 거주 기간 등의 정보가 이용될 수 없으며, 예정신고 수치만 제공되고, 확정신고 수치는 제공되지 않음. 세액도 산출세액까지만 제공됨

〈표 9〉 소득세법 별지 제84호 서식과 국세통계센터 제공 자료 비교

별지제84호서식(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공 여부
	1. 신고인	N/A
	2. 양수인	N/A
	3. 세율구분	X
	4. 양도소득금액	O
	5. 기신고, 결정, 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X

	6.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X
	7. 양도소득기본공제	O
	8. 과세표준	O
	9. 세율	O
	10. 산출세액	O
	11. 감면세액	X
	12. 외국납부세액공제	X
	13. 원천징수세액공제	X
	14. 전자신고세액공제	X
	15. 가산세	X
	16.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조정공제	X
	17. 납부할 세액	X
	18. 분납할 세액	X
	19. 납부세액	X
	20. 환급세액	X
	21. 소득세 감면세액	X
	22. 세율	X
	23. 산출세액	O
	24. 수정신고가산세 등	X
	25.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X
	26. 납부할 세액	X
	27. 분납할 세액	X
	28. 납부세액	X
	29. 환급세액	X
	30. 금융기관명	N/A
	31. 계좌번호	N/A
별지제84호서식부표1(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제공 여부
	1. 세율구분	X
	2. 소재지국	X
	3. 자산종류	O
	4. 양도일	X
	5. 취득일	X
	6. 총면적	X
	7. 양도면적	X
	8. 취득면적	X
	9.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보유기간)	X
	10.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거주기간)	X
	11. 양도가액	O
	12. 취득가액	O
	13.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X
	14. 기타필요경비	O
	15. 과세대상 양도차익	O
	16. 장기보유특별공제	X
	17.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 거주기간	X
	18. 양도소득금액	O
	29. 세액감면대상	X
	20. 소득금액감면대상	X
	21. 감면종류	X
	22. 양도시 기준시가(건물)	X

	23. 양도시 기준시가(토지)	X
	24. 취득시 기준시가(건물)	X
	25. 취득시 기준시가(토지)	X

주) O: 제공, X: 미제공, N/A: 개인정보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것으로 보이는 항목
출처: 신고서 서식과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 이용 신청 목록을 비교하여 저자작성

-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징수 시 수수되는 증빙 별로 공급가액과 세액등이 미시 수준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나, 세액공제의 상세내역이 제공되지 않고, 특히 매입세액 불공제액의 상세 내역이 제공되지 않음

〈표 10〉 부가가치세법 별지 제21호 서식과 국세통계센터 제공 자료 비교

별지 제21호서식(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신고내용		제공여부
		1. 과세_세금계산서 발급분	O
		2. 과세_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O
		3. 과세_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O
		4. 과세_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O
		5. 영세율_세금계산서 발급분	O
		6. 영세율_기타	O
		7. 예정 신고 누락분	X
		8. 대손세액 가감	O
		9. 합계	O
		10. 세금계산서 수취분(일반매입)	O
		10-1. 세금계산서 수취분(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X
		11. 세금계산서 수취분(고정자산 매입)	O
		12. 예정 신고 누락분	X
		1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X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X
		15. 합계	O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O
		17. 차감계	O
		18.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X
		1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X
		20. 경감, 공제세액 합계	X
		20-1.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X
		21.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X
		22. 예정고지세액	X
		23.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X
		24.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	X
		25.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X
		26. 가산세액 계	X
		27. 차감, 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O
	2.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N/A
	3. 폐업 신고		N/A
	4. 영세율 상호주의		X
	5. 과세표준 명세		X

		28. (과세표준 명세)	X
		29. (과세표준 명세)	X
		30. (과세표준 명세)	X
		31. 수입금액 제외	X
		32. 합계	X
		33.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과세_세금계산서)	X
		34.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과세_기타)	X
		35.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영세율_세금계산서)	X
		36.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영세율_기타)	X
		37.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 합계	X
		38.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금계산서)	X
		39.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X
		40.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 합계	X
		41.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_일반매입)	O
		42.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_고정자산매입)	O
		4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	O
		4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X
		45.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X
		46.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재고매입세액)	X
		4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변제대손세액)	X
		48.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X
		49.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합계	
		5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X
		5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 해당 세액)	X
		5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대손처분받은 세액)	X
		5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합계	O
		54. 전자신고 세액공제	X
		5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X
		56.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X
		57. 대리납부 세액공제	X
		58.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X
		59. 기타	X
		60.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합계	X
		61. 가산세액(사업자미등록 등)	X
		62. 가산세액(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X
		63. 가산세액(세금계산서 지연수취)	X
		64. 가산세액(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X
		65. 가산세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X
		66. 가산세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X
		67. 가산세액(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X
		68. 가산세액(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X
		69. 가산세액(무신고(일반))	X
		70. 가산세액(무신고(부당))	X
		71. 가산세액(과소, 초과환급신고(일반))	X

		72. 가산세액(과소, 초과환급신고(부당))	X
		73. 가산세액(납부지연)	X
		74. 가산세액(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X
		75. 가산세액(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X
		76. 가산세액(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X
		77. 가산세액(매입자 납부특례_거래계좌 미사용)	X
		78. 가산세액(매입자 납부특례_거래계좌 지연입금)	X
		79. 가산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미제출, 과다기재)	X
		80. 가산세액 합계	X
		81. (면세사업 수입금액)	O
		82. (면세사업 수입금액)	O
		83. 수입금액 제외	X
		84. 면세사업수입금액 합계	O
		85. 계산서 발급금액	X
		86. 계산서 수취금액	X
별지 제22호 서식(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제공여부
	1.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X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X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X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X
	5. 면세사업 등 관련		X
	6.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X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X
	9. 금,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X
	9.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합계		X
	10. 과세, 면세사업 등 공통매입(공급가액)		X
	11. 과세, 면세사업 등 공통매입(세액)		X
	12. 총공급가액 등		O
	13. 면세공급가액 등		O
	14. 불공제 매입세액		X
	15. 총공통매입세액		X
	16. 면세사업 등 확정비율		X
	17.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		X
	18. 기 불공제 매입세액		X
	19.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X
	20.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X
	21. 경감률		X
	22.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		X
	23.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X

주) O: 제공, X: 미제공, N/A: 개인정보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것으로 보이는 항목
출처: 신고서 서식과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 이용 신청 목록을 비교하여 저자작성

❑ 국세통계센터의 미시자료 제공은 층화표본추출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금액 자료의 경우 국세통계연보의 표축 구간별로 10% 표본 추출하는 방식이어서 현재의 샘플 방식으로 세수 추계 등의 업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ㅇ 국세통계센터의 층화표본추출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안내 자료는 없음
- ㅇ 국세통계센터와 상의[14]한 바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의 표축 항목 내에서 설정 가능한데, 예를 들어 다음의 기준으로 이뤄질 수 있음
  - 납세지(시도)
  - 성별
  - 연령별(연령대)
  - 양도소득금액규모(통계연보 5-1-3)
  - 과세표준규모(통계연보 5-1-3)
  - 양도가액규모(통계연보 5-1-5)
- ㅇ 금액 자료의 분포와 비 금액 자료의 분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져 표본 추출됨
  - 납세지(시도), 성별, 연령별(연령대)를 기준으로 표본 추출시 모집단 비율에 맞춰서 추출(e.g. 전체 모집단의 양도 건수에 있어 남녀 거래 비율이 7:3인 경우 샘플상의 남녀 거래 비율도 7:3)
  - 양도소득금액규모(통계연보 5-1-3), 과세표준규모(통계연보 5-1-3), 양도가액규모(통계연보 5-1-5) 기준으로 추출 시 통계연보 상의 각 금액 구간내에서 10% 추출(e.g. 통계연보 상의 과세표준 규모별(5-1-3) 2억초과 3억 이하 구간내에서 10% 표본 추출, 타 각 금액 구간에서도 10% 표본 추출)
- ㅇ 통상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높아 세수에 기여하는 고소득 집단의 경우 개수가 적고, 저소득 집단의 경우 개수가 많은데, 현재의 국세청 표본 추출 방식은 각 구간별로 10%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전체 세수에 기여하는 고소득 집단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국세청 외의 타 기관의 자료와의 결합시 앞서 논의한대로 상당히 긴 절차가 소요됨

- ㅇ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타 기관의 데이터와 결합을 하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결합신청 접수부터 데이터 이용 가능 시점까지 적어도 2개월 이상)이 소요됨
- ㅇ 같은 행정부 중앙부처(e.g. 국토교통부 등) 간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데에도 위와 같은 결합 절차가 요구됨

❑ 같은 국세청 내부데이터 간의 연계도 불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국세통계센터 설립 시 국세청 소관부서 등에서 협의된 사항인 것으로 보임

14) 국세통계센터에서 구두로 안내된 내용임

- ㅇ 일반적으로 국세통계센터에서 공개되는 항목 단위(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 내에서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타 자료 항목간의 연계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임
- ㅇ 예를 들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의 경상소득 자료와 양도소득세 자료 간에 서로 연계가 될 수 없음. 또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의 경상소득 자료와 상속 증여세 자료 간에 연계가 서로 될 수 없음

❑ 또한, 일부 데이터의 경우 그 정확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이용가능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 ㅇ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료의 경우 이용가능한 정보가 아님

라. 관련 법령의 이해

❑ 상기와 같은 국세통계 미시자료의 제공 제약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기밀유지와 관계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관련 법령을 소개함

- ㅇ 국세청은 2020년 9월 21일에 빅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ISO27001(보안시스템 운영)과 ISO27701(개인정보보호)를 획득하였음[15)]
  - – ISO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인정보의 관리절차, 암호화 및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인증으로서 개인정보 수집·처리·보관 방법, 자료암호화 기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8개 영역 49개 평가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가 업무 외적으로 사용되거나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비식별조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 빅데이터 분석 시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한 자료와 개방된 공공데이터로서 과세에 필요한 자료만 활용하고 있고,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운영하여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초[16)]로 하되, 다른 법에서 예

15) 국세청 보도자료. 2020.9.21. “국세청, 국제표준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16)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국가정보화백서. pp.351-352. 및 한국법제연구원. 2019. 개인정보보호 및 데

외를 정하여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구조였음

- ㅇ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체계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른 필요성에 따라 입법되어 왔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에 특수한 영역을 규율하는 개별법령이 차례로 제정된 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시대적 배경 등에 따라서 입법이 되었던 것임
  -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법제가 일관적인 구상에 따라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음
- ㅇ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종래 개별적 법령들은 여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음
  - 정보통신 영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등의 개별 법령들이 각자의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민간과 공공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입법취지로 제정되었지만, 실무상으로 개별 영역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특별법들이 고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ㅇ 그런데 앞서 살펴본 주요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 조항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 예컨대 국세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의료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조항을 두고 있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 이러한 법령 또는 소관부처의 체계 정합성이 부족한 법제도 아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울뿐더러 데이터 경제의 효용성 또한 극대화되기 어려운 상황(한국법제연구원, 2019)
- ㅇ 특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6항에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박훈, 2020)

이터경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pp.81-84.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 다른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법제 적용의 예외가 구체적이지 않아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제 적용의 예외를 설정하기 위한 입법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오고 있는 실정임

❑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17]으로 개인정보의 활용 여지가 과거보다 높아진 바가 있음

○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칭

○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너번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2018.11.15.)되었음

-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이 2020년 1월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

- 2020년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②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③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④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의 핵심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로 가공한 경우에는 본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는 점

○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가명 정보라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가명 정보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며, 가명정보의 처리수준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18]

❑ 공공데이터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개가 가능하였으나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하고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방이 가능[19]

---

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이터 3법(2021.11.16.)"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18) IT Daily, 데이터 3법 후속조치,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2020. 5. 3.

○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데이터법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하는데, 그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공공데이터의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함
-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정보공개에 있어서의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 결론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대상 중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전달이 가능한 경우,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서 공공데이터로도 개방이 가능하게 됨

- 예를 들어,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 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의 전자적, 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가 정보공개의 대상이라면[20]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로서 실시간 버스의 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의 운행상황은 공공데이터에 해당함(강지은, 2020)

○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거나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대상에서 제외됨

-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공데이터로 개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등 다른 법률의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함
-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권은 여타 행정영역에서 규율하는 행정의 내부적인 심의나 결정의 개시를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상의 신청권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강지은, 2020)
- 따라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공공기관이 불응할 수 있는 사유는 정보가 부존재하거나, 공개를 원하는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판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로 인정되었는지의 여부는 행정기관이 정보

19) 강지은. 2020. "공공데이터 개방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행정법연구 제61권. pp.164-166. 참조 재작성.

20)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https://www.open.go.kr) 참조.

공개결정 시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수많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짐(강지은, 2020)

- ㅇ 이러한 입법체계 하에서 공공데이터를 생성·수집·취득하는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라면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능
  - 또한 개인정보의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한 경우에도 정보 제공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 목적 등이 변동되는 경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강지은, 2020)
  -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이 민간이용자에게 데이터의 제공 후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됨[21)]
  -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서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 데이터기반행정법에서는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2)]

- ㅇ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 있음
- ㅇ 기존에 이미 공공데이터법이 있음에 불구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이 필요한 이유는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의 국민에 대한 데이터 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나,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기관끼리의 데이터 공유 및 공동활용에 관해 규정하기 때문
  -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음
  - 반면에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있음

21)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1호, 2019. 9. 3. 개정) 15면 참조.
22) 한국재정정보원, "「데이터기반행정법」 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2020. 12. pp.1-2. 바탕으로 재작성.

2. 주요국의 사례

가. 주요국의 조세·재정 관련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23)]

❑ 미시시뮬레이션 모형

- ㅇ 미시시뮬레이션은 1990년대 이후부터 ①컴퓨팅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②분석 가능한 미시 데이터의 축적 증가, 그리고 ③미시적 차원의 정책 분석 필요성 증대 및 가능성 인식으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소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음

〈표 11〉 주요국의 조세재정 관련 미시적 모의실험 모형 현황

국가	기관	명칭	관련분야	공개 여부	비고
미국	NBER	Taxim	개인소득세 등	×	·Tax file 및 Tax form 등을 이용하며, 4개 프로그램(SAS)으로 구성됨
	CBO	CBOLT	전반적인 조세의 영향 분석	×	·결혼시장, 노동공급, 조세 전반의 효과 추정
	ITEP	ITEP	각종 조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소비세)의 영향	×	·건강보험에 중점을 두며, 사회보장의 장기추이 분석모형
	Urban Institute	TRIM3 DYNASIM3 HRSM MINT	빈곤, EITC 최저임금 등 연금소득의 영향 건강보험 개혁 연금소득과 사회보장	× × ×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OCSIM	노령화 인구	○ (약간)	
	University of Washington	URBANSIM		×	
	Policy Simulation Group	GEMINI HISIM PENSIM SSASIM	사회보장 혜택, 조세 건강보험 연금혜택 사회보장 기금	× × × ×	·거시-미시 연계모형
	Social Science System	SSS	건강보험	×	
	Strategic	CORSIM	인구	×	

23) 윤성만·김완용·유현수, 2023, 법인세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연구, 국회예산정책처. pp. 31-39.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하였음

국가	기관	명칭	관련분야	공개 여부	비고
	Forecasting				
	Mathematical Policy	MATH	food stamp	×	
영국	Nottingham (Alan Duncan)		노동시장, 세제혜택	×	·일반경제,조세가설 노동시장의 세제혜택 분석모형
	DETR	NRTF HF	운송시스템 가계조사	× ×	
	DWP	PENSIM2	연금개혁	×	
	LSE/ESRC (Kings College London)	SAGEMOD	인구, 소득, 연금,의료	×	
	ESRC	POLIMOD	빈곤, 고용	×	
	IFS	Virtual Economy TAXBEN	소득세, 사회보험 간접세 등 tax-benefit (직·간접세)	× ×	
	HM Treasury	IGOTM	tax-benefit	×	
호주	University of Melbourne	MITTS	노동공급	×	·Alan Duncan 및 IFS와 함께 구축한 호주 모형
	NATSEM (Canberra College)	APPSIM CAREMOD STINMOD	인구 장애, 노인, 아동 소득세, 현금양도	× × ×	
	Griffith University	JJS	사법제도	×	
캐나다	Statistics Canada	SPSD/M LIFEPATHS POHEM	소득재분배효과 인구(행태방정식) 건강, 질병	× × ×	·SPSD/M의하부모형
스웨덴	Ministry of Finance	SESIM	교육재정, 연금, 의료	○ (약간)	
	Umea University	SEVRIGE	출생률, 사망률, 평균임금, 교육수준 등	×	
프랑스	Center for Strategic Analysis	ITS	간접세의 소득재분배	×	
노르웨이	Statistics Norway	MOSART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지출	×	
뉴질랜드	TREASURY	TAXMOD	인구고령화에 따른 benefit의 지출변화	×	
아일랜드	ESRI	SWITCH	사회보장	×	
기타	OECD	EUROMOD	Tax-Benefit	×	·EU 15개 국가간 tax-benefit에 대한 micro-simulation모형

출처 : 성명재·전병목·전병힐, 2008, 조세 재정모의실험 모형: KIPFSIM08 모형의 구축, 한국조세연구원. pp.47~48 〈표2-1〉, p.50 〈표2-2〉의 내용 일부수정 및 인용,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 조세특례 타당성 평가를 위한 연구-2016년 정책연구 보고서-,pp.84~85 〈표4-2〉 인용 및

❑ 주요 선진국에서는 미시시뮬레이션모형을 구축하고 사용하고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3)

- ㅇ 미국은 10개 기관에서 16개 모형을, 영국은 7개 기관에서 7개 모형을, 호주는 3개 기관에서 5개의 미시시뮬레이션모형을 운용 중에 있음
  - –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에서도 모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필리핀을 포함한 다수의 개도국도 조세재정 미시시뮬레이션모형을 구축
  -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여 사용함
  - – 캐나다는 통계청이 개발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해서 정책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책분석 모형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에게 교육 중임
- ㅇ 다만, 이러한 선진국의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에 대한 공개자료가 부족해서 세부적인 개발내용까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 대부분의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자료의 출처 등이 자세히 공개되어 있지 않은 실정

나. 주요국의 조세관련 통계 제공현황

(1) 미국

❑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6108조에서 국세통계 공개와 제공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음

- ㅇ 이 규정에 따라서 미국 국세청 내 소득통계국(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SOI)에서 국세통계자료 작성과 발간을 담당하게 됨[24)]
  - 또한 SOI는 과세신고서를 기반으로 한 연구수행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 ㅇ 국세청장은 외부 관계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국세통계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 및 연구분석에 활용한 미시자료 사본을 정보 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25)](IRS §6108(b))
  - 개인 세금 신고서 데이터 : 신고 건수, 소득 원천, 소득에 대한 법정 조정 및 유형별 항목별 공제, 개인 면제, 과세 및 비과세 신고서나 조정 총소득 규모 또는 세율에 따라 분류된 세금 및 공제내역 등
  - 법인세 신고 데이터 : 신고 건수, 유형별 영수증 및 공제, 순이익, 세금 및 공제내역, 산업군별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 순이익에 따른 수익률, 총자산 규모나 사업수입 규모 등
- ㅇ 다만, 국세통계 공개 및 제공에 있어서 직접적·간접적으로 납세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발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IRC 6103(c))
  - 식별 가능한 납세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특별 통계 연구에 대한 모든 요청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SOI 이사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 조세 행정 목적(IRC 6103(b)에 정의)을 위해 식별 가능한 형태의 납세자 데이터에 대한 재무부의 요청은 요청이 불필요함(IRC 6103(h))
  - 다만, IRC 6103(j)(3)은 통계 용도로 식별 가능한 형식의 납세자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특정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 특정 통계 목적을 위해 특정 납세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상무부(예: 경제 분석국 또는 인구 조사국)의 식별 가능한 납세자 데이터(또는 식별 가능한 형식의 납세자 데이터가 필요한 특수 통계 조사)에 대한 요

24)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about-soi(검색일 : 2023.9.1)
25) https://www.irs.gov/irm/part1/irm_01-013-001(검색일 : 2023.9.1.)

청 (IRC 6103(j)) 또는 사회보장법(IRC 6103(l))을 관리할 목적으로 유사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은 사회보장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SOI와 정부 연락관(Governmental Liaison and Disclosure: GLD)의 조정을 받아야 함

- 식별 가능한 데이터(또는 식별 가능한 형식의 납세자 데이터를 요구하는 통계 연구)에 대한 의회의 다른 위원회(IRC 6103(f))의 요청은 서면으로 위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만이 서명할 수 있음
- 주 세무 행정관이 식별 가능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형식의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SOI와 개인 정보 보호, 정부 연락 및 공개 부서의 조정을 거쳐야 함
- 식별 가능한 납세자 정보의 무단 공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조정 외에도 SOI는 현장 사무소, 제출 처리 센터 또는 마틴스버그의 데이터 처리 시설 또는 기타 리소스를 사용해야 하는 통계 요청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소득통계국의 구성[26)]

○ 소득통계국(SOI)은 연방세수 정보의 수집, 분석, 보관 및 이를 공개 및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4개의 부서로 세분화됨

- 법인, 파트너십, 국제기업 : 법인의 소득신고서(Form 1120)를 바탕으로 소득, 공제 등 다양한 통계자료 생성 및 발간
- 개인 및 비영리단체 : 소득세, 상속 및 증여 관련 신고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자료 생성 및 발간
- 정보관리 부서 : SOI의 연구에 대한 정보기술지원, 통계간행물 출판, 데이터 요청 및 질의응답 처리
- 통계 서비스 부서 : 국세청 내 조직에 통계적 서비스 제공

26) 「미국 국세청 실무지침(IRM)」1.1.18. https://www.irs.gov/irm/part1/irm_01-001-018(검색일 : 2023. 9. 1.)

[그림 5] 미국 국세청 소득통계국 조직도(2022. 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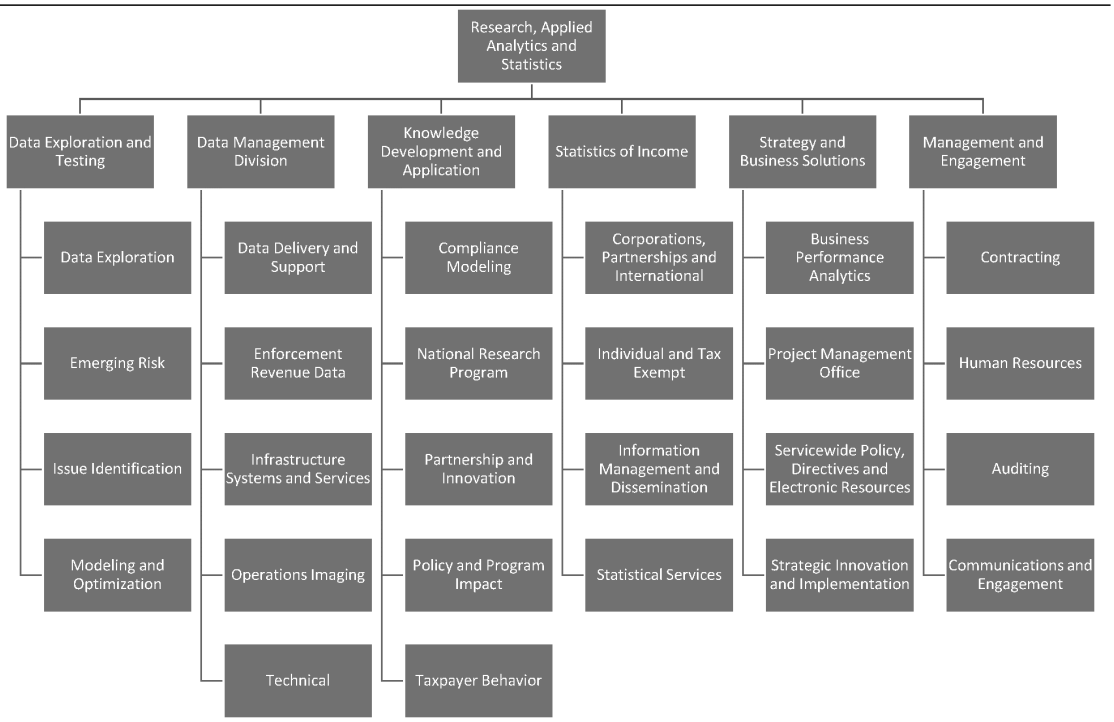

자료 : 「미국 국세청 실무지침(IRM)」1.1.18.(https://www.irs.gov/irm/part1/irm_01-001-018(검색일 : 2023. 9. 1)

❑ 국세통계 개방 현황[27)]

- ○ 국세통계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통계발간물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는데 국세청 발간 주요 통계발간물은 다음과 같음
  - – 국세총괄통계(IRS Databook)
  - – 법인세 통계연보(Corporation Complete Report)
  - – 개인소득세 통계연보(Individual Complete Report; Publication 1304)
  - – 소득통계국 공지(SOI Bulletin)
  - – 미국 국세청 연구자료(IRS Research Conference & Bulletin)
- ○ 국세총괄통계(IRS Databook) : 세입현황, 세무조사실적, 신고유형, 세액 및 가산세, 납세자 지원 현황 등
- ○ 세목별 통계연보(Complete Report) : 소득세와 법인세로 나누어 작성되며, 통계연보 상 국세통계 데이터는 전체 신고서 중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추정한 데이터[28)]
  - – 표본은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모집단을 나눈 후 각각의 모집단 그룹에서 무작위 추출함

27) 정다운 외, 2018, pp. 30-33.을 바탕으로 관련 홈페이지를 재검색하여 작성함.
28) 미국 국세청,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Complete Report 2016(Publication 1304), 2017. p. 5, p. 205.

- 법인 : 총자산, 총소득 규모로 모집단 구분
- 개인 :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규모, 외국소득 등에 따라 모집단 구분

○ 소득통계국 공지(SOI Bulletin) : 소득통계국에서 분기별 발간하는 보고서, 신고서를 통해 얻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공개[29)]

○ 미국 국세청 연구자료(IRS Research Conference & Bulletin) : 각종 학회에서 국세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보고서 자료 공개[30)]

- 미국 국세청과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가 공동개최하는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되는 연구보고서
- 미국 국세청 내 소득통계국 소속 직원들이 국세통계를 활용하여 단독 또는 외부 교수와 공동으로 작성하고 발표한 보고서 공개

❑ 국세통계 공개항목[31)]

○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의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금액, 공제·감면, 납부세액을 소득규모, 신고유형, 적용세율, 소득분위별로 나누어 공개함[32)]

- 특징적인 점은 소득규모를 조정된 총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 AGI)을 바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율은 명목세율보다는 실효세율(marginal tax rate)로 공개하고 있음
- 통계종류별로 소득규모를 상위50%를 각각 0.001, 0.01, 0.1, 1, 2, 3, 4, 5, 10, 25, 30, 40, 50%로 분위를 구분해서 제공하고, 하위 50%는 50, 75, 90, 95, 99%로 구분해서 제공하는 자료도 존재(총 18단계)[33)]
- 다만, 위의 18단계 이상의 자료는 2015년까지만 제공되고 있으며[34)] 최근에는 특정 자료 외에는 일반적으로 1, 5, 10, 25, 50, 75, 90, 95, 99%와 같이 9~10단계로 구분하여 제공함
- 또한, 실효세율은 납세자의 과세대상소득 중에서 실제 납부할 세액의 비중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음
- 실효세율은 5%이하, 5~7%, 7~10%, 10~12%, 12~15%, 15~17%, 17~25%, 25~30%, 30~50%, 50~100%, 100% 이상의 11개 구간[35)]으로 구분되어 있음

---

29)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soi-bulletins(검색일 : 2023. 9. 1.)
30)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research-papers-by-conference-and-year(검색일 : 2023. 9. 1.)
31) https://www.irs.gov/statistics(검색일 : 2023. 9. 1.)
32)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individual-income-tax-return-form-1040-statistics(검색일 : 2023. 9. 1.)
33)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soi-bulletin-articles-index-by-topic: Number of Returns, Amount and Share of Adjusted Gross Income (AGI) and Total Income Tax(검색일 : 2023. 12. 10.)
34) https://www.irs.gov/pub/irs-soi/soi-a-ints-id1801.pdf(검색일 : 2023. 12. 10.)

○ 법인세 : 법인소득세 신고서(Form 1120)의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금액, 공제·감면, 납부세액 등을 산업별, 총자산규모별 등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음[36]

- 법인세수는 Corporation Source Book[37]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최종납부세액 산출과정에 따른 항목들을 산업별로 공개하고 있음[38]
- 법인세 통계자료는 표본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해서 작성되며, 표본자료 선정과정과 통계적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매년 공개하고 있음[39]

○ 비영리단체 : 비영리 유형(IRC section 501(c)(3) 및 501(c)(4) ~ 501(c)(9))에 따라 면세되는 단체에 대하여 재무제표, 성격별 비용 지출, 수익사업으로 과세되는 경우의 수익사업 매출, 공제·감면, 납부세액 등을 비영리단체 유형별로 공개하고 있음[40]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41]

○ 미국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v)에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를 포함한 연방 및 지방(주/카운티/시 등) 정부 기관이 약 1,620개 세금 관련 데이터를 개방 중에 있음[42]

- 다만, 과세 당국인 미국 국세청(IRS)은 재무부 산하 기관이므로,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IRS가 아닌 재무부가 세금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 제공하는 데이터는 주요 세목에 대한 징수, 미수, 환급, 세율 등의 정보를 연도별, 월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한편, 미국 인구 조사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은 미국 지역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금 납부 기준 주택담보대출 현황 및 국가 전체세금 징수 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의 포털(https://data.census.gov)을 통해 제공 중(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35) https://www.irs.gov/pub/irs-pdf/p1304.pdf#page=28(검색일 : 2023. 12. 10.): Table 3.2 Returns with Total Income Tax: Total Income Tax as a Percentage of Adjusted Gross Income.
36)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corporation-tax-statistics(검색일 : 2023. 9. 1.)
37)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corporation-source-book-publication-1053(검색일 : 2023. 12. 10.)
38)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corporation-source-book-data-file(검색일 : 2023. 12. 10.)
39) https://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irs.gov/pub/irs-pdf/p5108.pdf(검색일 : 2023. 12. 10.)
40)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charities-and-other-tax-exempt-organizations-statistics(검색일 : 2023. 9. 1.)
41) 한국정보화진흥원. Global Open Data, Now. 제23호(2020. 9)를 참고하여 국가별 공공데이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음.
42) https://www.data.gov(검색일 : 2023. 9. 1.)

https://data.census.gov)

-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의 등록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v)에 개방중인데, 연방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은 중소 기업의 등록 및 정보를 관리하는 Dynamic Small Business Search(DSBS) 서비스를 운영 중[43)]
- 중소 기업 등록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되어 있으나, DSBS 시스템에 대한 링크(HTML 파일)만 제공하고 있음[44)]

○ 주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간, 월별 또는 특정 분야의 기업 등록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제공 항목은 '기업명, 기업 등록 번호, 사업 유형, 등록일, 대표자명 및 주소 등'이며,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2) 영국

❑ 영국 국세청은 조세징수 및 집행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음[45)]

❑ 영국의 국세통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식통계'에 해당하며, 이 중 소정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인증된 통계자료는 '국가통계'로 인정됨(정다운 외, 2018)

○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 : 통계자료 관련 법령[46)]에서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국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된 통계자료

○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 : 공식통계 중 영국 통계당국(UK Statistics Authority)에서 발간하는 통계운용지침(Code of Practice for Official Statistics)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통계

- 통계운용지침은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의 품질기준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생산·운영할 것을 요구함[47)]

43) Dynamic Small Business Search(DSBS): https://web.sba.gov/pro-net/search/dsp_dsbs.cfm(검색일 : 2023. 9. 1.)
44) https://catalog.data.gov/dataset(검색일 : 2023. 9. 1.)
45) https://www.statisticsauthority.gov.uk/(검색일 : 2023. 9. 1.)
46) Sec 6 of the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47) https://code.statisticsauthority.gov.uk/(검색일 : 2023. 9. 1)

- 신뢰성(Trustworthiness) : 통계 데이터 생산 조직의 시스템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관련 능력과 정직성을 갖출 것
- 품질(Quality) : 통계 데이터의 속성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가장 정확히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 방법이 적정하고 결과물이 명확할 것
- 가치(Value) : 통계 데이터의 유용성이 사회 현상들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이해가능한 방법으로 적시성 있게 제공할 것

❑ 영국 통계당국(UK Statistics Authority)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통계규정관리조직(Office for Statistics Regulation)을 운영[48)]

○ 해당 조직은 통계 생산과는 독립적으로 공식통계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

○ 정부기관의 공식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국가통계 인증 여부 결정

- 국세 데이터 등 공식통계자료가 통계운용지침의 세부 원칙 및 집행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여 국가통계로서의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함

❑ 영국 국세청이 발표하는 공식 통계자료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입수한 원자료를 내부 시스템에서 확보하여 가공하는 방식으로 집계됨[49)]

○ 영국 국세청은 국세통계 생성을 위해 각 행정조직과 긴밀한 협조하에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protocol)를 확립

- 수집하는 데이터의 내용과 양식 등 국세통계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유관부서와 협조
- 절차상에 있어서,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국세통계 개방현황[50)]

○ 정부자료 검색결과, 영국국세청(HMRC)이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1,759건 확인[51)]

---

48) https://osr.statisticsauthority.gov.uk/policies/official-and-national-statistics-policies/(검색일 : 2023. 9. 1)

49)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arningsandworkinghours/methodologies/aguidetosourcesofdataonearningsandincome(검색일 : 2023. 9. 1)

50)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schedule-of-updates-for-hmrcs-statistics(검색일 : 2023. 9. 1)

51) https://www.gov.uk/search/research-and-statistics?parent=hm-revenue-customs&content_store_document_type=all_research_and_statistics&organisations%5B%5D=hm-revenue-customs&order=release-date-oldest(검색일 : 2023. 9. 1)

○ 전체 세목에 대하여 조세수입 및 납세자 현황 등 공개함
  - 전체 세수 합계액의 연도별 추이, 주요 세목별 구성 비율 등
  -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별 세수 실적 등
  - 주요 세목별 납세자 및 사업자 수, 조세감면 규모 등
○ 개인소득세의 경우 징수실적, 원천징수, 조세혜택 등의 통계자료 제공
  - 납세자의 소득 및 개인소득세 현황은 보다 자세히 제공
  - 세전·세후 총소득의 100분위수, 소득유형별 총소득범위(금액기준 10분위)별로 제공[52]
  - 특히, 소득유형별(자영업, 근로, 연금, 재산·이자·배당·기타)로 기본(basic)세율, 고(higher)세율, 추가(additional)세율 적용 대상 납세의무자를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음[53]
○ 자본이득세 및 상속세 등의 세목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 자본이득세 납세자 수, 자본이득 규모, 관련 세액공제 세부내역 등
  - 상속세 자산가치, 적용세율, 공제·감면, 현황 등
  - 개인 연금의 종류 및 재원, 연금 관련 과세내역, 연금 가입자 현황 및 관련 감면 등

❑ 공공데이터 개방현황[54]
○ 영국 국세청(HMRC)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v.uk)에 약 430개 데이터를 개방 중이며, 이 중 세금 및 혜택 정보에 대한 데이터는 약 52%를 차지하고 있음
  - 세금 영수증, 납세자 수, 개인 세금 공제, 아동 수당 및 세금 지출/구제 비용을 포함한 모든 HMRC 세금 및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예: 개인 소득, 연금, 상속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개인제금, 부동산 거래, 아동수당, 연구개발 세액공제, 자선 기부 및 세금 감면 등)하고 있음[55]
○ 한편, 영국 내 기업 등록 정보(예. 법인명, 등록번호, 사업 등록 지역, 주소, 상태, 법인 유형)은 영국 기업혁신부(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 Skills, BIS)

52)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personal-incomes-statistics-for-the-tax-year-2020-to-2021/personal-incomes-statistics-2020-to-2021-commentary#table-34---income-tax-liabilities-of-savers-basic-higher-and-additional-rate-taxpayers-by-largest-source-of-income-tax-year-2020-to-2021(검색일 : 2023.12.10)
53) Table 3.4: Income tax liabilities of 'savers', basic, higher and additional rate taxpayers, by largest source of income, tax year 2020 to 2021(검색일 : 2023.12.10)
54) 한국정보화진흥원. Global Open Data, Now. 제23호(2020. 9)를 참고하여 국가별 공공데이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음.
55) https://www.data.gov.uk/ (검색일 : 2023. 9. 1.)

산하 법인 등록 및 관리 기관인 Companies House Service(CHS, 기업 정보 제공 및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http://data.companieshouse.gov.uk)

- Companies House는 기업 등록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유 인터넷 식별자(URI), 수익 소유자(Person with significant control, PSC) 및 회계 등 정보에 대한 데이터도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 중[56]

❑ 국세통계 생산 조직과 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정다운 외, 2018)

○ 영국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은 통계자료의 원활한 생성과 정책개발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전담 분석조직을 운영하고 있음[57]

- 영국 국세청은 디지털 자료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조직의 주요 목표로 설정
- 이를 위해 국세청 내에 통계분석 전담조직(Knowledge Analysis and Intelligence: KAI)을 운영하고 있음

❑ 통계분석 전담조직(KAI)의 기능

○ 국세청 내부 및 외부 유관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과세자료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분석 품질을 제고하는 활동을 수행

- 정책 및 운영 개발에 필요한 분석, 연구 및 통계를 제공함
- 국세청 뿐 아니라 재무부(HM Treasury) 예산처(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 OBR) 등과의 협업을 통해 예산을 추정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분석 업무를 수행함
- 데이터 과학자, 통계학자, 경제학자, 사회과학자 등 전문 분석가들로 구성된 KAI는 전국에 약 63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분석팀[58]

56) Companies House data products Guidance. (https://www.gov.uk/guidance/companies-house-data-products#uri-info(검색일 : 2023. 9. 1.))
5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mrc-organisation-chart(검색일 : 2023. 9. 1)
58) https://www.civil-service-careers.gov.uk/hmrc-customer-strategy-tax-design-our-directorates/(검색일 : 2023. 9. 1)

❑ 영국 국세청의 데이터랩(Datalab)[59]

○ 영국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연구목적상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연구자에게 과세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랩(Datalab)을 2011년부터 도입하였음

- 방대한 과세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으나, 납세자 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해당 데이터의 활용은 제한적
-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연구자들이 학문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과학적 용도에 활용하는 것은 비밀보호의무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공식적으로 발표됨(EC Regulation No. 223/2009)
- 이에 영국 국세청은 2011년부터 Datalab을 신설하여 활용하고 있음
- 납세 데이터 제공은 무상으로 이루어짐

○ Datalab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 승인된 외부 연구진에 한해 납세 관련 기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60]

- London의 Stratford에서 단말기 사용
- 사전 승인된 연구진에게 자료 접근을 위한 계정 부여
- 해당 장소에서만 계정을 통해 미시자료에 접근이 가능
- 연구진은 해당 장소에서 연구분석 업무를 수행
- 결과물은 계정에 저장되어 Datalab 직원을 통해 이메일로 결과물 전송받음

○ 이용가능 조직

- 영국 정부 부서, 영국 규제 공공 기관 또는 영국 학술 기관의 연구원
- 독립적이고 공정한 연구 기관과 같은 비영리 조직
- 2018년 4월부터 상업적 연구 그룹의 지원서를 받아들이지만 발주처가 정부 부서인 경우에만 가능
- ‘승인된 연구자’가 되려면 제안서를 제출하고 단기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함

○ 제공하는 데이터[61]

- 개별 납세자의 이름, 주소 등이 포함된 원시자료는 제공이 허용되지 않음
- 익명성이 보장된 집합데이터의 경우 제한없이 제공 가능
- 위 양 극단 이외의 데이터는 해당 자료의 속성 및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공개 과정에서 적절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과세 데이터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최종사용허가(End-User

5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mrc-datalab/about-the-hmrc-datalab(검색일 : 2023. 9. 1)
60) https://arunadvani.com/papers/AdvaniSummers2020_Datalab.pdf(검색일 : 2023. 9. 1)
61) 정다운 외, p.59.

Licence)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함

- 최종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납세자의 개별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정제된 형태임
- 특별허가(Special Licence)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납세자 자료를 사용[62]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데이터 사용 내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자료 건별로 관련 데이터 생산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 데이터의 카탈로그를 다운받아 확인한 결과, 11개의 카테고리에서 362가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Tax 분야에서는 104가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63]
- 공개된 데이터인지 여부가 항목별로 파악이 되며, 공개자료인 경우에는 원본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함

○ 전체 세목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데이터랩(Datalab)에서 활용되는 일부 세목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상세한 데이터가 공개됨[64]

<표 12> 사업소득자 신고서(Self-employment returns)

변수명	적요
Identifier	Unique identifier for taxpayer
TCN_CODE	Trade classification number
FSE_NO	Identifies if the return was full or short (0 = short return, 1= full return)
BUS_SALE	Turnover
GOODS_T	Cost of goods bought for resale or goods used
SUBCON_T	Construction industry - payments to subcontractors
WAGES_T	Wages, salaries and other staff costs
MOTOR_T	Car, van and travel costs
PREM_T	Rent, rates, power and insurance costs
REPAIR_T	Repairs and renewals of property and equipment
ADMIN_T	Phone, fax, stationery and other office costs
ADVERT_T	Advertising and business entertainment costs
INTPMT_T	Interest on bank and other loans
FINANC_T	Bank, credit card and other financial charges
BDEBT_T	Irrecoverable debts written off
LEGAL_T	Accountancy, legal and other professional fees

62) Welpton and Wright(2011) https://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680.6046&rep=rep1&type=pdf(검색일:2023.11.29.)

63) https://view.officeapps.live.com/op/view.aspx?src=https%3A%2F%2Fassets.publishing.service.gov.uk%2Fmedia%2F63a08ad5d3bf7f37569892e9%2FWithdrawn-Implementation-plan-catalogue.xls&wdOrigin=BROWSELINK (검색일:2023.11.29.)

64) https://www.gov.uk/guidance/self-assessment-datasets(검색일: 2023.11.29.)

DEPREC_T	Depreciation and loss/profit on sales of assets
OTHER_T	Other business expenses
TOTAL_T	Total expenses
WAGES_D	Disallowable expenses on wages, salaries and other staff costs

출처: https://www.gov.uk/guidance/self-assessment-datasets (검색일:2023.11.29.)

〈표 13〉 공동기업 신고서(Partnership returns)

Variable name	Description
Identifier	Unique identifier for partnership
TCN_CODE	Trade classification number
TURN_AND	Turnover including other business receipts and goods etc taken for personal use
BUS_SALE	Sales/business income (turnover)
EMPLOYEE	Employee costs recorded under expenses
STATEMEN	Number of partners in the partnership for this accounting period

출처 https://www.gov.uk/guidance/self-assessment-datasets (검색일:2023.11.29.)

○ 또한 일부 데이터의 경우 원격[65]으로 조회가능하며, Datalab의 방문이 필요없는 것을 보임

- 영국 납세자를 대표하는 약 600,000명의 납세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개인 소득 조사(Survey of Personal Income)의 익명화된 버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연구자가 등록과 승인 과정을 거치면 원거리에서 해당 정보가 다운로드 가능하며 Datalab에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 가능함
- HMRC Datalab의 원격 접근(remote access)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됨[66]

(3) 기타 국가의 국세 데이터 개방 현황[67]

❑ 프랑스

○ 프랑스 정부의 과세 당국인 재정경제부(Ministry of the Economy and Finance)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uv.fr)에 중앙/지방정부의 세금에 대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음

- 세금 및 지자체 별 지방세 통계, 과세 기준, 세율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중이나, 오픈포맷(CSV, JSON, XML 등)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68]

65) Miguel et al (2019) p. 672
66) https://blog.ukdataservice.ac.uk/ten-years-secure-remote-access/(검색일:2023.11.29.)
67) 한국정보화진흥원. Global Open Data, Now. 제23호(2020. 9)를 참고하여 국가별 공공데이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음.

○ 또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기업, 자영업자, 회계사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세금 납부 연기(예. 납부 연기대상자 수, 총 연기 금액, 수혜 기업의 활동 부문 등)에 대한 데이터를 CSV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69]

❑ 호주

○ 호주 정부는 과세 당국(State Revenue Office)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예: 재부무(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및 Department of Customer Service 등))은 공공데이터 포털[70]을 통해 세금 관련 약 4,500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음

- 세금과 관련해서는 주요세목의 징수, 세수, 환급, 공제, 세율, 세금 혜택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연도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연방 정부 차원(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71])에서 월별 기업 등록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하고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기업 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72](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다. 시사점

❑ 앞서 언급한 대로 주요 선진국에서 미시시뮬레이션모형을 구축하고 사용하고 있음

○ 미국은 10개 기관에서 16개 모형을, 영국은 7개 기관에서 7개 모형을, 호주는 3개 기관에서 5개의 미시시뮬레이션모형을 운용 중에 있으며,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에서도 모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필리핀을 포함한 다수의 개도국도 조세재정 미시시뮬레이션모형을 구축함(국회예산정책처, 2023)

○ 다만, 이러한 선진국의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에 대한 공개자료가 부족해서 세부적인 개발내용까지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68) https://www.data.gouv.fr/fr/organizations/etalab/(검색일 : 2023. 9. 3.)

69) https://www.data.gouv.fr/fr/datasets/donnees-relatives-aux-reports-decheances-fiscales-accordes-dans-le-cadre-de-lepidemie-de-covid-19/(검색일 : 2023. 9. 3.)

70) https://data.gov.au/home(검색일 : 2023. 9. 3.)

71)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ASIC) : 기업, 시장 및 금융 서비스 규제 기관

72) 제공 항목은 '기업명, 기업 등록 번호(Company Number), 등록여부(registered/de-registered), 등록일, 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Business Number) 및 기업명 변경 이력 등'(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 미국, 영국 및 호주 등 주요국에서 세금 관련 데이터 개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ㅇ 이들 국가에서는 주요 세목에 대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하여 징수, 미수, 환급, 세율, 세금 혜택 등 세금관련 정보를 연도별, 월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하고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ㅇ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세금 데이터는 대부분 집계 통계 현황임

❑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접근 및 활용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과학적 목적 등으로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에는 데이터 접근을 보다 무게를 두어 기밀 데이터(confidential data)를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도 있음(EC Regulation No. 223/2009)

- ㅇ 영국의 경우 이를 근거로 국세통계를 연구목적 상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연구자에게 데이터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데이터의 세부 종류 및 민감도에 따라 외부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와 절차에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음

- ㅇ 영국의 데이터랩(Datalab) 에서는 특별허가(Special Licence)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납세자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데이터 사용 내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자료 건별로 관련 데이터 생산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데이터의 제공에서 수수료 징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음(정다운 외 2018)

- ㅇ 미국에서는 국세통계 연구에 활용된 미시자료 사본(transcripts)를 정보 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ㅇ 보고서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통계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익명 데이터를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공될 수 있는데, 이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미국, 영국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고소득자에 대한 통계와 소득신고자료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정다운 외 2018)

- ㅇ 미국은 소득규모를 17~24단계로 세분화하여 공개하며,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적용세율 및 실효세율에 따른 세부담 통계를 공개함

○ 영국은 고세율 적용대상자 비중, 조사대상 가구의 실효세율 등의 분석 내용을 공개함

III.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추정

❑ 본 장에서는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정한 과정과 결과를 서술함

- ㅇ 앞서 언급한 대로 거시 자료를 활용한 현재의 세수 추계 모형에서 양도소득세는 큰 오차율을 보이는 세목임
- ㅇ 양도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법인의 재무 정보(e.g. 감사보고서 등)와 달리 공개되지 않는 바, 미시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그 중에 이용가능한 정보가 국세통계센터 제공 미시 자료임

❑ 당초 연구진은 양도소득세 추정 계획 시 국세통계센터의 데이터 연계 제약을 염두하고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과의 데이터 결합을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국세청 단독으로 제공 가능한 자료 중 예정신고 자료만을 제공받아 해당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함

- ㅇ 자료 수집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첨부 3> 참조
- ㅇ 표본 대상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의 귀속 소득 자료이며, 추출 기준을 과세표준 규모와 시도 기준으로 하여 추출 요청함

〈표 14〉 양도소득세 추정 관련 제공 데이터

순번	항목	부서	순번	항목	부서
1	과세기간년월	국세청	9	양도가액	국세청
2	신고구분코드	국세청	10	취득가액	국세청
3	가중치	국세청	11	필요경비	국세청
4	소득분위층	국세청	12	양도차익금액	국세청
5	지역	국세청	13	양도소득금액	국세청
6	성별	국세청	14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국세청
7	연령	국세청	15	과세표준금액	국세청
8	양도자산종류구분코드	국세청	16	산출세액	국세청
			17	보유기간	국세청

출처: 저자 작성

❑ (표본구성) 분석표본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표본을 구성함

- ㅇ 기본정보인 양도자산종류, 부동산소재지, 연령구간, 보유기간에서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는 표본에서 삭제함
- ㅇ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7년간 80,462개 양도소득세 정보가 존재하는 표본이 확보되었으며, 2021년은 27.73%로 최고 비율을 보였으며, 2015년에는 7.4%로 최저비율을 보임
- ㅇ 2015년과 2016년의 연도별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KB 매매가격지수의 유효기간과 분석대상 표본의 취득 시점 등에 기인함
  - – 추정양도가액을 산정시 KB매매가격지수 증감률[73]을 이용하였는데, KB매매가격지수(시군구 기준)는 2003년 9월부터 산출됨
  - – 양도 물건의 보유 기간을 활용하여 역으로 취득 시점을 구하였는데, 취득 시점이 2003년 이전인 표본이 2015년과 2016년에 다수 나타남

〈표 15〉 연도별 빈도분석

(단위: 개, %)

연도	개수	비율
2015	5,955	7.4
2016	1,734	2.16
2017	10,720	13.32
2018	12,112	15.05
2019	9,966	12.39
2020	17,665	21.95
2021	22,310	27.73
Total	80,462	100

출처: 저자 작성

❑ (모형구성: 미시변수) 추정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과정에 고려되는 다음의 미시변수를 사용함

- ㅇ 실제모형은 실제양도가액을 활용한 모형이며, 추정모형은 양도가액을 추정하여 구성한 모형임

73) 한국부동산원 지수 증감률도 활용되었으나, KB매매가격지수 증감률 적용시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 이에 대한 부분만 설명함

〈표 16〉 양도소득세 및 추정양도소득세 산출 모형(미시변수)

항목	자료출처	모형	
		실제모형 (실제양도가액 활용)	추정모형 (추정양도가액 활용)
양도가액	국세통계센터	원본자료 사용	Ln[(연도·부동산소재지별 KB매매가격지수증감률의 평균값) × 취득가액]
취득가액	국세통계센터	원본자료 사용	원본자료 사용
필요경비	국세통계센터	원본자료 사용	원본자료 사용
= 양도차익	국세통계센터	원본자료 사용	추정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직접계산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추정장기보유특별공제 각 연도별 공제율을 이용하여 추정양도차익 곱하여 산출함 (모든 표본을 1세대 1주택으로 가정함)
= 양도소득 금액	국세통계센터	원본자료 사용	추정양도차익-추정장기특별공제
감면대상 소득금액	(미고려)		
양도소득 기본공제	직접계산	250만원	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직접계산	원본자료 사용	추정양도소득금액-250만원
x 세율	직접계산	각 연도별 양도세율 적용	추정양도소득금액을 이용하여, 각 연도별 양도세율 적용
= 산출세액	국세통계센터	원본자료 사용	추정양도소득과세표준×표준세율

출처: 저자 작성

○ 계산시 활용된 연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는 다음과 같음

〈표 17〉 연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동표

(단위: %)

구분	2012.1.1. - 2018.12.31.		2019.1.1. - 2020.12.31.		2021.1.1.이후		
적용대상/ 보유기간	토지·건물· 다주택	1세대 1주택	토지·건물 ·다주택	1세대 1주택	토지·건물 ·다주택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2년이상							8
3년이상	10	24	6	24	6	12	12
4년이상	12	32	8	32	8	16	16
5년이상	15	40	10	40	10	20	20
6년이상	18	48	12	48	12	24	24
7년이상	21	56	14	56	14	28	28

8년이상	24	64	16	64	16	32	32
9년이상	27	72	18	72	18	36	36
10년이상	30	80	20	80	20	40	40
11년이상	※ ’12.1.1.~ · 2주택 이상: 특공제인정 · 비사업용토지: - 15.12.31.까지 배제 - 16.1.1.부터는 장특공 인정 보유기간 기산일 ’16.12.31.까지는 ’16.1.1. ’17.1.1.부터는 취득일 - ’18.4.1.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배제		22		22		
12년이상			24		24		
13년이상			26		26		
14년이상			28		28		
15년이상			30		30		

출처: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의 자료를 활용함

〈표 18〉 연도별 양도세득세 세율 변동표

2021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00만원이하	6	0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이하	15	1,080,000
4천600만원초과 8천800만원이하	24	5,220,000
8천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00,000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이하	38	19,400,000
3억원초과 5억원이하	40	25,400,00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42	35,400,000
10억원초과	45	65,400,000
2018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00만원이하	6	0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이하	15	1,080,000
4천600만원초과 8천800만원이하	24	5,220,000
8천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00,000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이하	38	19,400,000
3억원초과 5억원이하	40	25,400,000
5억원초과	42	35,400,000
2017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00만원이하	6	0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이하	15	1,080,000
4천600만원초과 8천800만원이하	24	5,220,000
8천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00,000
1억5천만원초과 5억원이하	38	19,400,000
5억원초과	40	29,400,000
2014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00만원이하	6	0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이하	15	1,080,000
4천600만원초과 8천800만원이하	24	5,220,000
8천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00,000
1억5천만원초과	38	19,400,000

출처: 국세청

❑ (모형구성: 거시변수) 양도소득세 추정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의 거시변수를 활용함

〈표 19〉 양도소득세 및 추정양도소득세 산출 모형(거시변수)

항목	자료출처	적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	연도기준 평균값을 이용함
경제활동인구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천명)변수를 이용함
소비자 물가지수	국가통계포털 (KOSIS)	연도기준 평균값을 이용함

출처: 저자 작성

〈표 20〉 양도소득세 및 추정양도소득세 산출 모형(지역 및 인적특성변수)

항목	자료출처	적요
부동산소재지	국세통계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개별더미변수를 산출하여 지역특성을 통제
연령구간	국세통계센터	20세 미만=1, 20-30세미만=2, 30-40세미만=3, 40-50세미만=4, 50-60세미만=5, 60-70세미만=6, 70세이상=7로 구성되어있는 자료를 이용해 개별더미변수를 산출하여 인적특성을 통제
보유기간	국세통계센터	보유기간이 20년 초과인 경우, 20년으로 한정하며, 20년 미만인 경우 해당 보유기간을 더미로 사용

출처: 저자 작성

❑ (추정모형) 양도소득세액를 산출하기 위해 ① 미시변수, ② 거시변수, ③ 지역 및 인별특성을 통제하여 모형을 구성함

〈표 21〉 추정양도소득세 및 실제양도세 산출 모형

(추정모형)

$$Ln_양도소득세액 = \beta 0 + \beta 1 Ln_추정양도가액 + \beta 2 Ln_취득가액 + \beta 3 Ln_필요경비 + \beta 4 추정과세표준세율 + \beta 5 Ln_추정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beta 6 양도자산종류 + \beta 7 한국은행기준금리 + \beta 8 경제활동인구 + \beta 9 소비자물가지수 + \beta 10 부동산소재지 + \beta 11 연령구간 + \beta 12 보유기간 + \varepsilon$$

(실제모형)

$$Ln_양도소득세액 = \beta 0 + \beta 1 Ln_양도가액 + \beta 2 Ln_취득가액 + \beta 3 Ln_필요경비 + \beta 4 과세표준세율 + \beta 5 Ln_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beta 6 양도자산종류 + \beta 7 한국은행기준금리 + \beta 8 경제활동인구 + \beta 9 소비자물가지수 + \beta 10 부동산소재지 + \beta 11 연령구간 + \beta 12 보유기간 + \varepsilon i$$

출처: 저자 작성

○ 미시변수(6개): Ln_추정양도가액, Ln_취득가액, Ln_필요경비, 추정과세표준세율, Ln_추정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양도자산종류

- (1) Ln_추정양도가액: 양도가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KB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을 이용해서 계산함. 지역별 KB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의 평균값을 취득가액에 곱해서, 추정양도가액을 산출한 뒤 자연로그를 취하여 Ln_추정양도가액을 산출함(실제모형의 Ln_양도가액은 국세통계센터의 실제자료를 이용함)
- (2) Ln_취득가액: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제 취득가액의 자연로그를 취하여 산출함
- (3) Ln_필요경비: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제 필요경비의 자연로그를 취하여 산출함
- (4) 추정과세표준세율: 추정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추정양도차익을 산출함. 추정양도차익에서 추정장기특별보유공제금액을 차감한 뒤 추정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한뒤 추정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세율을 추정하여 산출함(실제모형의 과세표준세율은 국세통계센터의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5) Ln_추정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의 보유기간을 이용하여 연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률을 계산함. 이때 모든 주택 소유를 1세대 1주택을 가정함(실제모형의 Ln_장

기보유특별공제금액은 국세통계센터의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6) 양도자산종류: 고가주택인 경우 1를 부여하고, 기타주택인 경우 0으로 부여함.[74] 고가주택의 비율은 전체표본의 13.72%, 기타주택은 전체표본 86.28%로 확인됨

〈표 22〉 양도자산종류별 빈도분석

(단위: 개, %)

양도자산종류 (변수명)	개수	비율
고가주택 (양도자산종류==1)	11,039	13.72
기타주택 (양도자산종류==0)	69,423	86.28
Total	80,462	100

출처: 저자 작성

○ 거시변수 변수(3개): 한국은행기준금리, 경제활동인구, 소비자물가지수

- (1) 한국은행기준금리: 월별데이터로 구성되어있는 바, 년도기준으로 평균을 산출하여 반영함
- (2) 경제활동인구: 소재지-연도별 경제활동인구(천명)를 반영함
- (3) 소비자물가지수: 월별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바, 년도기준으로 평균을 산출하여 반영함

○ 지역 및 인별통제(3개): 부동산소재지, 연령구간, 보유기간

- 부동산소재지, 연령구간, 보유기간: 소재지 및 인별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부동산소재지, 연령구간, 보유기간별 더미변수를 통해 통제함
- 부동산소재지에서 경기도가 전체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38%, 서울특별시 19.84%, 부산광역시 6.09%로 나타남.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체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9%로 최저비율로 나타남

〈표 23〉 부동산소재지별 빈도분석

(단위: 개, %)

부동산소재지 (변수명)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부동산_서울)	15,967	19.84
부산광역시 (부동산_부산)	4,902	6.09
대구광역시 (부동산_대구)	3,437	4.27
인천광역시 (부동산_인천)	4,176	5.19
광주광역시 (부동산_광주)	2,527	3.14
대전광역시 (부동산_대전)	2,366	2.94

74) 국세통계연보 목적상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중 고가주택을 의미하고, 기타주택은 그 외 물건을 의미함

울산광역시 (부동산_울산)	1,157	1.44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_세종)	317	0.39
경기도 (부동산_경기)	33,294	41.38
강원도 (부동산_강원)	1,991	2.47
충청북도 (부동산_충북)	1,353	1.68
충청남도 (부동산_충남)	1,772	2.2
전라북도 (부동산_전북)	1,194	1.48
전라남도 (부동산_전남)	1,709	2.12
경상북도 (부동산_경북)	1,850	2.3
경상남도 (부동산_경남)	2,450	3.04
Total	80,462	100

출처: 저자 작성

- 연령구간에서 50세~60세미만이 전체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89%, 40세~50세미만이 전체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27%, 60세~70세미만이 전체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5%임

〈표 24〉 연령구간별 빈도분석

(단위: 개, %)

연령구간 (변수명)	개수	비율
20세 미만 (연령구간_1)	72	0.09
20세~30세 미만 (연령구간_2)	625	0.78
30세~40세 미만 (연령구간_3)	8,018	9.96
40세~50세 미만 (연령구간_4)	23,549	29.27
50세~60세 미만 (연령구간_5)	25,659	31.89
60세~70세 미만 (연령구간_6)	17,016	21.15
70세이상 (연령구간_7)	5,523	6.86
Total	80,462	100

출처: 저자 작성

- 보유기간별 빈도분석에서 3년부터 5년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38.19%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 보유기간은 전체표본에 각각 10% 미만으로 나타남

〈표 25〉 보유기간별 빈도분석

(단위: 개, %)

보유기간 (변수명)	개수	비율
2년 (보유기간_1)	3,265	4.06
3년 (보유기간_2)	12,355	15.36
4년 (보유기간_3)	9,992	12.42
5년 (보유기간_4)	8,378	10.41
6년 (보유기간_5)	6,884	8.56
7년 (보유기간_6)	5,568	6.92

8년 (보유기간_7)	4,527	5.63
9년 (보유기간_8)	4,763	5.92
10년 (보유기간_9)	6,468	8.04
11년 (보유기간_10)	5,434	6.75
12년 (보유기간_11)	4,368	5.43
13년 (보유기간_12)	3,601	4.48
14년 (보유기간_13)	2,649	3.29
15년 (보유기간_14)	1,607	1.98
16년 (보유기간_15)	603	0.75
Total	80,462	100

출처: 저자 작성

❑ 다음은 개별 모형에 대한 사용하는 주요 미시정보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와 같음

〈표 26〉 추정모형 및 실제모형 원본데이터 기술통계량

(단위: 원)

변수	추정모형					
	평균	최소값	p25	중위수	p75	최대값
산출세액	3,843,600	N/A	1,159,999	4,359,989	13,490,010	N/A
추정 양도가액	439,940,479	N/A	131,000,278	421,259,672	460,001,358	N/A
취득가액	159,972,103	N/A	89,980,182	172,319,350	302,049,056	N/A
필요경비	271,129	N/A	600,003	1,590,009	4,860,005	N/A
추정장기 보유특별 공제금액	953,772	N/A	820,000	18,458,029	16,899,929	N/A
변수	실제모형					
	평균	최소값	p25	중위수	p75	최대값
산출세액	3,843,600	N/A	1,159,999	4,359,989	13,490,010	N/A
양도가액	243,693,050	N/A	217,022,154	239,001,408	877,449,534	N/A
취득가액	159,972,103	N/A	89,980,182	172,319,350	302,049,056	N/A
필요경비	271,129	N/A	600,003	1,590,009	4,860,005	N/A
장기보유 특별공제금액	299,491	N/A	1,991,045	5,269,995	88,280,517	N/A

주: 최대값, 최소값 정보는 국세통계센터 방침으로 반출되지 않아 표시되지 아니함. 이하 동일
출처: 저자 작성

○ (추정모형) 추정양도가액의 경우 평균 439,940,479원, 중위수는 421,259,672원으로 나타났고, 추정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의 평균은 953,772원, 중위수는 18,458,029원으로 나타남

○ (실제모형) 양도가액의 경우 평균 243,693,050원, 중위수는 239,001,408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의 평균은 299,491원, 중위수는 5,269,995원임

○ (공통) 산출세액의 경우 평균 3,843,600원, 중위수는 4,359,989원으로 나타났으며, 취득가액의 경우 평균 159,972,103원, 중위수는 약 172,319,350원임. 양도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필요경비 평균은 271,129원이고, 중위수는 1,590,009원임

○ (모형정리) 양도가액과 추정양도가액의 평균의 차이는 약 1억9천6백만원정도 나타났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과 추정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의 평균의 차이는 약 6십5만원으로 나타남

- 추정양도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KB매매가격지수의 증감률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때, 국세통계 기초자료의 양도소득세 물건 소재지 정보가 광역수준까지만 입력되어 있어, 명확한 추정양도가액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한계점 존재
- 추정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1세대 1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구분 정보가 불분명하여 실제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과의 괴리가 있을 수 있음

❑ 다음은 개별 모형에 대한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와 같음

〈표 27〉 실제모형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p25	중위수	p75	최대값
Ln_산출세액	15.16192	1.857036	N/A	13.96393	15.28798	16.41746	N/A
Ln_양도가액	19.31142	0.925936	N/A	18.69071	19.29198	19.94674	N/A
Ln_취득가액	18.89051	0.931330	N/A	18.3151	18.96486	19.5261	N/A
Ln_필요경비	12.51035	5.345004	N/A	13.30469	14.27925	15.39655	N/A
과세표준 세율	0.193804	0.108781	N/A	0.15	0.15	0.24	N/A
Ln_장기보유 특별공제금액	12.60984	6.649767	N/A	13.61706	15.47754	16.64282	N/A
양도자산종류	0.137195	0.344055	N/A	0	0	0	N/A
한국은행 기준금리	1.143099	0.424244	N/A	1	1.25	1.5	N/A
경제활동인구	7160.84	4239.238	N/A	2485	8533	11234	N/A
소비자물가	1.404792	0.843625	N/A	0.5	1.5	2.5	N/A

출처: 저자 작성

〈표 28〉 추정모형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p25	중위수	p75	최대값
Ln_산출세액	15.16192	1.857036	N/A	13.96393	15.28798	16.41746	N/A
Ln_추정양도 가액	19.90215	1.091927	N/A	19.19551	19.85876	20.59253	N/A

Ln_취득가액	18.89051	0.9313309	N/A	18.3151	18.96486	19.5261	N/A
Ln_필요경비	12.51035	5.345004	N/A	13.30469	14.27925	15.39655	N/A
추정과세표준 세율	0.3180972	0.1116215	N/A	0.24	0.38	0.4	N/A
Ln_추정 장기보유 특별공제금액	13.76818	7.311172	N/A	14.50417	16.73101	18.29603	N/A
양도자산종류	0.1371952	0.3440554	N/A	0	0	0	N/A
한국은행 기준금리	1.143099	0.424244	N/A	1	1.25	1.5	N/A
경제활동인구	7160.84	4239.238	N/A	2485	8533	11234	N/A
소비자물가	1.404792	0.8436255	N/A	0.5	1.5	2.5	N/A

출처: 저자 작성

○ (추정변수)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인 Ln_양도가액과 Ln_추정양도가액의 평균은 각각 19.311, 19.902임. 실제모형의 과세표준세율 평균은 약 19.38%, 추정과세표준세율은 평균 31.80%로 나타남. Ln_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과 Ln_추정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의 평균은 각각 12.609, 13.768임

❑ (상관분석) 변수들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Ln_산출세액 기준으로 Ln_추정양도가액과 상관계수는 0.406, Ln_취득가액과 상관계수는 0.373, Ln_필요경비과 상관계수는 0.176으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확인됨

○ Ln_산출세액과 Ln_추정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과의 상관계수는 -0.164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확인됨

○ Ln_산출세액 기준으로 거시변수인 한국은행기준금리와의 상관계수는 -0.107, 경제활동인구와의 상관계수는 0.152, 소비자물가와의 상관계수는 0.088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확인됨

〈표 29〉 변수 간 상관계수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	1									
(2)	0.4067* (0)	1								
(3)	0.3732*** (0)	0.7579*** (0)	1							
(4)	0.1768*** (0)	0.2280*** (0)	0.2903*** (0)	1						
(5)	0.3415*** (0)	0.7802*** (0)	0.4567*** (0)	0.1329*** (0)	1					
(6)	-0.1646*** (0)	0.1569*** (0)	0.0374*** (0)	0.0146*** (0)	0.0298*** (0)	1				
(7)	0.0361*** (0)	0.4196*** (0)	0.4289*** (0)	0.1320*** (0)	0.2219*** (0)	0.2458*** (0)	1			
(8)	-0.1075*** (0)	-0.0905*** (0)	-0.0855*** (0)	-0.0296*** (0)	-0.1361*** (0)	0.1883*** (0)	-0.0935*** (0)	1		
(9)	0.1523*** (0)	0.1342*** (0)	0.3277*** (0)	0.1166*** (0)	0.1232*** (0)	-0.1660*** (0)	0.1826*** (0)	-0.1510*** (0)	1	
(10)	0.0881*** (0)	0.0548*** (0)	0.0016 (0.6585)	-0.0007 (0.8410)	0.0964*** (0)	-0.2086*** (0)	-0.0054 0.1256	0.2338*** (0)	0.0660*** (0)	1

출처: 저자 작성

주) 1. 변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ln_산출세액, (2): ln_추정양도가액, (3): ln_취득가액, (4): ln_필요경비, (5): 추정과세표준세율, (6): ln_추정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7): 양도자산종류(고가주택=1, 기타주택=0), (8): 한국은행기준금리, (9): 경제활동인구(천명), (10): 소비자물가지수

괄호 안의 수치는 유의 수준(p value)임

2. *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임을 나타냄

❑ (실제 Model) 다음은 국세통계센터의 실제 양도가액 미시변수,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

- ㅇ 실제데이터를 사용한 모델(실제 Model) 경우 Ln_양도가액, Ln_필요경비, 과세표준세율, 경제활동인구, 소비자물가지수가 Ln_산출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즉, 양도가액이 클수록, 필요경비가 클수록, 과세표준세율이 클수록, 경제활동인구와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을수록 산출세액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ㅇ Ln_취득가액, Ln_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양도자산종류(고가주택인 경우 '1', 그 외 '0')가 1인 경우, 한국은행기준금리가 Ln_산출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즉, 취득가액이 클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이 많을수록, 고가주택인 경우 기타주택에 비해 산출세액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한국은행기준금리가 증가할수록 산출세액은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ㅇ 모형의 적합도(R2)는 실제 Model에서 80.05%임

❑ (추정 Model) 다음은 국세통계센터의 실제 양도가액과 KB매매가격지수증감률을 활용한 추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함

- ㅇ 실제데이터를 사용한 모델(실제 Model) 경우 Ln_추정양도가액, Ln_취득가액, Ln_필요경비, 추정과세표준세율, 경제활동인구, 소비자물가지수가 Ln_산출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추정양도가액이 클수록, 필요경비가 클수록, 취득가액이 클수록, 과세표준세율이 클수록, 경제활동인구와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을수록, 산출세액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ㅇ Ln_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양도자산종류(고가주택인 경우 '1', 기타주택인 경우 '0')가 1인 경우, 한국은행기준금리가 Ln_산출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이 많을수록, 고가주택인 경우 기타주택에 비해 산출세액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한국은행기준금리가 증가할수록 산출세액은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ㅇ 모형의 적합도(R2)는 실제 Model에서 27.00%임

<표 30> 양도소득세 회귀분석

VARIABLES Dependent var: Ln_산출세액	실제모형	VARIABLES Dependent var: Ln_산출세액	추정모형
Ln_양도가액	1.746707*** (115.86)	Ln_추정양도가액	0.4277419*** (28.63)
Ln_취득가액	−1.185003*** (−99.68)	Ln_취득가액	0.3485907*** (26.99)
Ln_필요경비	0.0029059*** (5.04)	Ln_필요경비	0.0231909*** (21.12)
과세표준세율	10.79364*** (250.53)	추정과세표준세율	0.8746994*** (9.45)
Ln_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0.0382818*** (−69.41)	Ln_추정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0.0411536*** (−42.9)
양도자산종류	−1.425434*** (−108.73)	양도자산종류	−0.8866198*** (−43.89)
한국은행기준금리	−0.0924828*** (−10.43)	한국은행기준금리	−0.148515*** (−8.76)
경제활동인구	0.0001303*** (8.55)	경제활동인구	0.000074*** (2.49)
소비자물가	0.0319806*** (7.79)	소비자물가	0.0840289*** (10.65)
부동산_부산	0.6831081*** (7.99)	부동산_부산	0.2271657*** (1.37)
부동산_대구	0.8532038*** (8.64)	부동산_대구	0.392885** (2.04)
부동산_인천	0.8225676*** (8.86)	부동산_인천	−0.049928 (−0.28)
부동산_광주	0.9859855*** (8.85)	부동산_광주	0.3306322 (1.52)
부동산_대전	0.9086361*** (8.16)	부동산_대전	−0.0726429 (−0.34)
부동산_울산	0.9860008*** (8.42)	부동산_울산	0.1187658 (0.52)
부동산_세종	0.9688518*** (7.18)	부동산_세종	0.816103*** (3.12)
부동산_경기도	−0.3756373*** (−8.67)	부동산_경기도	−0.5794964*** (−6.83)
부동산_강원도	0.9082492*** (8.17)	부동산_강원도	−0.0460563 (−0.21)
부동산_충북	0.8881923*** (8.03)	부동산_충북	−0.3948238* (−1.83)
부동산_충남	0.7620281*** (7.43)	부동산_충남	−0.6239534*** (−3.12)

부동산_전북	0.9323681*** (8.62)	부동산_전북	−0.161559 (−0.77)
부동산_전남	0.8367959*** (7.71)	부동산_전남	0.0303928 (0.14)
부동산_경북	0.7173493*** (7.46)	부동산_경북	−0.257425 (−1.38)
부동산_경남	0.718351*** (8.19)	부동산_경남	−0.1770929 (−1.04)
연령구간_2	−0.1746756** (−1.69)	연령구간_2	−0.3696811* (−1.87)
연령구간_3	−0.0628462 (−0.64)	연령구간_3	−0.3846749** (−2.04)
연령구간_4	−0.0643138 (−0.66)	연령구간_4	−0.3058103 (−1.63)
연령구간_5	−0.0748086 (−0.76)	연령구간_5	−0.2286158 (−1.22)
연령구간_6	−0.0760457 (−0.77)	연령구간_6	−0.1356396 (−0.72)
연령구간_7	−0.0952277*** (−0.97)	연령구간_7	−0.0665259 (−0.35)
보유기간_2	−0.0395366*** (−2.58)	보유기간_2	0.1904779*** (6.5)
보유기간_3	0.0670989*** (4.12)	보유기간_3	0.2165534*** (6.94)
보유기간_4	0.0701042** (4.04)	보유기간_4	0.2493628*** (7.49)
보유기간_5	0.0441211* (2.27)	보유기간_5	0.3146582*** (8.42)
보유기간_6	−0.040474** (−1.71)	보유기간_6	0.3956175*** (8.66)
보유기간_7	−0.0766209*** (−2.13)	보유기간_7	0.3367209*** (4.82)
보유기간_8	−0.237048*** (−11.88)	보유기간_8	−0.1102069*** (−2.85)
보유기간_9	0.1173317*** (8.98)	보유기간_9	0.0305877 (1.2)
보유기간_10	0.1181225*** (8.74)	보유기간_10	−0.0261796 (−1.00)
보유기간_11	0.1086086*** (7.8)	보유기간_11	−0.1176569*** (−4.39)
보유기간_12	0.0772183*** (5.33)	보유기간_12	−0.1044356*** (−3.76)
보유기간_13	0.066058*** (4.33)	보유기간_13	−0.1467956*** (−5.04)

보유기간_14	0.070451*** (4.36)	보유기간_14	−0.1526165*** (−4.93)
보유기간_15	0.0563231*** (3.54)	보유기간_15	−0.1638678*** (−5.38)
Constant	1.344189*** (6.83)	Constant	0.1717248*** (0.46)
residual	−0.0000000000642	residual	0.0000000000418
Observations F−value R−squared	80,462 7332.93*** 0.8005	Observations F−value R−squared	80,462 676.11*** 0.2700

출처: 저자 작성

❑ (가중치) 실제 산출세액과 추정모형에 따른 산출세액 간의 차이를 이용해 가중치(실제산출세액/추정산출세액)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2015년-2021년까지의 추정산출세액은 5천7백6십억이고, 실제산출세액은 1조3천2백억원임. 가중치(실제양도소득세액합계/추정양도소득세액합계)의 비율은 2.291667로 설정됨

〈표 31〉 2015년−2021년 추정률 및 가중치

(단위: 원, %)

구분	실제양도소득세액 합계(a)	추정양도소득세액합계 (b)	가중치 (weight:a/b)
2015-2021	1,320,000,000,000	576,000,000,000	2.291667

출처: 저자 작성

❑ (최종예측모형) 다음과 같이 추정양도세액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도출함

〈표 32〉 추정양도소득세 산출 모형

(추정모형)

*Ln_추정양도소득세액 = [0.1717248 + (0.4277419*Ln_추정양도가액) + (0.3485907*Ln_취득가액) + (0.0231909*Ln_필요경비) + (0.8746994*추정과세표준세율) + (-0.0411536*Ln_추정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0.8866198*양도자산종류) + (-0.148515*한국은행기준금리) + (0.000074*경제활동인구) + (0.0840289*소비자물가지수) + (0.2271657*부동산소재지_부산) + (0.392885*부동산소재지_대구) + (-0.049928*부동산소재지_인천) + (0.3306322*부동산소재지_광주) + (-0.0726429*부동산소재지_대전) + (0.1187658*부동산소재지_울산) + (0.816103*부동산소재지_세종) + (-0.5794964*부동산소재지_경기도) + (-0.0460563*부동산소재지_강원도) + (-0.3948238*부동산소재지_충북) + (-0.6239534*부동산소재지_충남) + (-0.161559*부동산소재지_전북) + (0.0303928*부동산소재지_전남) + (-0.257425*부동산소재지_경북) + (-0.1770929*부동산소재지_경남) + (-0.3696811*연령구간_2) + (-0.3846749*연령구간_3) + (-0.3058103*연령구간_4) + (-0.2286158*연령구간_5) + (-0.1356396*연령구간_6) + (0.1904779*보유기간_2) +*

*(0.2165534*보유기간_3) + (0.2493628*보유기간_4) +*
*(0.3146582*보유기간_5) + (0.3956175*보유기간_6) +*
*(0.3367209*보유기간_7) + (-0.1102069*보유기간_8) +*
*(0.0305877*보유기간_9) + (-0.0261796*보유기간_10) +*
*(-0.1176569*보유기간_11) + (-0.1044356*보유기간_12) +*
*(-0.1467956*보유기간_13) + (-0.1526165*보유기간_14) +*
*(-0.1638678*보유기간_15) + 0.0000000000418] x 2.291667(weight)*

※ *추정양도소득세액 = exp (Ln_추정양도소득세액)*

출처: 저자 작성

❑ (연도별 오차율) 상기의 가중치(2.291667)를 이용해서 2015년부터 2021년의 연도별 실제양도소득세액합계와 가중치 적용 후 추정양도소득세액합계액을 비교한 결과 2015년 오차율이 -50.62%로 가장 높았고, 가장 최근인 2021년 오차율은 6.10으로 낮은 오차율을 보임.

〈표 33〉 2015년-2021년 연도별적중률

(단위: 원, %)

구분	실제양도소득세액 합계	추정양도소득세액 합계	가중치 적용 후 추정양도소득세액합계	오차율
2015	34,400,000,000	30,400,000,000	69,666,676,800	-50.62
2016	34,800,000,000	20,600,000,000	47,208,340,200	-26.28
2017	85,200,000,000	54,000,000,000	123,750,018,000	-31.15
2018	147,000,000,000	70,900,000,000	162,479,190,300	-9.53
2019	133,000,000,000	69,500,000,000	159,270,856,500	-16.49
2020	303,000,000,000	136,000,000,000	311,666,712,000	-2.78
2021	586,000,000,000	241,000,000,000	552,291,747,000	6.10

출처: 저자 작성

Ⅳ.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한 연금소득세 추정

❑ 연금 수령 인구 및 수령 금액의 증가에 따라 국세통계 미시자료를 활용한 연금소득세 추계도 본 연구에서 다루기로 함

- ㅇ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연금 소득세의 비중이 증가하고, 연금소득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ㅇ 연금소득세(원천분)의 경우 지속적으로 그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청 세수 대비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

〈표 34〉 연도별 연금소득세(원천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86,798	124,979	167,308	216,235	281,211
국세청 세수 대비 비중	0.034%	0.044%	0.059%	0.078%	0.084%

출처: 국세통계자료 2-1-2(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 국세통계센터로부터 연금소득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관련된 자료(연금소득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음)를 요청하여 그 중 연금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추정 계산하여 분석하기로 함

- ㅇ 국세청통계센터와 논의한 결과, 연금소득과 관련된 미시데이터 자체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인 방법으로 분석함
- ㅇ 자료 수집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첨부 3> 참조
- ㅇ 요청자료 리스트는 다음과 같았으며, 분석 대상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의 귀속 소득 자료이며, 과세표준 규모와 시도 기준으로 하여 표본 추출됨

〈표 35〉 연금소득세 관련 요청 자료

순번	항목	순번	항목
1	과세기간년도	22	근로소득금액
2	신고서기장의무구분코드	23	종합소득금액
3	신고서소득세신고유형코드	24	과세소득금액
4	거주자구분코드	25	인적공제금액
5	내외국인구분코드	26	기본공제금액
6	성별코드	27	추가공제금액
7	연령	28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

8	시도코드	29	기타연금보험료공제금액
9	시군구코드	30	특별공제합계금액
10	주업종코드	31	실제소득공제금액
11	업태코드	32	과세표준금액
12	총수입합계금액	33	산출세액
13	부동산사업소득총수입금액	34	소득세법세액공제금액
14	사업소득총수입금액	35	공제세액
15	부동산소득총수입금액	36	감면세액
16	근로소득총수입금액	37	결정세액
17	필요경비합계금액	38	가산세합계세액
18	소득금액	39	추가납부세액
19	부동산사업소득금액	40	총결정세액
20	사업소득금액	41	기납부세액
21	부동산소득금액	42	차감환급예정세액
		43	차감납부예정세액

출처: 저자 작성

❑ 국세통계연보의 합산 자료 상에서 연금총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 미시자료에서 연금소득에 대응되는 수치를 연금소득 관련 항목(이하, 연금총수입금액(계산), 사적연금총수입금액(계산), 연금소득세(계산)으로 명명함)으로 계산하여 분석함

- ㅇ 국세통계연보(3-1-2: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 현황)의 비율에 따라 연금소득을 추정하여 분석함

〈표 36〉 국세통계연보 상의 총수입금액 연금 비중

(단위: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수입금액	1,058,986,828	1,099,426,895	1,141,434,245	1,159,802,317	1,323,961,951
연금총수입금액	897,909	1,835,234	2,435,818	3,292,167	4,698,241
비율	0.08%	0.17%	0.21%	0.28%	0.35%

출처: 국세통계연보(3-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연금 중 사적 연금과 공적연금의 구분은 금융감독원 공개 자료를 토대로 비율을 정하여 적용함

- ㅇ 금융감독원 제시 연금 유형별 적립금 금액 자료의 비율로 사적연금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의 비중을 구분함

〈표 37〉 연금유형별 적립금 비중

(단위: 조원, %)

구 분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비중
개인연금	325.4	332	345.3	359.7	368.7	22.9
퇴직연금	168.4	190	221.2	255.5	295.6	18.3
국민연금	621.7	638.8	736.7	833.7	948.7	58.8
합계	1,115.50	1,160.80	1,303.20	1,448.90	1,613.00	100

출처: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fss/lifeplan/statsSvings/list.do?menuNo=201020)

❑ 연도별 표본의 총수입금액, 연금총수입금액(계산), 사적연금총수입금액(계산)은 아래와 같음

○ 최대값, 최소값 정보는 국세통계센터 방침으로 반출되지 않아 표시되지 아니함

〈표 38〉 총수입금액, 연금총수입금액(계산),사적연금총수입금액(계산)의 분포

(단위: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표본수	608,953	658,239	713,339	751,200	900,230	3,631,961
총수입금액						
평균	167,000,000	160,000,000	154,000,000	148,000,000	140,000,000	153,000,000
표준편차	799,000,000	587,000,000	629,000,000	586,000,000	671,000,000	656,000,000
최소값	N/A	N/A	N/A	N/A	N/A	N/A
1분위	23,400,000	23,300,000	23,100,000	22,500,000	22,200,000	22,800,000
중위수	51,600,000	49,700,000	48,700,000	47,500,000	43,600,000	47,700,000
3분위	131,000,000	126,000,000	122,000,000	117,000,000	105,000,000	119,000,000
최대값	N/A	N/A	N/A	N/A	N/A	N/A
연금총수입금액(계산)						
평균	133,748	272,003	324,032	415,244	489,471	342,570
표준편차	639,074	998,332	1,321,603	1,642,060	2,348,246	1,591,021
최소값	N/A	N/A	N/A	N/A	N/A	N/A
1분위	18,728	39,525	48,594	62,916	77,700	45,492
중위수	41,248	84,473	102,333	132,860	152,460	103,250
3분위	104,584	214,404	256,431	328,902	368,095	261,392
최대값	N/A	N/A	N/A	N/A	N/A	N/A
사적연금총수입금액(계산)						
평균	59,251	122,402	140,954	176,479	201,662	146,288
표준편차	283,110	449,249	574,897	697,876	967,477	670,815
최소값	N/A	N/A	N/A	N/A	N/A	N/A

1분위	8,297	17,786	21,138	26,739	32,012	19,751
중위수	18,273	38,013	44,515	56,466	62,814	44,284
3분위	46,331	96,482	111,548	139,783	151,655	111,971
최대값	N/A	N/A	N/A	N/A	N/A	N/A

출처: 저자 작성

❑ 상기의 연금총수입금액(계산)에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수치에 납세자별 한계세율을 적용한 연금소득세(계산)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연금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음(한도액은 900만원)

〈표39〉 연금소득공제 산식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출처: 소득세법 제47조의 2

○ 납세자별 한계세율은 연도별로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각 납세자의 과세표준금액에 대응되는 법정세율을 한계세율로 함

–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표본의 과세표준금액이 3.5억원이면 이 표본의 한계세율은 40% 임

〈표 40〉 연도별 법정세율

2021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00만원이하	6	0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이하	15	1,080,000
4천600만원초과 8천800만원이하	24	5,220,000
8천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00,000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이하	38	19,400,000
3억원초과 5억원이하	40	25,400,00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42	35,400,000
10억원 초과	45	65,400,000
2018, 2019, 2020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00만원이하	6	0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이하	15	1,080,000
4천600만원초과 8천800만원이하	24	5,220,000
8천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00,000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38	19,400,000
3억원초과 5억원이하	40	25,400,000
5억원초과	42	35,400,000
2017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00만원이하	6	0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이하	15	1,080,000
4천600만원초과 8천800만원이하	24	5,220,000
8천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00,000
1억5천만원초과 5억원이하	38	19,400,000
5억원초과	40	29,400,000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 연금소득세(계산)의 연도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연금소득세(계산)은 연금소득금액(계산)에 한계세율을 반영함
- 상당수의 표본이 연금소득공제로 인해 연금소득세(계산)이 0인 경우가 많으며, 후술되는 ln연금소득세(계산)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8의 결측치를 제거할 경우의 분포는 다음과 같음

〈표 41〉 연도별 연금소득세 기술통계량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연금소득세(계산)						
표본수	1,004	4,073	6,198	10,522	13,785	35,582
평균	978,511	1,004,522	1,185,987	1,281,825	1,235,348	1,206,824
표준편차	3,941,682	2,685,233	3,928,264	3,914,135	5,819,093	4,648,344
최소값	N/A	N/A	N/A	N/A	N/A	N/A
1분위	112,811	111,655	162,498	163,424	106,252	130,410
중위수	297,144	330,749	429,553	452,752	327,620	380,512
3분위	693,802	887,536	1,074,619	1,162,546	973,347	1,025,933
최대값	N/A	N/A	N/A	N/A	N/A	N/A

주: ln연금소득세 결측치를 제거한 경우의 분포임
출처: 저자 작성

❑ 연금총수입금액(추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거시변수와 국세통계센터 제공 자료 중 일부 변수(성별, 연령)의 상관계수, 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회귀분석의 경우 해당 모형의 설명력(R^2)은 10%대 수준임

- ㅇ 거시변수 중 GDP, 기준 금리 등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미시변수 중 성별, 연령도 유의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ㅇ 연금소득세(계산)의 경우 한계세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ㅇ 그러나 전반적으로 설명력이 10%대에 나타나는 것으로 미시 변수를 활용하여 연금총수입금액을 추정하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설명 변수의 추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분석이 가정에 따른 분석인 바 해당 분석 건의 설명력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어려우며 실제 연금소득정보를 통해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 ㅇ 비교적 일정하게 지급되는 연금의 성격으로 볼 때, 연금총수입의 경우 전년도 연금총수입(계산)과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낮은 회귀 계수를 보였으며, 반영할 경우 오히려 추정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ㅇ 단, 상기의 전년도 연금총수입(계산)도 총수입금액에서 연도별로 일정비율을 반영한 추정치임을 감안해야 함

<표 42> 변수 간 상관계수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0.3031* (0)	1												
(3)	-0.0317* (0)	0.2135* (0)	1											
(4)	-0.0152* (0)	0.0869* (0)	0.6218* (0)	1										
(5)	-0.2107* (0)	-0.3665* (0)	0.7762* (0)	0.2668* (0)	1									
(6)	0.1250* (0)	0.0012 (0.0204)	-0.0091* (0)	-0.0208* (0)	-0.0033* (0)	1								
(7)	0.0874* (0)	0.0427* (0)	-0.0257* (0)	-0.0043* (0)	-0.0520* (0)	0.0230* (0)	1							
(8)	0.1595* (0)	0.2198* (0)	-0.1301* (0)	0.0655* (0)	-0.2424* (0)	0.0204* (0)	0.1004* (0)	1						
(9)	0.1043* (0)	-0.0222* (0)	0.0027* (0)	-0.0079* (0)	0.0186* (0)	0.0250* (0)	0.0770* (0)	0.9433* (0)	1					
(10)	0.9319* (0)	-0.0339* (0)	0.0018* (0.0009)	-0.0134* (0)	0.0270* (0)	0.1313* (0)	0.0718* (0)	0.1001* (0)	0.1196* (0)	1				
(11)	0.7650* (0)	-0.0783* (0)	-0.0126* (0)	-0.0550* (0)	0.0525* (0)	0.1257* (0)	0.0532* (0)	0.0460* (0)	0.0812* (0)	0.8393* (0)	1			
(12)	0.7573* (0)	-0.0883* (0)	-0.0136* (0)	-0.0598* (0)	0.0593* (0)	0.1675* (0)	0.0571* (0)	0.0444* (0)	0.0837* (0)	0.8309* (0)	0.9660* (0)	1		
(13)	0.3130* (0)	-0.0049* (0.0003)	-0.0029 (0.0308)	-0.0154* (0)	0.0051* (0.0002)	0.1364* (0)	0.0102* (0)	0.0552* (0)	0.0626* (0)	0.3383* (0)	0.5390* (0)	0.0320* (0)	1	
(14)	0.4626* (0)	-0.0005 (0.5797)	-0.0068* (0)	-0.0145* (0)	-0.0008 (0.3859)	0.1637* (0)	0.0642* (0)	0.0902* (0)	0.0957* (0)	0.4992* (0)	-0.0405* (0)	-0.0681* (0)	0.0573* (0)	1

자료: 저자 작성

주) 1. 변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ln연금총수입금액, (2): lngdp, (3): gdp 증감률, (4): 소비자물가상승률, (5): 한국은행기준금리, (6): 연령, (7): 성별, (8): ln전년도연금총수입금액, (9): ln전년도총수입금액합계, (10): ln총수입금액합계, (11): ln부동산사업소득총수입금액합계, (12): ln사업소득총수입금액합계, (13): ln부동산소득총수입금액합계, (14): ln근로소득총수입금액합계 괄호 안의 수치는 유의 수준(p value)임

2. *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임을 나타냄

〈표 43〉 ln연금총수입금액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lngdp	8.855*** (0.0146)	9.487*** (0.0149)	9.532*** (0.0149)	-7.779*** (0.116)	-7.666*** (0.115)	-7.981*** (0.115)	0.0409 (0.0548)	-7.661*** (0.118)
gdp증감률		-3.752*** (0.0189)	-4.497*** (0.0241)	39.10*** (0.29)	38.78*** (0.287)	39.18*** (0.287)	5.763*** (0.0683)	38.65*** (0.296)
물가상승률			5.160*** (0.103)	-60.76*** (0.448)	-59.80*** (0.444)	-61.36*** (0.446)	-	-60.03*** (0.459)
기준금리				-3.304*** (0.0219)	-3.281*** (0.0217)	-3.296*** (0.0216)	-0.761*** (0.00601)	-3.267*** (0.0223)
연령					0.0125*** (-0.0000498)	0.0123*** (-0.0000508)	0.0127*** (0.0000559)	0.0122*** (0.0000517)
성별						0.272*** 0	0.203*** (0.00231)	0.223*** (0.00214)
ln전년도연금총수입금액							0.107*** (0.00059)	
ln전년도총수입금액합계								0.109*** (0.000538)
Constant	-141.7*** (0.253)	-152.5*** (0.258)	-153.3*** (0.258)	149.6*** (2.022)	147.2*** (2.004)	152.6*** (2.004)	10.03*** (0.953)	145.1*** (2)
Observations	3,621,546	3,621,546	3,621,546	3,621,546	3,621,546	3,472,908	2,715,141	3,270,659
R-squared	0.092	0.102	0.102	0.108	0.123	0.125	0.064	0.136

자료: 저자 작성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 오차임

2.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임을 나타냄

3. 물가상승률의 경우 모형7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로 변수 누락됨

〈표 44〉 ln연금소득세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lngdp	-1.504*** (0.246)	0.608** (0.285)	1.849*** (0.318)	0.924 (1.736)	0.861 (1.734)	0.765 (1.728)	-5.328*** (0.72)	-9.399*** (1.702)
gdp증감률		-3.448*** (0.239)	-1.752*** (0.307)	0.852 (4.813)	1.038 (4.807)	1.178 (4.788)	18.82*** (0.923)	31.91*** (4.72)
물가상승률			-12.69*** (1.445)	-16.85** (7.82)	-17.13** (7.811)	-17.68** (7.791)	-	-23.93*** (7.644)
기준금리				-0.193 (0.357)	-0.208 (0.356)	-0.215 (0.355)	-1.402*** (0.076)	-2.339*** (0.349)
연령					0.00753*** (0.0007670	0.00765*** (0.000798)	0.00348*** (0.000775)	0.00371*** (0.000765)
성별						0.0313 (0.0215)	0.0533** (0.0219)	0.0541** (0.0216)
ln전년도연금총수입금액							-0.0460*** (0.00623)	
ln전년도총수입금액								-0.0463*** (0.00615)
한계세율							8.926*** (0.12)	8.873*** (0.119)
Constant	38.84*** (4.262)	2.33 (4.944)	-19.05*** (5.507)	-2.848 (30.39)	-2.027 (30.36)	-0.357 (30.26)	103.0*** (12.5)	174.7*** (29.8)
Observations	41,493	41,493	41,493	41,493	41,493	37,813	34,578	35,582
R-squared	0.001	0.006	0.008	0.008	0.01	0.011	0.148	0.147

자료: 저자 작성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 오차(standard error)임

2.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임을 나타냄

3. 물가상승률의 경우 모형7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로 변수 누락됨

❑ 전년도 총수입금액과 한계세율을 토대로 한 모형8을 기반으로 분석대상기간의 연금소득세 추정액을 계산함

○ 회귀식에서 종속변수가 자연로그가 취해진 수치이므로 이에 대해 지수함수를 적용하여 추정연금소득세를 계산함

〈표 45〉 추정연금도소득세 산출 모형

- *Ln추정연금소득세 = 174.7 -9.399×lngdp +31.91×gdp증감률 −23.93×소비자물가상승률 −2.339×한국은행기준금리 +0.00371×연령+ 0.0541×성별 dummy −0.0463×Ln전년도총수입금액 +8.873×한계세율 −0.000000000382*

- *추정연금소득세 = exp (Ln 연금추정소득세)*

출처: 저자 작성

○ −0.000000000382 은 계산연금소득세와 회귀식을 통해 추정된 연금소득세 간의 잔차의 평균임

❑ 연금소득세(계산)과 연금소득세(추정) 분포는 아래와 같으며 미시 수준에서 계산된 연금소득세 합계와 추청연금소득세 합계 간의 비율은 약 2.975936:1임

○ 계산연금소득세 합계와 추청연금소득세 합계간의 비율은 약 2.975936:1로 계산연금소득세의 합계가 추정연금소득세 합계의 약 3배임

〈표 46〉 분석대상기간 전체의 추정연금소득세와 계산연금소득세 비교

(단위: 원)

변수	연금소득세(계산)	연금소득세(추정)	가중치
합계	42,941,227,366	14,429,487,440	
개수	35,582	35,582	
평균	1,206,824	405,528	
표준편차	4,648,344	192,910	
최솟값	N/A	N/A	2.975936
25분위	130,410	354,276	
중위수	380,512	408,608	
75분위	1,025,933	452,762	
최대값	N/A	N/A	

출처: 저자 작성

❑ 연금소득세(계산)와 가중치를 적용한 후 연금소득세(추정)간의 오차율은 10% 내외의 분포를 보임

○ 분석대상기간 중 가장 과거인 2017년에는 13.20%의 높은 오차율을 보인 반면, 가장 최근인 2021에는 1.53%로 낮은 오차율을 보임

〈표 47〉 연도별 추정연금소득세와 계산연금소득세 비교

(단위: 원)

연도	연금소득세(계산) 합계	연금소득세(추정) 합계	가중치 적용 후 연금소득세(추정) 합계	오차율
2017	982,425,486	291,640,097	867,902,187	13.20%
2018	4,091,417,454	1,500,850,589	4,466,434,908	-8.40%
2019	7,350,745,065	2,428,120,726	7,225,931,248	1.73%
2020	13,487,364,123	4,397,527,506	13,086,759,267	3.06%
2021	17,029,275,254	5,811,348,543	17,294,199,820	-1.53%

출처: 저자 작성

❑ 한편, 2023년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세법 개정액으로 인한 세수 변동액을 미시수준에 추정하고자 함

〈표 48〉 연금소득 세법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연금소득 분리과세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 (좌 동)
○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연간 1,500만원 이하

출처: 2023년 발표 세법 개정안

○ 위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로 인한 세액의 변동은 없으며 연금소득을 종합신고하는 납세자의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연금총수입금액이 1,200만원 이상에서 연간 1,500만원 이하되는 납세자의 부담세액의 변동 추정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변동세액은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에서 해당 납세자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차감한 세율 차이분에 연금소득금액(계산)을 곱한 값으로 예상됨

- 세수 변동액= ∑(납세자 한계세율- 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75])×연금소득금액(계산)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동세액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으며, 연금총수입금액(계산) 기준으로 해당 납세자의 분석대상기간 평균 약 25%의 세금이 추가 징수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상기의 수치는 당초 연금총수입이 종합소득 대상 소득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에서 연금 비중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해석의 유의가 필요
- 또한, 비교적 총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납세자가 연금소득종합소득합산으로 이 변경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을 고려해야 함

〈표 49〉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으로 인한 연금소득세 변동분 추정

(단위: 명,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전체 표본수	608,953	658,239	713,339	751,200	900,230	3,631,961
해당자 수[76]	6	37	50	85	183	361
연금총수입금액(추정)						
평균	29,000,000	29,800,000	30,700,000	31,500,000	32,300,000	31,600,000
표준편차	1,141,492	1,928,207	1,978,392	1,838,419	2,060,869	2,154,687
최소값	N/A	N/A	N/A	N/A	N/A	N/A
1분위	28,200,000	27,800,000	29,100,000	30,000,000	30,400,000	30,000,000
중위수	29,300,000	29,800,000	30,300,000	31,200,000	32,100,000	31,300,000
3분위	29,500,000	31,300,000	32,400,000	33,000,000	34,100,000	33,200,000
최대값	N/A	N/A	N/A	N/A	N/A	N/A
합계	174,000,000	1,102,600,000	1,535,000,000	2,677,500,000	5,910,900,000	11,407,600,000
사적연금총수입금액(추정)						
평균	12,900,000	13,400,000	13,400,000	13,400,000	13,300,000	13,300,000
표준편차	505,681	867,693	860,601	781,328	849,078	831,977

75)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표와 같음

순번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원천징수세율
1	70세 미만	5%
2	70세 이상-80세 미만	4%
3	80세 이상	3%

최소값	N/A	N/A	N/A	N/A	N/A	N/A
1분위	12,500,000	12,500,000	12,600,000	12,700,000	12,500,000	12,600,000
중위수	13,000,000	13,400,000	13,200,000	13,200,000	13,200,000	13,200,000
3분위	13,000,000	14,100,000	14,100,000	14,000,000	14,000,000	14,000,000
최대값	N/A	N/A	N/A	N/A	N/A	N/A
합계	77,400,000	495,800,000	670,000,000	1,139,000,000	2,433,900,000	4,801,300,000
연금소득금액(추정)						
평균	21,200,000	21,900,000	22,800,000	23,400,000	24,200,000	23,500,000
표준편차	1,027,343	1,735,386	1,780,553	1,654,577	1,854,782	1,939,218
최소값	N/A	N/A	N/A	N/A	N/A	N/A
1분위	20,500,000	20,100,000	21,300,000	22,100,000	22,500,000	22,100,000
중위수	21,400,000	21,900,000	22,300,000	23,100,000	24,000,000	23,300,000
3분위	21,600,000	23,300,000	24,300,000	24,800,000	25,800,000	25,000,000
최대값	N/A	N/A	N/A	N/A	N/A	N/A
합계	127,200,000	810,300,000	1,140,000,000	1,989,000,000	4,428,600,000	8,483,500,000
연금소득세 변동(추정)						
평균	5,389,993	7,079,261	8,424,918	8,665,950	7,786,006	7,969,427
표준편차	3,390,350	2,162,295	658,805	612,194	2,734,392	2,215,064
최소값	N/A	N/A	N/A	N/A	N/A	N/A
1분위	4,307,161	7,008,281	7,866,577	8,167,567	7,250,725	7,664,369
중위수	7,028,198	7,603,080	8,265,462	8,563,875	8,594,076	8,432,433
3분위	7,486,922	8,353,431	8,982,408	9,171,921	9,445,041	9,165,142
최대값	N/A	N/A	N/A	N/A	N/A	N/A
합계	32,339,958	261,932,657	421,245,900	736,605,750	1,424,839,098	2,876,963,147

출처: 저자작성

76) 추정 연금총수입금액 1,2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인 표본으로 해당 세법 개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자

V. 문제점 및 제언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세통계 기초자료는 납세자 수준의 미시 자료로서 현재의 거시 자료 기준의 세수 추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료임

- ㅇ 현재 활용되고 있는 거시 변수를 활용한 세수 추계 모형은 근래에 들어 많은 오차율을 보이고 있어 보완의 필요성이 있고, 국세통계 기초자료는 납세자 수준의 자료로서 미시기준 모형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ㅇ 특히 GDP, 이자율 등 경제 주체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 경제의 변화가 아닌 세법의 개정(e.g. 세율의 변경, 소득공제의 변경,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변경)에 따른 세수의 변동은 미시 자료를 통한 추정이 불가피함
  - 예를 들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한도 상향과 같은 세법 개정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세수의 변화는 납세자 수준의 미시 자료 분석을 통해서만 추정이 가능하며, 거시 경제 변수를 통해서는 분석이 불가능함
  -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으로 인한 세수변동의 경우에도 GDP 같은 거시 경제 변수의 변화로는 추정이 어려우며 납세자 개인 수준의 미시 데이터가 요구됨
- ㅇ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누진도가 높은 경우 미시 자료를 활용한 세수 추계는 의미가 있음
  -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4단계, 소득세 세율은 8단계의 초과누진 구조를 취하고 있어 그 단계가 비교적 많은 편이며, 미시 자료에 의거한 분석이 의미가 있음

❑ 위와 같은 국세통계 기초자료의 세수 추계 목적상 잠재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기초자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ㅇ 표본의 선정, 공개 범위, 자료의 사용 편의 등 세수 추계 목적상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음

❑ 이하에서는 국세통계센터 제공 기초자료가 세수 추계 용도로 활용되는데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함

1.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 공개 범위 및 표본 추출 기준에 대한 불분명성

❑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는 개별납세자 수준의 자료인 바, 국세청은 과세관청으로서 자료 제공에 대해 높은 신중성과 엄격한 절차를 보이고 있으나, 반면 자료를 활용하는 세수추계 연구 주체의 관점에서는 자료 파악 및 접근에 제한이 있어 자료 제공 방식의 공론화를 어렵게 하는 면이 있음

- ㅇ 과세관청으로서 기초자료가 자칫 납세자의 과세정보로 연결될 수 있을 위험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겠으나, 기초자료의 제공 범위 및 표본 추출 기준의 명확화는 세수추계 분석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논의되어야 할 대상임

❑ 이에 따라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가 일견 개별납세자 수준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음에도, 자료 제공 수준이 대외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실제 분석과정에서 분석 방향의 변경 등 현실적인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ㅇ 세무신고서상에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제공받기 어려운 항목이 적지 않으며, 이는 개별 납세자의 인적 사항이 비식별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함
- ㅇ 예를 들어 양도소득 관련 부동산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신고서에 기재 항목이긴 하나, 국세통계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항목은 아님

❑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는 대체적으로 국세통계연보에서 공개되는 통계 결과를 구성하는 개별 납세자 수준의 자료이며, 국세통계연보에서 공개되지 않는 자료는 기초자료 형식으로 수집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해당 세목을 관장하는 국세청 내부(e.g. 부동산납세과)의 승인을 통해서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ㅇ 이에 따라 개별 납세자 수준의 자료가 이미 비식별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수령 여부가 데이터의 소유부서의 판단에 의거하여 결정될 수 있음

❑ 또한 국세데이터 내의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대외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 ㅇ 앞서 서술된대로 표본 추출 방식은 국세통계연보 상의 각 항목의 표축 구간별 건수에서 10% 수준에서 무작위 추출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 방식과 더 구체적인 추출 방식은 대외적으로 문서화되어 명시되지 않음

❑ 이러한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 제공 기준의 불분명성은 세수 추계를 연구 분석하는 주체의 의견 수렴 등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에 있어 사안마다 담당 부서의 판단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불러일으킴

- ㅇ 세수 추계가 국가 재정의 시작점이고,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가 세수추계 분석 대상 자료로 활용되려면, 공개 범위과 표본 선정 기준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되는 기초자료가 어디까지 제공되고, 표본 추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 ㅇ 제공되는 자료의 기준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세수추계 목적으로 국세통계센터의 기초자료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위한 공론화의 시작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표본 추출 방법에 있어 세수 추계 유용성 문제

❑ 앞서 언급한대로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의 표본 추출 방법은 각 구간별로 10% 표본 추출하는 방식임

- ㅇ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안내 자료는 없으나 국세통계센터와 인터뷰 결과 금액 자료(e.g. 양도소득금액 등)의 경우 표축의 금액 구간내에서 10% 표본 추출
- ㅇ 예를 들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기준으로 추출한다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규모별(5-1-3) 2억초과 3억 이하 구간내에서 10% 표본 추출, 타 각 금액 구간에서도 10% 표본 추출

❑ 그러나 상기의 표본 추출 방식은 일반적으로 전체 세수에 기여도가 높은 고소득 납세자 집단을 상대적으로 낮게 반영하고, 저소득 집단을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하여 전체 세수를 대변하는 방식으로는 볼 수 없음

- ㅇ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전체 양도소득세(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준) 세수의 0.44%에 불과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그룹의 경우 신고건수가 20만건에 달하나, 전체 세수의 48%에 달하는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그룹의 신고건수는 1.5만건에 불과함. 과세표준 단위로 무작위 추출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샘플 수

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상황이 됨

〈표 5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분포

(단위: 백만원)

과세표준 규모별	신고건수	총결정세액	비율
1천만 이하	206,153	161,702	0.44%
1.2천만 이하	27,697	48,142	0.13%
3천만 이하	173,203	592,963	1.62%
4천만 이하	63,861	393,756	1.07%
4.6천만 이하	31,234	239,410	0.65%
6천만 이하	57,831	580,764	1.58%
7천만 이하	32,727	424,311	1.16%
8천만 이하	27,274	423,789	1.16%
8.8천만 이하	18,907	336,393	0.92%
1억 이하	24,125	503,754	1.37%
1.5억 이하	65,610	1,950,648	5.32%
2억 이하	36,170	1,649,987	4.50%
3억 이하	39,625	2,663,754	7.27%
5억 이하	32,908	3,792,950	10.35%
10억 이하	22,842	5,418,179	14.78%
10억 초과	15,331	17,473,496	47.67%
합계	875,498	36,653,999	100.00%

출처: 국세통계연보 5-1-3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가 세수 추계 목적으로 활용되려면 이러한 표본 추출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고소득자 계층을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 미국의 경우 총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의 소득신고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고소득자 등과 같은 특이사항에 따라 표본을 선정하여 보고서를 공개한 바가 있음[77]
- ○ 영국의 경우 고소득자 집단을 계층화하여 이에 대한 평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78]

❑ 세수 추계 목적으로 분석 주체에 특별 라이센스 제공, 특별 교육 의무화를 통해 현재보다 세수추계에 적합한 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하여 국세통계 기초자료의 이용 등급의 차등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영국의 경우 특별 라이센스(Special license)를 받은 연구자는 보다 더 자세한 데이

77) 정다운 외(2018) p.91

78)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personal-incomes-statistics-for-the-tax-year-2020-to-2021/personal-incomes-statistics-2020-to-2021-commentary#table-34---income-tax-liabilities-of-savers-basic-higher-and-additional-rate-taxpayers-by-largest-source-of-income-tax-year-2020-to-2021(검색일 : 2023. 12. 10) : Table 3.4

터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공되는 데이터는 매 제공되는 건마다 데이터 소유부서의 승인을 받게 되고, 보다 강화된 데이터 비밀유지(e.g. good data housekeeping principles) 의무를 지게 됨

- ㅇ 세수추계 목적 활용되는 데이터라면 조세특례 평가[79]시 제공되는 정도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ㅇ 이 경우 기초자료의 납세자 개인정보는 물론 비식별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연구자에게 보다 강화된 비밀정보 유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3. 국세데이터 간의 연계성 부족

❑ 앞서 논의된대로 국세통계 기초자료 수집 시 경상소득(e.g.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료와 자본소득거래(e.g. 양도소득), 이전소득거래(e.g. 상속, 증여)간의 데이터 간의 연계가 가능하지 않음

- ㅇ 이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국세통계센터 설립 당시 각 세목별 담당부서 간에 합의된 사항인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동일 자산의 보유 단계에서의 데이터와 자산의 양도 시점의 기초자료와의 연계도 가능하지 않음

- ㅇ 예를 들어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e.g. 공시가격)과 양도 단계의 양도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연계도 가능하지 않음

❑ 이러한 여건하에서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양도 이전 연도의 양도소득세 추계는 불가능함

- ㅇ 양도소득세 추계 대상 이전 연도에는 양도자산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시 자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추계하려면 대상 자산의 미래 양도 확률을 추정한 후 미래 양도가액을 추정하는 2가지 단계를 거쳐야 함
  - 미래 양도 확률을 추정하려면 양도자인 납세자의 특성(e.g. 연령, 경상소득, 지역)과 양도자산의 보유 단계에서의 특성(e.g. 가격 등)이 고려되어야 함
- ㅇ 그러나 현재의 국세통계 기초자료는 양도자의 경상소득 또는 양도 대상 자산의 보유 단계 자료와 양도자산의 양도 시점 기초자료가 연계가 불가하여 양도소득세 추

79)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계 목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음

- ㅇ 본 연구의 양도소득세 추정에서도 이미 양도 자산으로 특정된 주택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로 근본적 한계를 가짐
  - – 이미 양도된 건 중에 표본이 추출하여 분석되었고, 양도시점 이전의 자료로는 취득가액, 기타의 필요경비만이 활용되었음

❑ 한편, 국세통계센터에서는 타 기관 데이터와 결합 수행이 가능한 기관이며 해당 방법을 이용하여 납세자 식별 우려 없이 내부의 각 세목 담당부서의 데이터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ㅇ 국세통계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이고, 신용정보보호법상 데이터 전문기관이며, 결합키(e.g. 이름+생년월일+성별) 등을 이용하여 타 기관 데이터와 결합이 가능한 기관임
- ㅇ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 내부 부서 간의 데이터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은 정책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임
- ㅇ 미시 수준 자료를 토대로 세수 추계가 요구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각 세목 부서 간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협력이 필요함

❑ 또한, 세수 추계 목적으로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결합이 필요할 경우 결합에 소요되는 소요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데이터 연계가 보다 원활히 할 필요는 있음

- ㅇ 세원 확보를 위해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80]은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나 그 외 목적에서는 그만큼의 외부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ㅇ 데이터 결합 시 최소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어떠한 결합 건의 경우 1년이 지나도록 결합이 마무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결합 대상 건이 같은 행정부 기관(e.g. 국토교통부)의 데이터인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음
- ㅇ 데이터 결합시 요구되는 문서도 전체 데이터 분포가 기재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4. 기초자료의 제공 범위의 한계

❑ 앞서 언급한대로 국세통계 기초자료는 기본적으로 국세통계연보 상의 집합적 자료

8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타 정부기관,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가 확보됨

에서 납세자 수준의 미시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구조임

- ㅇ 예를 들어 국세통계연보 5-1-3의 양도소득금액규모의 집합적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납세자 수준의 미시자료를 제공함

❑ 그러나 국세통계연보 상의 모든 집합적 자료에 대해 납세자 수준의 미시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연금소득의 경우에도 그러한 자료 중 하나임

- ㅇ 국세통계연보 3-1-2(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 현황), 3-2-3(소득종류별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연금소득이 합계 수준에서 총수입금액, 소득금액이 제시되어 있고, 국세통계연보 4-4-7(거주자의 연금계좌 원천징수 신고 현황)에 원천징수 연금소득 현황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국세통계 기초자료로는 연금소득 자료는 제시되지 않음
- ㅇ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국세통계연보 5-2(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료가 합계 수준으로 제공되어 있기는 하나 납세자 수준의 기초 자료를 제공되지 않음
- ㅇ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세수 추정에서도 제한적인 접근 하에서 일정한 가정을 두어 세수를 추정함

❑ 이러한 국세통계 기초자료의 선택적 제공은 세수 추계 목적으로의 자료 유용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ㅇ 연금소득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추계의 중요성이 시간이 갈수록 중요한 세목인 바 잦은 법 개정이 예상되고, 양도소득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세목으로 많은 이해관계자가 우려하는 세목인 바 이러한 자료의 미제공은 현재의 세수 추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
- ㅇ 국세통계센터에서 이러한 기초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세수 추계 분석 주체는 관련 자료의 요청을 각 세목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밖에 없으나 해당 부서는 과세정보 비밀 유지의 이유를 들어 해당 요청에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임

❑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세통계 기초자료가 국세통계의 집합적 자료를 구성하는 미시자료로 구성한다는 원칙이 있다면 이 구성 원칙은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ㅇ 각 세목에서 미시 수준의 세수 추계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5. 국세통계센터 활용 편의 및 원격 접근 지원

❑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국세통계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서울과 세종이며, 이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여서 국세통계센터 자료 이용에 있어 시간적 제약, 지역적 차등이 있음

- ㅇ 서울과 세종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자는 센터 이용에 벽이 높은 것이 사실임
- ㅇ 서울과 세종에 있는 연구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쓸 수 밖에 없으며, 시간 제한으로 분석을 멈추어야 하는 경우 다음 방문 시 지난 번의 분석 경과를 복기해야 하는 등 연구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 ㅇ 서울의 국세통계센터의 경우 상주 인력이 없어 국세통계센터 이용 계획 시 사전에 이용 일시를 알려야 하며, 국세청 인원이 기본업무 외 부가적으로 국세통계센터 방문 연구자의 감독 및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함

❑ 연구팀당 센터 내 활용할 수 있는 pc는 1대뿐이며, 인터넷이 되지 않아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ㅇ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센터 내 활용할 수 있는 pc는 1대이어서 동일 주제로 복수의 연구자가 방문 시 동시에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일 pc를 나눠서 써야 함
- ㅇ 인터넷이 되지 않아 통계 소프트웨어(e.g. STATA)의 명령문을 다운로드 받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함

❑ 이러한 국세통계센터의 제한적 활용은 국세 자료 보안 유지 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없지는 않으나, 보안 등급을 낮출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생성하여 원격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ㅇ 영국의 Datalab의 경우 당초 센터 내에만 데이터를 공개하였으나, 현재는 영국 납세자를 대표하는 약 600,000명의 납세자에 대한 개인 소득 조사(Survey of Personal Income)의 익명화된 버전 정보를 원격에서 제공하여 연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ㅇ 현재 국세청에서 “국세데이터의 재현자료 시험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81],

81) 국세데이터 재현자료 구축에 대한 이용자 조사 설문지상의 내용으로 재현자료(Synthetic data)의 정

이 재현자료(Synthetic data)가 실제 구현된다면 이에 대한 원격 제공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6. 법령 개정을 통한 세수추계 목적을 위한 미시자료 정보 공유 강화

❑ 국세통계센터가 타 기관과의 미시자료의 제공에 대해 적극적일 수 없는 것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82]에 따른 것이며, 설사 미시자료가 비식별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데이터 공유 및 연계 과정에서 식별될 수 있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ㅇ 과세자료와 과세자료가 아닌 자료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과세정보 제공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가 있기는 하나 세수 추계를 위한 목적을 위한 예외적 규정은 없음

- ㅇ 국세기본법 상에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이 있으나, 세수 추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예외 사항은 없음

〈표 51〉 비밀유지 예외 규정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의 등은 아래와 같음 (출처: 국세데이터 재현자료 구축에 대한 이용자 조사 설문지(2023.11.22.))

- (정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유지하면서 원자료 개별값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생성된 가상의 데이터
- (생성원리)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인공지능을 통해 합성 또는 조작하여 진짜 같은 가짜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Deep Fake)을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적용

- (활용방법) 이용자가 국세통계센터 방문 전 기초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형태 및 구조 파악을 위한 사전 탐색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

8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출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83]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통계자료일 뿐 납세자 수준의 미시 자료는 아님
  - 이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체라도 제약된 조건 하의 통계 결과 자료를 받을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세수추계 분석 목적으로 과세정보 공유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의 개정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1안) 국세기본법 자체에서 수정하는 안으로 다음의 법령 개정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표 52〉 대안 1의 신구조문 대비표

종 전	개 정
<국세기본법>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중략)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2. 21.>	<국세기본법>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중략)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법령상 세수추계 목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인적정보를 비식별처리하여**

83)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4항

1. 국회의원 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1. 12. 21.> 1. 국회의원 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저자 작성

종 전	개 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중략)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중략)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 법령에 따라 세수추계업무를 하는 기획재정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세수추계 목적으로 납세자 인적정보가 비식별처리되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출처: 저자 작성

- (2안)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9호를 이용하여 다른 법률(e.g. 데이터 기반 행정법 등)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세수 추계 목적으로 활용 용도를 한정함

○ 위와 같은 안은 상기에 제안한 특별 라이센스(Special Lincense)와 연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즉 법령에서 지정된 자의 경우 일반적인 국세통계 기초자료 이상의 자료에 접근 가능함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VI. 결론

❑ 세수추계는 국가재정운용의 시작점이며, 세수추계 오차의 정도가 현저할수록 후속되는 예산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임

- ㅇ 세수 추계와 실제 세수와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정부의 공공재 제공 및 행정 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수 있음
- ㅇ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정부 이전재원(e.g. 지방교부세)에도 영향을 주어 지방정부의 행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세수추계 오차의 문제 즉 국세수입 예측력 하락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이며, 현행 세수추계는 대체적으로 거시자료에 기반한 세수예측임

- ㅇ 세수추계 오차는 언론, 감사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임
- ㅇ 현재의 세수추계 모형은 GDP 등 거시변수에 토대를 둔 모형이어서, 납세자 수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제 변화(e.g. 공제 한도, 공제율 변경 등)를 반영할 수 없는 측면도 있음

❑ 이에 따라 미시자료에 의거한 세수추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왔고, 해외에서도 미시변수를 반영한 세수추계 모형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시데이터의 공개도 이뤄짐

- ㅇ 미국, 영국 등에서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오픈 포맷을 이용해 다양하고 세분화된 세금 등의 징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ㅇ 과학적 목적 등으로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기밀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EC Regulation No. 223/2009)이 마련되었고 영국의 경우 특별허가(Special License)를 받은 연구자는 보다 자세한 납세자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 ㅇ 미국의 경우 미시자료(transcript)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우리나라 국세청(국세통계센터)에서도 2018년부터 납세자 수준의 미시자료 형태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추정을 시도하였음

- ㅇ 양도소득세는 법인세와 더불어 세수오차율이 가장 높은 세목이며, 변동성이 높은

세목임

- ㅇ 연금소득세는 세수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적정한 추계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짐

❑ 본 연구에서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연금소득세 추계를 시도하였고, 아래와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나 자료 제약 등의 문제로 설명력, 오차율 등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해 유용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ㅇ 현재 이용가능한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토대로 구성된 세수추계 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세수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27%이고, 가중치는 2.291667, 연도별 세수 오차율은 약 3%~50% 수준임

〈표 53〉 추정양도소득세 산출 모형

*Ln_추정양도소득세액 = [0.1717248 + (0.4277419*Ln_추정양도가액) + (0.3485907*Ln_취득가액) + (0.0231909*Ln_필요경비) + (0.8746994*추정과세표준세율) + (-0.0411536*Ln_추정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0.8866198*양도자산종류) + (-0.148515*한국은행기준금리) + (0.000074*경제활동인구) + (0.0840289*소비자물가지수) + (0.2271657*부동산소재지_부산) + (0.392885*부동산소재지_대구) + (-0.049928*부동산소재지_인천) + (0.3306322*부동산소재지_광주) + (-0.0726429*부동산소재지_대전) + (0.1187658*부동산소재지_울산) + (0.816103*부동산소재지_세종) + (-0.5794964*부동산소재지_경기도) + (-0.0460563*부동산소재지_강원도) + (-0.3948238*부동산소재지_충북) + (-0.6239534*부동산소재지_충남) + (-0.161559*부동산소재지_전북) + (0.0303928*부동산소재지_전남) + (-0.257425*부동산소재지_경북) + (-0.1770929*부동산소재지_경남) + (-0.3696811*연령구간_2) + (-0.3846749*연령구간_3) + (-0.3058103*연령구간_4) + (-0.2286158*연령구간_5) + (-0.1356396*연령구간_6) + (0.1904779*보유기간_2) + (0.2165534*보유기간_3) + (0.2493628*보유기간_4) + (0.3146582*보유기간_5) + (0.3956175*보유기간_6) + (0.3367209*보유기간_7) + (-0.1102069*보유기간_8) + (0.0305877*보유기간_9) + (-0.0261796*보유기간_10) + (-0.1176569*보유기간_11) + (-0.1044356*보유기간_12) + (-0.1467956*보유기간_13) + (-0.1526165*보유기간_14) + (-0.1638678*보유기간_15) + 0.0000000000418] x 2.291667(weight)*

※ 부동산소재지, 연령구간, 보유기간은 더미변수임

※ 추정양도소득세액 = exp (Ln_추정양도소득세액)

출처: 저자 작성

○ 반면 연금소득세의 경우 아예 국세통계센터에서 미시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일정한 가정하에 계산된 연금소득세로 추계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연금소득세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약 15%이고, 가중치는 약 2.975936이며, 분석대상기간의 연도별 세수 오차율은 약 2%~13%수준임

〈표 54〉 추정연금소득세 산출 모형

- *Ln추정연금소득세 = [174.7 -9.399×lngdp +31.91×gdp증감률 −23.93×소비자물가상승률 −2.339×한국은행기준금리 +0.00371×연령+ 0.0541×성별 dummy −0.0463×ln전년도총수입금액 +8.873×한계세율 −0.000000000382] x 2.975936(weight)*

- *추정연금소득세 = exp (Ln 연금추정소득세)*

출처: 저자 작성

❑ 현재의 국세통계 기초자료가 거시변수를 활용한 세수추계의 보완 목적으로 활용되기에 부족한 이유는 아래와 같으며 그에 따라 각 문제에 따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 공개 기준의 불분명성)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가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비식별처리됨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공 기준이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세수추계 분석 목적으로 표본 선정 기준, 자료 제공의 범위를 공론화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따라 기초 자료의 공개 범위, 표본 추출 등을 대외적으로 보여 공익목적으로 수행되는 세수추계 분석을 위해 어떻게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공론화의 시작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료 공개의 여부가 해당 세목 담당 부서의 승인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 분석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음

○ (표본 추출 방법의 유용성)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의 표본 추출 방법 구간별로 10% 표본 추출하는 방식이며, 해당 구간은 국세통계연보의 표축 기준으로 정해짐. 그러나 이러한 표본 추출 방식은 전체 세수에 기여도가 높은 고소득 납세자 집단을 상대적으로 작게 반영되고, 저소득 집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하여 전체 세수를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고소득자 계층을 보다 세분화하여 표본이 추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 라이센스(Special License) 제도를 적용하여 해당 등급을 가진 자는 세수 추계 목적으로 높은 데이터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세데이터 간의 연계성) 현재의 국세통계 기초자료는 동일 납세자의 경상소득 데

이터와 자본소득, 이전소득 간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지 않고, 양도 물건의 보유기간 자료(e.g. 공시지가 등)의 연계도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양도소득과 같이 일시적으로 과세소득이 실현하는 유형의 소득에 대한 세수 추계가 불가능함. 외부의 기관 데이터는 결합키를 활용하여 결합이 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국세청 내부 부서간의 데이터 연계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 (기초자료 제공 범위) 국세통계 기초자료는 일반적으로 국세통계연보 상의 통계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납세자 수준의 미시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연금소득세 자료 등 국세통계연보상에는 공시되어 있지만, 기초자료 수준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공 여부도 연구자가 확인과정을 거쳐야지 데이터의 활용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음. 기본적으로 국세통계연보에서 공시되는 통계자료의 기초자료는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어디까지 제공가능한지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센터 이용) 현재 국세통계센터는 서울과 세종에만 존재하여 이 센터에서만 자료 접근이 가능하며, 연구팀당 이용할 수 있는 pc의 제한문제, 인터넷 제약으로 통계 프로그램 명령문 사용에 제한이 있는 문제가 있음. 자료의 보안 문제로 특정 센터에 자료 접근을 한정할 수 밖에 없는 문제는 이해는 되나, 자료의 기밀성이 낮고 전체 표본을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는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현자료(Synthetic data)의 원격 접근 허용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임
- (과세정보의 접근 문제) 국세통계센터가 자료 제공에 신중성을 가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에 기인함. 따라서 자료 제공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세자 인적 정보 비식별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서 세수 추계 목적으로 특정 기관에 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관의 연구자에는 특별 라이센스(Special License)가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현재의 거시자료로 수행되는 세수추계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가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오차율이 크다고 평가되는 양도소득세와 점차적으로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소득세의 추정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수추계 목적성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음

- 연금소득세의 경우 자료의 제한으로 실제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일정 가정하에 계산된 연금소득세를 이용하여 분석이 되었다는 점

○ 양도소득세의 경우 분석대상이 주택으로 한정되었고, 자료 제한으로 인해 양도 물건의 보유 단계 정보(e.g. 양도 물건의 보유 단계의 가격 정보, 양도자의 양도 이전의 경상소득 등)가 없는 상태에서 양도 물건이 특정되어 분석이 되었다는 점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지은, “공공데이터 개방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행정법연구, 제61호, 2020.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2019년 「국세통계」 통계정보보고서.

_____, 2023년 「국세통계 해설서」

_____·국세데이터담당관실, 국세통계센터 홍보브로슈어, 2023.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 조세특례 타당성 평가를 위한 연구-2016년 정책연구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22.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박명호. 2022. “현행 세수추계 방식의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11권 제3호 : 83-140.

박훈, “4차산업혁명을 고려한 세정 및 세제의 개선방안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조세와법, 제13권 제1호, 2020.

성명재 외. “조세 재정모의실험 모형: KIPFSIM08 모형의 구축”. 한국조세연구원. 2008.

윤성만 외, 「법인세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23.

정규언, “사회변화에 따른 세무행정의 대응: 빅데이터와 AI 활용에 대한 국세청과 미국 IRS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2020년 제15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자료, 2020.

정다운 외, 「주요국의 국세통계 공개 및 제공 현황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통계청, 「2020 통계행정편람」, 20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국가통계 승인관리방안 연구”, 2019.

한국법제연구원,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경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2019.

한국재정정보원, “「데이터기반행정법」 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2020.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국가정보화백서」, 2020.

한국정보화진흥원, Global Open Data, Now. 제23호. 20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특례 타당성 평가를 위한 연구-2016년 정책연구 보고서-, 2016.

[해외문헌]

Richard Welpton, Melanie Wright, UK Data Archive, University of Essex, “HMRC Datalab: Engaging with the External Research Community,” 2011

Miguel Almunia · Jarkko Harju · Kaisa Kotakorpi Janne Tukiainen · Jouko Verho, “Expanding access to administrative data: the case of tax authorities in Finland and the UK”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2019

[보도자료]

IT Daily. “데이터 3법 후속조치,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2020.05.03.

경향신문, “3년 연속 세수오차에 “세수추계 모형부터 손질해야…외평기금 동원 궁여지책” 비판“, 2023.09.18.

아주경제, [세수 재추계 결과] 역대 최대 '적자 오차'…"추경은 없다" 재확인, 2023.09.18.

관계부처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016.6.30.

국가인권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0.1.15.

국세청, “국세청,「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 추진”, 2020.6.30.

_____,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 신설”, 2020.9.24.

_____, “국세청, 국제표준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2020.9.21.

정책위키, “데이터 3법(2020.03.30.)”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홈페이지]

가명정보결합 종합지원시스템(https://link.privacy.go.kr/nadac/index.do)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https://www.data.go.kr)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국세통계센터(https://datalab.nts.go.kr/)

미국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v)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

미국 센서스 데이터 포털(https://data.census.gov/)

영국 Companies House Service(http://data.companieshouse.gov.uk)

영국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v.uk)

영국 정부통계(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

영국 통계운용지침(https://code.statisticsauthority.gov.uk)

영국 통계청(https://www.statisticsauthority.gov.uk)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https://www.open.go.kr)

프랑스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uv.fr/)

호주 공공데이터 포털(https://data.gov.au/home)

첨부1: 국세통계연보 구조(2021년 귀속)

1. 총괄
1-1.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1-2. 국세 징세비 현황
1-3. 세목별·지역별 납세인원 현황
2. 징수
2-1. 세수 현황
2-1-1. 예산 및 세수 현황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현황
2-1-3. 지역별·세목별 세수 현황
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현황
2-2. 환급현황
2-2-1. 세목별 국세환급금 현황
2-2-2. 환급사유별 국세환급금 현황
2-3. 체납액 정리 현황
2-3-1. 체납액 정리 현황Ⅰ(지역,세목)
2-3-2 . 체납액 정리 현황Ⅱ(월)
2-3-3 . 정리중 체납액 정리 현황Ⅲ (세무서)
2-3-4 . 연도말 정리중 체납액 현황
2-3-5. 연도말 정리중체납 현황(업태)
2-3-6. 연도말 정리중체납 현황(연령)
2-3-7. 연도말 정리중체납 현황(발생기간)
2-3-8. 누계 체납액 현황Ⅰ(체납규모)
2-3-9. 누계 체납액 현황 Ⅱ (지역)
2-3-10. 누계 체납액 현황 Ⅲ (세목)
2-3-11. 누계 체납액 현황 Ⅳ (세무서)
2-3-12. 재산 압류 현황
2-3-13. 재산 공매 현황
2-3-14.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 Ⅰ(체납규모)
2-3-15.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 Ⅱ (인원)
2-3-16.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Ⅰ(체납규모)
2-3-17.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Ⅱ(인원)
2-3-18.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2-3-19.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현황
2-3-20. 체납처분 면탈범 범칙처분 현황
2-3-21.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현황
2-3-22.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2-3-23. 체납액 징수위탁 현황
2-3-24. 회생중 현황
2-4. 수납 현황

2-4-1. 세목별 국세물납 현황
2-4-2. 재산 종류별·지역별 국세물납 현황
2-4-3. 세목별 신용카드 수납현황
2-4-4. 납부수단별 수납 현황
2-5. 납세유예 실적
2-5-1. 납세유예 현황
3. 종합소득세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3-1-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Ⅰ(신고유형)
3-1-2.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 현황
3-1-3.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Ⅰ(신고유형, 주소지, 성, 연령)
3-1-4.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Ⅱ(종합소득, 과세표준)
3-1-5.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3-1-6. 종합소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
3-1-7.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Ⅰ(종합소득, 과세표준, 결정세액)
3-1-8.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Ⅱ(주소지, 성, 연령)
3-1-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현황(주소지, 성)
3-2.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3-2-1.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Ⅰ(총수입금액, 결정세액)
3-2-1-2.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Ⅱ(시·군·구)
3-2-2. 성별·종합소득 규모별 주요항목 신고 현황
3-2-3. 소득종류별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3-2-3-2.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현황
3-2-4. 업태별·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_전체 (1/17)
3-2-4. 업태별·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_농임어업 (2/17)
3-2-4. 업태별·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_광업 (3/17)
3-2-4. 업태별·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_제조업 (4/17)
3-2-4. 업태별·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_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5/17)
3-2-4. 업태별·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_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6/17)
3-2-4. 업태별·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_건설업 (7/17)
3-2-4. 업태별·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_도매및소매업 (8/17)
3-2-4. 업태별·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_숙박및음식점업 (9/17)
3-2-4. 업태별·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_운수및창고업 (10/17)
3-2-4. 업태별·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_정보통신업 (11/17)
3-2-4. 업태별·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_금융및보험업 (12/17)
3-2-4. 업태별·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_부동산업 (13/17)
3-2-4. 업태별·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_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14/17)
3-2-4. 업태별·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_교육서비스업 (15/17)
3-2-4. 업태별·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_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6/17)
3-2-4. 업태별·주소지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_기타서비스업 (17/17)
3-2-5. 소득금액 규모별·업태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

3-2-6. 수입금액 규모별·업태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
3-2-7. 종합소득세 기부금 신고 현황
3-2-8.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3-2-9.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신고 현황
3-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
3-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
3-3-2. 주소지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
3-3-3. 종합소득금액 10분위 인원 현황
3-3-4. 종합소득세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
3-4. 계정과목 신고 현황
3-4-1. 개인사업자 재무제표 주요 계정과목 신고 현황
3-4-2. 종합소득세 재무상태표 주요 계정과목 현황
3-4-3. 종합소득세 재무상태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3-4-4. 종합소득세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과목 현황
3-4-5. 종합소득세 손익계산서 세부 계정과목 명세
3-4-6. 종합소득세 원가명세서(제조) 계정과목 명세
3-4-7. 종합소득세 원가명세서(공사) 계정과목 명세
3-4-8. 종합소득세 원가명세서(분양) 계정과목 명세
3-4-9. 종합소득세 원가명세서(기타) 계정과목 명세
3-5.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3-5-1.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3-5-2.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결정·경정 현황Ⅰ(주소지, 성, 연령)
3-5-3.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결정·경정 현황Ⅱ(종합소득, 과세표준)
3-5-4. 종합소득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
3-5-5. 종합소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 현황
4. 원천세
4-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현황
4-1-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현황Ⅰ(소득종류)
4-1-2.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현황Ⅱ(원천징수지, 징수의무자유형, 본점일괄납부)
4-1-3.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현황Ⅲ(징수의무자유형, 업태)
4-1-4.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부표 신고 현황
4-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Ⅰ(총괄)
4-2-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Ⅱ(원천징수지)
4-2-3.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Ⅲ(성, 연령)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4-2-5.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Ⅴ(근로소득금액)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Ⅵ(과세표준)
4-2-7.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고 현황Ⅰ(과세대상근로소득)
4-2-8.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고 현황Ⅱ(근로소득금액)
4-2-9.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고 현황Ⅲ(원천징수지)

4-2-10.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고 현황Ⅳ(성, 연령)	
4-2-11. 주소지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연말정산 신고 현황	
4-2-12. 업태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연말정산 신고 현황	
4-2-13. 자녀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현황	
4-2-14.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지)	
4-2-15.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주소지)	
4-2-16. 근로소득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	
4-2-17.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	
4-3. 기타 연말정산 신고 현황	
4-3-1.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Ⅰ(총괄)	
4-3-2.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Ⅱ (원천징수지, 성, 연령)	
4-3-3. 거주자의 연금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4-4. 기타 원천징수 신고 현황	
4-4-1.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Ⅰ(원천징수지, 거주구분, 징수의무자)	
4-4-1-2. 주소지별 퇴직소득 신고 현황(퇴직급여액)	
4-4-2.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Ⅱ(퇴직급여액, 과세표준)	
4-4-3.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Ⅲ(10분위, 성, 연령)	
4-4-4. 퇴직소득자의 근속연수 현황Ⅰ(원천징수지, 성, 연령)	
4-4-5. 퇴직소득자의 근속연수 현황Ⅱ(퇴직급여, 과세표준)	
4-4-6.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4-4-7. 거주자의 연금계좌 원천징수 신고 현황	
4-4-8.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4-4-9.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4-4-10.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4-4-11. 주소지별 일용근로소득자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5. 양도세	
5-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5-1-1.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총괄	
5-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Ⅰ(납세지, 성, 연령)	
5-1-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Ⅰ(시·군·구)	
5-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Ⅱ(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5-1-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Ⅲ(자산종류, 보유기간)	
5-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Ⅳ(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5-1-6. 자산종류별·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5-1-7. 자산종류별·연령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5-1-8.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양도가액, 적용세율)	
5-1-8-2. 시·군·구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납세지별)	
5-1-9. 과세미달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5-1-10.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5-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5-2-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Ⅱ(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5-2-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Ⅲ(자산종류, 보유기간)
5-2-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Ⅳ(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5-2-4-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Ⅴ(시·군·구)
5-2-5. 자산종류별·보유기간별 확정신고 현황
5-2-6. 자산종류별·연령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5-2-7.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양도가액, 적용세율)
5-2-7-2. 주식 양도차익 신고 현황(상장여부, 양도차익 규모)
5-2-7-3. 시·군·구별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납세지)
5-2-8.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양도차익규모)
5-2-8-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양도차익)
5-2-8-3. 시·군·구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납세지)
5-2-9. 과세미달자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5-2-10.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5-3.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5-3-1.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Ⅰ(납세지, 성, 연령)
5-3-2.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Ⅱ(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5-3-3.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Ⅲ(자산종류, 보유기간)
5-3-4.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Ⅳ(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5-3-5. 자산종류별·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5-3-6. 자산종류별·연령별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5-3-7. 과세미달자의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5-3-8. 고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소재지, 양도차익)
5-4. 기타 양도소득세 현황
5-4-1. 고율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현황
5-4-2.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5-4-3.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세액감면 현황(1/2)
5-4-3.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세액감면 현황(2/2)
5-4-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현황(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5-4-5.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과세이연 현황
5-4-6. 양도소득세 분납 현황
5-4-7. 양도소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
5-4-8. 양도소득세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양도소득금액)
6. 상속증여세
6-1. 상속세 신고 현황
6-1-1. 상속세 신고 현황Ⅰ(납세지)
6-1-2. 상속세 신고 현황Ⅱ(총상속재산가액 등)
6-1-3. 피상속인의 연령별 상속세 신고 현황
6-1-4. 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
6-2. 상속세 결정 현황
6-2-1. 상속세 결정 현황Ⅰ(납세지)
6-2-2. 상속세 결정 현황Ⅱ(총상속재산가액 등)

6-2-3.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
6-2-4. 자산종류별 상속세 결정 현황
6-2-5. 피상속인의 연령별 결정 현황
6-2-6. 상속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6-2-7.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결정 현황
6-2-8. 연령별·자산종류별 상속세 결정 현황
6-2-9. 상속세 분위별 결정 현황 및 점유비(총상속재산가액)
6-3. 증여세 신고 현황
6-3-1. 증여세 신고 현황Ⅰ(납세지)
6-3-2. 증여세 신고 현황Ⅱ(증여재산가액 등)
6-3-3.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인원 현황
6-3-4. 수증인의 성별 증여세 신고 현황
6-3-5.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 증여세 신고 현황
6-3-6.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Ⅰ(인별)
6-3-6-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Ⅱ(납세지)
6-3-7.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결정 현황Ⅰ(인별)
6-3-7-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결정 현황Ⅱ(수혜법인)
6-3-8.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
6-4. 증여세 결정 현황
6-4-1. 증여세 결정 현황Ⅰ(납세지)
6-4-2. 증여세 결정 현황Ⅱ(증여재산가액 등)
6-4-3. 과세유형별 증여세 결정 현황
6-4-4. 증여재산종류별 결정 현황
6-4-5. 수증인의 연령별 증여세 결정 현황
6-4-6. 증여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6-4-7. 수증인의 성별 증여세 결정 현황
6-4-8.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 결정 현황
6-4-9. 창업자금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결정 현황
6-4-10. 연령별·자산종류별 증여세 결정 현황
6-4-11. 증여세 분위별 결정 현황 및 점유비(증여재산가액)
7. 종합부동산세
7-1.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7-1-1.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Ⅰ(지역)
7-1-1-2.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시·군·구)
7-1-2.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Ⅱ(10분위)
7-1-3.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Ⅲ(성, 연령)
7-1-4.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현황
7-1-5.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결정 현황
7-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7-2-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Ⅰ(지역, 납세자유형)
7-2-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Ⅱ(과세표준, 보유주택수)

7-2-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Ⅲ (1세대 1주택, 적용세율)
7-3.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7-3-1.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Ⅰ(지역, 납세자유형)
7-3-2.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Ⅱ(과세표준)
7-4.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7-4-1.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Ⅰ(지역, 납세자유형)
7-4-2.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Ⅱ(과세표준)
7-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현황
7-5-1. 종합부동산세 기타주택 합산배제 현황
7-5-2.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현황
8. 법인세
8-1. 법인세 신고 현황
8-1-1. 법인세 신고 현황Ⅰ(소재지, 업태)
8-1-2. 법인세 신고 현황Ⅱ(법인종류, 사업연도, 개업일, 상장·비상장, 영리·비영리, 법인규모, 조정구분)
8-1-3. 법인세 신고 현황Ⅲ(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8-1-4. 법인세 신고 현황Ⅳ(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8-1-5. 법인세 가산세 신고 현황
8-1-6. 법인세 기납부세액 신고 현황
8-1-7.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현황(소재지, 업태)
8-1-8.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현황
8-1-9. 법인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
8-1-10. 비영리법인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8-2.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8-2-1. 업태별·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8-2-2. 업태별·자산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8-2-3. 10분위 분포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소득금액)
8-2-4. 10분위 분포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총부담세액)
8-2-5. 세부 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8-2-6. 당기순이익(손실)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8-2-7. 중소기업의 당기순이익(손실)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8-2-8. 중소기업의 세부 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8-2-9.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8-2-10. 중소기업의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8-2-11. 중소기업의 소득금액 규모별 볍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8-2-12. 중소기업의 총부담세액 규모별 볍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8-2-13. 법인세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I(수입금액)
8-2-14. 법인세 규모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Ⅱ(수입금액, 과세표준, 법인규모, 총부담세액)
8-3. 법인세 신고 주요항목 명세서
8-3-1. 법인세 소득공제 조정명세서 신고 현황
8-3-2.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8-3-3.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현황
8-3-4. 법인세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신고 현황
8-3-5. 법인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8-3-6. 법인세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신고 현황
8-3-7. 법인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8-3-8.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 현황
8-3-9. 법인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고 현황
8-3-10.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현황
8-3-11. 법인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현황
8-3-12.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명세서 신고 현황
8-3-13. 최저한세 적용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8-3-14. 법인세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8-3-15. 법인세 광고선전비·감가상각비 신고 현황
8-3-16. 법인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 현황
8-3-17. 법인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신고 현황
8-3-18.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신고 현황
8-3-19. 법인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 현황
8-3-20.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8-4. 법인의 재무제표 신고 현황
8-4-1. 법인세 재무상태표 주요 계정과목 명세
8-4-2. 일반법인 재무상태표 신고 현황
8-4-3. 일반법인 재무상태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8-4-4.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재무상태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8-4-5. 법인세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과목 명세
8-4-6.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신고 현황
8-4-7.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계정과목 명세
8-4-8.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계정과목 명세
8-4-9. 법인세 제조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세부명세
8-4-10. 법인세 공사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세부명세
8-5. 법인세 결정·경정 및 징수 실적
8-5-1. 법인세 결정·경정에 따른 고지·환급 현황
8-5-2. 법인세 결정·경정 현황(수입금액,업태)
8-5-3. 법인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Ⅰ(사업연도 개시일이 '07.1.1. 이후인 경우)
8-5-4. 법인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Ⅱ(사업연도 개시일이 '06.12.31. 이전인 경우)
8-5-5. 법인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 현황(소재지)
8-6. 법인수
8-6-1. 지역별 가동 법인수
8-6-2. 업태별 가동 법인수
8-6-3. 지역별 신고 법인수Ⅰ(업태, 법인종류, 사업연도, 조정구분)
8-6-4. 지역별 신고 법인수Ⅱ(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8-6-5. 업태별 신고 법인수Ⅰ(지역, 법인종류, 사업연도, 조정구분)
8-6-5-2. 업태별 신고 법인수Ⅰ(시·군·구)

8-6-6. 업태별 신고 법인수Ⅱ(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8-6-7. 중소기업의 지역별 신고 법인수Ⅰ(업태, 법인종류, 사업연도, 조정구분)
8-6-8. 중소기업의 지역별 신고 법인수Ⅱ(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8-6-9. 중소기업의 업태별 신고 법인수Ⅰ(지역, 법인종류, 사업연도, 조정구분)
8-6-10. 중소기업의 업태별 신고 법인수Ⅱ(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8-7. 공익법인
8-7-1.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가동 법인수
8-7-2.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결산서류공시(표준서식) 법인수
8-7-3.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자산 현황
8-7-4.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사업수익 현황
8-7-5.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수익 세부 현황
8-7-6.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사업비용 현황
9. 부가가치세
9-1.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총괄
9-1-1.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총괄
9-1-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과세유형, 과세표준)
9-1-3.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Ⅱ(전문직)
9-1-4. 부가가치율 현황
9-1-5. 부가가치세 징수 현황
9-1-6. 총괄납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9-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9-2-1.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과세표준)
9-2-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Ⅱ(업태)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17)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2/17)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3/17)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4/17)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5/17)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6/17)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7/17)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8/17)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9/17)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0/17)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1/17)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2/17)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3/17)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4/17)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5/17)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6/17)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7/17)

9-2-4. 법인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9-2-5.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Ⅲ(업종)
9-2-6. 창업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지역, 업태)
9-2-7.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지역)
9-3.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9-3-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과세표준)
9-3-2.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Ⅱ(업태)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17)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2/17)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3/17)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4/17)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5/17)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6/17)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7/17)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8/17)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9/17)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0/17)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1/17)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2/17)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3/17)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4/17)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5/17)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6/17)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7/17)
9-3-4. 일반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9-3-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Ⅲ(업종)
9-3-6. 창업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지역,업태)
9-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9-4-1.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과세표준)
9-4-2.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Ⅱ(업태)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17)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2/17)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3/17)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4/17)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5/17)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6/17)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7/17)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8/17)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9/17)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0/17)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1/17)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2/17)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3/17)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4/17)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5/17)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6/17)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17/17)
9-4-4. 간이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9-4-5.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Ⅲ(업종)
9-4-6. 창업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지역, 업태)
9-5. 부가가치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9-5-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현황(업태)(1/10)
9-5-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현황(업태)(2/10)
9-5-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현황(업태)(3/10)
9-5-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현황(업태)(4/10)
9-5-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현황(업태)(5/10)
9-5-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현황(업태)(6/10)
9-5-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현황(업태)(7/10)
9-5-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현황(업태)(8/10)
9-5-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현황(업태)(9/10)
9-5-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현황(업태)(10/10)
9-5-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현황(1/12)
9-5-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현황(2/12)
9-5-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현황(3/12)
9-5-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현황(4/12)
9-5-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현황(5/12)
9-5-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현황(6/12)
9-5-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현황(7/12)
9-5-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현황(8/12)
9-5-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현황(9/12)
9-5-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현황(10/12)
9-5-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현황(11/12)
9-5-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현황(12/12)
9-5-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신고 현황(1/3)
9-5-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신고 현황(2/3)
9-5-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신고 현황(3/3)
9-5-4.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경감·공제세액 신고 현황(1/8)
9-5-4.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경감·공제세액 신고 현황(2/8)
9-5-4.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경감·공제세액 신고 현황(3/8)
9-5-4.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경감·공제세액 신고 현황(4/8)
9-5-4.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경감·공제세액 신고 현황(5/8)
9-5-4.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경감·공제세액 신고 현황(7/8)
9-5-4.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경감·공제세액 신고 현황(8/8)
9-5-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 현황

9-5-6.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 현황
9-5-7. 간이사업자 공제세액 신고 현황
9-6.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신고 현황
9-6-1.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신고 현황
9-6-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9-6-3.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9-6-4.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9-6-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9-7. 부가가치세 결정 경정 현황
9-7-1.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
9-7-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Ⅰ(경정유형, 과세표준)
9-7-3.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Ⅱ(지역, 업태)
9-7-4.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Ⅰ(경정유형, 과세표준)
9-7-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Ⅱ(지역, 업태)
9-7-6.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Ⅰ(경정유형, 과세표준)
9-7-7.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Ⅱ(지역, 업태)
9-7-8. 부가가치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Ⅰ('06.12.31. 이전)
9-7-9. 부가가치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Ⅱ('07.1.1. 이후)
9-8. 사업자 현황
9-8-1. 사업자 현황Ⅰ(연도)
9-8-2. 사업자 현황Ⅱ(지역, 업태)
9-8-3. 사업자 현황Ⅲ(성, 업태)
9-8-4. 사업자 현황Ⅳ(업종)
9-8-5. 사업자 현황Ⅴ(성, 연령)
9-8-6. 가동사업자 현황Ⅰ(지역, 업태)
9-8-7. 가동사업자 현황Ⅱ(사업존속연수, 지역, 업태)
9-8-8. 가동사업자 현황Ⅲ(시·군·구)
9-8-9. 가동사업자 현황Ⅳ(연령, 성, 업태)
9-8-9-2. 가동사업자 현황Ⅴ(연령, 성, 지역)
9-8-10. 폐업자 현황Ⅰ(연령, 성, 업태)
9-8-11. 폐업자 현황Ⅱ(연령, 성, 지역)
9-8-12. 폐업자 현황Ⅲ(지역, 성, 업태)
9-8-13. 폐업자 현황Ⅳ(폐업사유, 지역, 업태)
9-8-14. 폐업자 현황Ⅴ(사업존속연수, 지역, 업태)
9-8-15. 폐업자 현황Ⅵ(지역, 업태)
9-8-16. 폐업자 현황Ⅶ(시·군·구)
9-8-17. 신규사업자 현황Ⅰ(연령, 성, 업태)
9-8-18. 신규사업자 현황Ⅱ(월, 업종)
9-8-19. 신규사업자 현황Ⅲ(연령, 성, 지역)
9-8-20. 신규사업자 현황Ⅳ(지역, 성, 업태)
9-8-21. 신규사업자 현황Ⅴ(지역, 업태)
9-8-22. 신규사업자 현황Ⅵ(시·군·구)

9-8-22-2. 신규사업자 현황Ⅶ(월, 지역)
9-8-22-3. 신규사업자 현황(월, 업태)
9-8-23.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 현황
9-8-24.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현황
9-8-25. 100대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Ⅰ(지역, 업종)
9-8-26. 100대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Ⅱ(월, 업종)
9-8-27. 100대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Ⅲ(연령, 업종)
9-9. 전자 세원관리 현황
9-9-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9-9-2. 전자계산서 발급 현황Ⅰ(지역)
9-9-2-2. 전자계산서 발급 현황Ⅱ(사업자유형, 월)
9-9-3.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Ⅰ(지역, 업태, 발급금액)
9-9-4.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Ⅱ(월)
9-9-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황
9-9-6. 현금영수증 가맹점 발급 현황
9-9-7.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Ⅲ(시·군·구)
9-9-8.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Ⅳ(전문직)
9-9-9.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9-1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
9-10-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Ⅰ(수입금액)
9-10-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Ⅱ(지역, 업태)
9-10-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Ⅲ(업종)

10. 주세
10-1. 주세 신고 현황
10-1-1. 주세 신고 현황
10-1-2. 주류별·지역별 주세 신고 현황
10-1-3. 주세 감면 신고 현황
10-2. 주류 출고 현황
10-2-1. 민속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10-2-2. 지역특산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10-2-3. 소규모주류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10-3. 주류 면허 현황
10-3-1. 주류별·지역별 제조면허 현황
10-3-2. 민속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10-3-3.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10-3-4. 주류 판매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10-3-5. 주류도매업 지역별 신규면허 현황
10-3-6.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11. 소비제세
11-1. 소비제세 신고 현황 총괄

11-1. 소비제세 신고 현황 총괄
11-2.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11-3. 개별소비세 주요품목별·지역별 신고 현황
11-4. 개별소비세 감면 신고 현황
1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11-6.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신고 현황
11-7.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1/2)
11-7.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2/2)
11-8.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 현황(1/2)
11-8.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 현황(2/2)
11-8-2. 증권거래세 감면 신고 현황
11-9. 인지세 납부 현황
11-10. 인지세 과세문서 종류별 납부 현황
11-10-2. 인지세 과세문서 종류별·지역별 납부 현황
11-10-3. 인지세 상품권·선불카드 권면금액별 납부 현황
11-11. 교육세의 세원별 현황
11-12. 농어촌특별세의 세원별 현황
12. 국제조세
12-1. 외국법인 현황
12-1-1. 외국법인 업태별 현황
12-1-2. 외국법인 업태별 법인세 신고 현황
12-1-3.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Ⅰ(소재지, 업태)
12-1-3-2.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Ⅰ(국가)
12-1-4.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Ⅱ(수입금액, 자산, 사업연도종료일)
12-1-5.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Ⅲ(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12-1-6. 외국법인 당기순이익(손실)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12-1-7. 외국법인 주요업태별·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12-1-8. 외국법인 분위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수입금액)
12-2. 외국인투자법인 현황
12-2-1. 외국인투자법인 업태별 현황
12-2-2. 외국인투자법인 업태별 법인세 신고 현황
12-2-3. 외국인투자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Ⅰ(소재지, 업태)
12-2-4. 외국인투자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Ⅱ(수입금액, 자산, 사업연도종료일)
12-2-5. 외국인투자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Ⅲ(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12-2-6. 외국인투자법인 당기순이익(손실)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12-2-7. 외국인투자법인 재무상태표 신고 현황
12-2-8. 외국인투자법인 손익계산서 신고 현황
12-2-9. 외국인투자법인 감면 현황
12-2-10. 외국인투자법인 업태별·수입금액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12-2-11. 외국인투자법인 분위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수입금액)
12-3. 외국인 소득세 신고 현황

12-3-1. 외국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12-3-2. 외국인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Ⅰ(주소지)
12-3-3. 외국인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Ⅱ(종합소득, 과세표준)
12-3-4.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12-3-5.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항목 신고 현황
12-3-6. 외국인근로자 국가별 현황
12-3-7.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소득종류)
12-4. 외국계기업 국내진출 현황
12-4-1. 외국계기업 국내진출 현황
12-5.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12-5-1.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Ⅰ(신고자유형, 계좌종류)
12-5-2.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Ⅱ(국가)
13. 세무조사
13-1. 개인사업자 조사 현황
13-1-2. 개인사업자 정기·비정기 조사 현황(지방청, 업태)
13-2. 양도소득세 조사 현황
13-3. 법인사업자 조사 현황(1/2)
13-3. 법인사업자 조사 현황(2/2)
13-3-2. 법인사업자 정기·비정기조사 현황(지방청, 업태)
13-4. 부가가치세 조사 현황
13-5.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현황
13-6. 주식변동 조사 현황
13-7. 자료상 조사 현황
13-8.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 현황
13-9. 탈세제보자료 처리 현황
13-1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
13-11. FIU 제공정보 이용 조사 현황
13-12. FIU 제공정보 체납징수 활용 현황
13-13. 상속·증여세 조사 현황
13-14. 차명계좌신고 처리 현황
13-15.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13-16. 가짜석유 불법유통 추적조사 현황
13-17.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업태별 조사 현황
13-18. 중점관리 분야 조사 현황
14. 근로자녀장려금
14-1. 근로·자녀장려금 신고현황 총괄
14-1-1. 근로·자녀장려금별 신청·지급현황(주소지)
14-2. 근로·자녀장려금별 신청 현황
14-2-1. 근로·자녀장려금별 신청 현황(성, 가구유형, 연령, 자녀수)
14-2-2.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Ⅰ(성, 가구유형, 연령, 자녀수)
14-2-3. 소득종류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Ⅰ(성, 가구유형, 연령, 자녀수)

14-2-4.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Ⅱ(근무업종, 근로유형)
14-2-5. 소득종류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Ⅱ(근무업종, 근로유형)
14-2-6.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Ⅲ(총급여액 등)
14-2-7. 소득종류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Ⅲ(총급여액 등)
14-2-8. 주소지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Ⅰ(총급여액 등)
14-2-9. 주소지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Ⅱ(연령)
14-2-10. 주소지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Ⅰ(총급여액 등)
14-2-11. 주소지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Ⅱ(연령)
14-2-12.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Ⅰ(신청규모)
14-2-13.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Ⅱ(주소지)
14-2-14.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Ⅰ(신청규모)
14-2-15.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Ⅱ(주소지)
14-2-16. 가구 유형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1/2)
14-2-16. 가구 유형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2/2)
14-2-17. 자영업자 유형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업태)(1/2)
14-2-17. 자영업자 유형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업태)(2/2)
14-2-18. 업종별 조정률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총급여액 등)(1/2)
14-2-18. 업종별 조정률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총급여액 등)(2/2)
14-2-19. 사업장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총급여액 등)(1/2)
14-2-19. 사업장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총급여액 등)(2/2)
14-2-20. 근로·자녀장려금별 신청 현황Ⅰ(세무서)
14-2-21. 근로·자녀장려금별 신청 현황Ⅱ(시·군·구)
14-2-22.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현황(주소지)
14-2-23. 주소지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Ⅲ(성, 가구유형, 자녀수)
14-2-24. 주소지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Ⅳ(근무업종, 근로유형)
14-2-25. 주소지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Ⅲ(성, 가구유형, 자녀수)
14-2-26. 주소지별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Ⅳ(근무업종, 근로유형)
14-2-27. 가구 유형별 근로소득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1/2)
14-2-27. 가구 유형별 근로소득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2/2)
14-2-28. 근로·자녀장려금 분위별 신청 현황 및 점유비
14-3. 근로·자녀장려금별 지급 현황
14-3-1. 근로·자녀장려금별 지급 현황(성, 가구유형, 연령, 자녀수)
14-3-2.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Ⅰ(성, 가구유형, 연령, 자녀수)
14-3-3. 소득종류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Ⅰ(성, 가구유형, 연령, 자녀수)
14-3-4.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Ⅱ(업종, 재산)
14-3-5. 소득종류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Ⅱ(업종, 재산)
14-3-6.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Ⅲ(총급여액, 지급규모)
14-3-7. 소득종류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Ⅲ(총급여액, 지급규모)
14-3-8. 주소지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14-3-9. 주소지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14-3-10. 주소지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1/2)
14-3-10. 주소지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2/2)

14-3-11. 주소지별 근로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등)(1/2)
14-3-11. 주소지별 근로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등)(2/2)
14-3-12.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Ⅰ(산정구간)
14-3-13.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Ⅰ(산정구간)
14-3-14. 가구 유형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Ⅰ(산정구간)(1/2)
14-3-14. 가구 유형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Ⅰ(산정구간)(2/2)
14-3-15. 가구 유형별 근로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Ⅰ(산정구간)(1/2)
14-3-15. 가구 유형별 근로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Ⅰ(산정구간)(2/2)
14-3-16. 연령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14-3-17. 연령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14-3-18. 연령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1/2)
14-3-18. 연령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2/2)
14-3-19. 연령별 근로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1/2)
14-3-19. 연령별 근로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2/2)
14-3-20. 근무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14-3-21. 근무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14-3-22. 재산 규모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14-3-23. 재산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14-3-24. 재산 규모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1/2)
14-3-24. 재산 규모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2/2)
14-3-25. 재산 규모별 근로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1/2)
14-3-25. 재산 규모별 근로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2/2)
14-3-26.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Ⅱ(총급여액, 지급규모)
14-3-27.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Ⅱ(총급여액, 지급규모)
14-3-28. 가구 유형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Ⅱ(총급여액, 지급규모)(1/2)
14-3-28. 가구 유형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Ⅱ(총급여액, 지급규모)(2/2)
14-3-29. 가구 유형별 근로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Ⅱ(총급여액, 지급규모)(1/2)
14-3-29. 가구 유형별 근로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Ⅱ(총급여액, 지급규모)(2/2)
14-3-30. 지급횟수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연령, 주소지)
14-3-31. 지급횟수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연령, 주소지)
14-3-32.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Ⅲ(연령, 주소지)
14-3-33.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Ⅲ(연령, 주소지)
14-3-34. 가구 유형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Ⅲ(연령, 주소지)(1/2)
14-3-34. 가구 유형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Ⅲ(연령, 주소지)(2/2)
14-3-35. 가구 유형별 근로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Ⅲ(연령, 주소지)(1/2)
14-3-35. 가구 유형별 근로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Ⅲ(연령, 주소지)(2/2)
14-3-36. 자영업자 사업장 유형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업태, 업종별 조정률, 재산)(1/2)
14-3-36. 자영업자 사업장 유형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업태, 업종별 조정률, 재산)(2/2)
14-3-37. 업종별 조정률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등, 지급규모)(1/2)
14-3-37. 업종별 조정률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등, 지급규모)(2/2)
14-3-38. 사업장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등, 지급규모)(1/2)
14-3-38. 사업장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등, 지급규모)(2/2)

14-3-39. 세무서별 근로·자녀장려금별 지급 현황
14-3-40. 근로·자녀장려금별 지급 현황(시·군·구)
14-3-41. 근로·자녀장려금 분위별 지급 현황 및 점유비
14-4.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
14-4-1.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Ⅰ(성, 가구유형, 연령, 자녀수)
14-4-2.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Ⅱ(근무업종)
14-4-3.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현황Ⅲ(총급여액 등, 신청규모)
14-5.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4-5-1.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Ⅰ(성,가구유형,연령,자녀수)
14-5-2.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Ⅱ(업종,재산)
14-5-3.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Ⅲ(총급여액, 지급규모)
14-5-4. 주소지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14-5-5. 연령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14-5-6. 근무 유형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14-5-7. 재산 규모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14-5-8. 가구유형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Ⅰ(산정구간)
14-5-9. 가구 유형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Ⅱ(총급여액, 지급규모)
14-5-10. 가구 유형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Ⅲ(연령, 주소지)
14-5-11. 세무서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1/7)
14-5-11. 세무서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2/7)
14-5-11. 세무서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3/7)
14-5-11. 세무서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4/7)
14-5-11. 세무서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5/7)
14-5-11. 세무서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6/7)
14-5-11. 세무서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7/7)
15. 기타
15-1. 납세자 권리 구제
15-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Ⅰ(처리기관, 세목)
15-1-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Ⅱ(납세자유형)
15-1-2. 이의신청 처리 현황Ⅰ(지방청, 세목)
15-1-2-2. 이의신청 처리 현황Ⅱ(납세자유형)
15-1-3. 심사청구 처리 현황Ⅰ(지방청, 세목)
15-1-3-2. 심사청구 처리 현황Ⅱ(납세자유형)
15-1-4. 행정소송사건 처리 현황
15-1-5.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15-2. 납세자 권리 보호
15-2-1. 고충민원 처리 현황
15-2-2.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
15-2-3. 국세증명 민원서류 발급 현황
15-2-4. 지역별·환산보증금액별 확정일자 부여 현황
15-3.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 등

15-3-1.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1/4)
15-3-1.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2/4)
15-3-1.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3/4)
15-3-1. 주요세목 전자신고 현황(4/4)
15-3-2.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 현황
15-3-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현황
15-3-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 정리 현황
15-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미리납부 현황
15-3-5-2. 취업 후 학자금 장기미상환자 조사(소득·재산) 현황
15-3-6. 국세상담센터 상담 현황

첨부 2: 데이터명세서(예시)[84]

1. 기초자료 작성 항목

데이터 명세	■ 결합신청기관명	필수
	■ 원본 데이터 크기(레코드 수)	필수
	■ 원본 데이터 생성 방법	필수
	■ 원본 데이터 세부 항목별 명세 (범위, 개수 등)	필수
	■ 원본 예시(표)	필수
	■ (익명처리된)평가 대상 데이터 세부 항목별 명세	필수
	■ 평가 대상 데이터 (예시 또는 일부 레코드도 가능)	필수
가명(익명) 처리 현황	■ 식별자, 개인식별가능정보 등 구분	필수
	■ 적용된 가명(익명)처리 기준(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등) 및 수치	필수
	■ 가명(익명)처리 기법 · 세부기술	필수
이용기관	■ 가명정보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필수

※ 위의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위원회에 제출
※ 분량 제한 없음

2. 기초자료 개요(작성예시 포함)

❑ 모든 세부 항목에 대해서 아래의 개요에 맞게 작성하되 분량 제한 없음

가. 데이터 명세

1) 원본 데이터 특성

항목	내용
결합신청기관명	*A카드*
데이터 크기(용량)	*20.5 GB*
데이터 레코드수	*25,000,000*
데이터 컬럼수	*20*
데이터 생성방법	*19년~20년 A카드 이용자에 대한 카드상품 신청/이용/탈퇴 등의 내부정보 및 외부 조회 정보*
결합데이터 활용목적	*B은행의 신규 신용카드 결합상품 개발시 참고하기 위한 통계작성*
결합데이터 이용기관	*B은행*

84) 국세통계센터(https://datalab.nts.go.kr/) 안내 자료

2) 원본 데이터 세부 항목별 명세

가) 정보 개요

No.	정보영역	항목건수	비중	정보영역설명
1	KEY	1	5.0%	결합키
2	신청정보	6	30.0%	19~20년 A카드 여신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정보
3	결제정보	8	40.0%	19~20년 A카드를 통한 결제정보
4	대출정보	2	10.0%	19~20년 A카드 대출/상환과 관련된 정보
5	기타정보	3	15.0%	19~20년 A카드 여신서비스 이용자의 소득, 세금납부 정보
Total		20	100.0%	

나) 정보항목별 상세

No.	정보원천	자료형태	정보영역	컬럼명	항목명(국문)	항목 설명	분포현황작성	제출데이터예시	비고 (데이터출처)
1	KEY	-	결합키	A_key	결합키	작성 불요		작성 불요	작성 불요
2	내부정보	수치형	신청정보	column2	연령			90	
3	내부정보	범주형	신청정보	column3	성별			남	
4	내부정보	범주형	신청정보	column4	직업코드	○○기관의 직업코드 활용	○	20201	
5	내부정보	수치형	신청정보	column5	신청일자			20180101	
6	내부정보	수치형	신청정보	column6	계좌개설일자			20180101	
7	내부정보	수치형	신청정보	column7	개설상품 건수		○	14	
8	내부정보	수치형	결제정보	column8	KK카드상품 결제금액	A카드의 KK카드상품	○	70000	
9	내부정보	수치형	결제정보	column9	MM카드상품 결제금액	A카드의 MM카드상품	○	70000	
10	외부	범	대출	colum	카드대출	전체	○	7	○○신용평가회

	정보	주형	정보	n10	연체액 등급	카드대출상품 연체액을 15000단위로 1~7까지로 범주화			사 데이터 조회
11	외부 정보	수치형	대출 정보	column11	카드대출 상환액	전체 카드대출상품	○	500000	○○신용평가회사 데이터 조회
12	외부 정보	수치형	기타 정보	column12	소득금액		○	500000	○○청 데이터 조회
13	외부 정보	수치형	기타 정보	column13	건강보험료납부액		○	500000	○○공단 데이터 조회
14	외부 정보	수치형	기타 정보	column14	지방세납부액		○	500000	○○청 데이터 조회

3) 가명처리 요약

가) 데이터 전체 적용

가명처리 방법			
No.	익명처리	대상 컬럼	설명
1	샘플링	전체 데이터	전체 데이터 80% 샘플링 적용
2	모델링(K-익명성)	연령, 성별, 직업코드, 신청일자, 계좌개설일자	k=3 적용하여k=3 미만레코드삭제처리

나) 데이터 컬럼별 적용

기본 정보						가명처리 방법					예시	
No.	자료형태	정보영역	컬럼명	항목명(국문)	항목설명	가명처리1	단위/기준	가명처리2	단위/기준	미적용 사유	처리전	처리후
1	-	결합키	A_key	결합키	작성불요	작성 불요	작성불요	작성불요	작성불요	작성 불요	작성불요	작성불요
2	수치형	신청정보	column2	연령		상단코딩	90				99	90
3	범주형	신청정보	column3	성별						성별 소비패턴이 반드시 필요하여 미적용	-	
4	범주형	신청정보	column4	직업코드	○○기관의 직업코드 활용	범주화					-	
5	수치	신청정보	column5	신청일자						내부 원본정보이므로 분리되면 재식별 위험성	-	

	형									낮음		
6	수치형	신청정보	column6	계좌개설일자						내부 원본정보이므로 분리되면 재식별 위험성 낮음	-	
7	수치형	신청정보	column7	개설상품건수						내부 원본정보이므로 분리되면 재식별 위험성 낮음	-	-
8	수치형	결제정보	column8	KK카드상품 결제금액	A카드의 KK카드상품	라운딩(절삭)	10000				77,985	70,000
9	수치형	결제정보	column9	MM카드상품 결제금액	A카드의 MM카드상품	라운딩(절삭)	10000				77,985	70,000
10	범주형	대출정보	column10	카드대출 연체액 등급	전체카드대출상품연체액을 15000단위로 1~7까지로 범주화	범주화	15000				222,000,000	7
11	수치형	대출정보	column11	카드대출 상환액	전체카드대출상품	라운딩(절삭)	10000	상단코딩	500000		222,000,000	500000
12	수치형	기타정보	column12	소득금액		라운딩(절삭)	10000	상단코딩	500000		222,000,000	500000
13	수치형	기타정보	column13	건강보험료납부액		라운딩(절삭)	10000	상단코딩	500000		222,000,000	500000
14	수치형	기타정보	column14	지방세납부액		라운딩(절삭)	10000	상단코딩	500000		222,000,000	500000

4) 분포현황

가) 범주형 변수 분포현황(※ 최종 제출하는 데이터 중 민감 또는 주요 정보에 대하여 작성하며, 평가 중 추가 작성 요청이 있을 수 있음)

No.	컬럼명	항목명(국문)	컬럼값	세부 설명	빈도수	구성비
4	*column4*	*직업코드*	*20201*	*금융업*	*160*	*13.95%*
			20202	*건설업*	*170*	*14.82%*
			20203	*서비스업*	*153*	*13.34%*
			20204	*유통업*	*160*	*13.95%*
			20205	*정보통신업*	*186*	*16.22%*
			20206	*농업*	*164*	*14.30%*
			20207	*수산업*	*154*	*13.43%*
10	*column10*	*카드대출 연체액 등급*	*1*	*0~15000*	*160*	*13.95%*
			2	*15001~30000*	*170*	*14.82%*
			3	*30001~45000*	*153*	*13.34%*
			4	*45001~60000*	*160*	*13.95%*
			5	*600001~75000*	*186*	*16.22%*
			6	*75001~90000*	*164*	*14.30%*
			7	*90001~*	*154*	*13.43%*

나) 수치형 변수 분포현황(※ 최종 제출하는 데이터 중 민감 또는 주요 정보에 대하여 작성하며, 평가 중 추가 작성 요청이 있을 수 있음)

No.	컬럼명	항목명 (국문)	최소값	1분위수 (25%)	2분위수 (중앙값)	3분위수 (75%)	최대값
7	*column7*	*개설상품 건수*	*0*	*5*	*13*	*20*	*25*
8	*column8*	*KK카드상품 결제금액*	*0*	*10000*	*40000*	*70000*	*77985*
9	*column9*	*MM카드상품 결제금액*	*0*	*10000*	*40000*	*70000*	*77985*
11	*column11*	*카드대출 상환액*	*0*	*100000*	*250000*	*500000*	*222000000*
12	*column12*	*소득금액*	*0*	*100000*	*250000*	*500000*	*222000000*
13	*column13*	*건강보험료 납부액*	*0*	*100000*	*250000*	*500000*	*222000000*
14	*column14*	*지방세납부액*	*0*	*100000*	*250000*	*500000*	*222000000*

첨부 3: 데이터 수집과정

1. 양도소득세

❑ 당초 연구진은 양도소득세 추정 계획 시 국세통계센터의 데이터 연계 제한을 염두하고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과의 데이터 결합을 추진하였음

- ㅇ 앞서 언급한 대로 국세통계센터에서 납세자의 경상소득(e.g. 근로소득 등)과 양도소득을 연계한 데이터는 제공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음

❑ (1차 시도) 아래와 같이 국세청으로부터는 경상소득 정보 그리고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는 양도 물건 관련 정보를 결합하여, 양도: 미양도 비율을 1:5로 구성하려 하였으나 아래의 사유로 자료 수집에 실패하였음

- ㅇ 국세통계센터에서는 양도와 미양도 건의 정보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답변
- ㅇ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에서도 동일인의 양도가액과 매수가액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결국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고, 가공이 요구되는 것인 바 진행하기가 어렵고, 부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사유로 거부

〈첨표 1〉 1차 시도 데이터 요청 자료(양도, 미양도 포함)

순번	항목	부서	순번	항목	부서
1	가중치	국세청	14	매매가액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2	소득분위층	국세청	15	취득시점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3	지역	국세청	16	취득가액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4	성별	국세청	17	보유주택수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5	연령	국세청	18	보유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6	총수입금액	국세청	19	주소(가능한 범위)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7	근로소득총수입금액	국세청	20	층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8	인적공제금액	국세청	21	면적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9	기본공제금액	국세청	22	양도주택 t년 기준시가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10	추가공제금액	국세청	23	양도주택 t-1년 기준시가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11	양도시점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24	양도주택 t-2년 기준시가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12	양도자 연령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25	양도주택 t-3년 기준시가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13	양도자 성별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26	전세보증금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출처: 저자 작성

❑ (2차 시도) 미양도 건과 보유 건 간의 결합이 어려울 경우 양도 건의 양도 이전 보유 단계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으나 아래의 사유로 자료 획득에 실패

○ 국세청에서는 양도 건이라 하더라도 양도 이전의 보유 단계와 관련된 정보(보유주택수, 보유 단계에서의 기준시가)는 제공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됨. 또한 국토교통부와의 전세보증금 정보와의 결합도 불가한 것으로 거부됨

〈첨표 2〉 2차 시도 데이터 요청 자료(양도건만 포함)_한국부동산원 포함

순번	항목	부서	순번	항목	부서
1	과세기간년월	국세청	13	양도소득금액	국세청
2	신고구분코드	국세청	14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국세청
3	가중치	국세청	15	과세표준금액	국세청
4	소득분위층	국세청	16	산출세액	국세청
5	지역	국세청	17	보유기간	국세청
6	성별	국세청	18	양도주택 t년 기준시가	국세청
7	연령	국세청	19	양도주택 t-1년 기준시가	국세청
8	양도자산종류구분코드	국세청	20	양도주택 t-2년 기준시가	국세청
9	양도가액	국세청	21	양도주택 t-3년 기준시가	국세청
10	취득가액	국세청	22	보유주택수	국세청
11	필요경비	국세청	23	층	부동산원
12	양도차익금액	국세청	24	면적	부동산원
			25	전세보증금	부동산원

출처: 저자 작성

〈첨표 3〉 2차 시도 데이터 요청 자료(양도건만 포함)_한국부동산원 제외

순번	항목	부서	순번	항목	부서
1	과세기간년월	국세청	12	양도차익금액	국세청
2	신고구분코드	국세청	13	양도소득금액	국세청
3	가중치	국세청	14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국세청
4	소득분위층	국세청	15	과세표준금액	국세청
5	지역	국세청	16	산출세액	국세청
6	성별	국세청	17	보유기간	국세청
7	연령	국세청	18	양도주택 t년 기준시가	국세청
8	양도자산종류구분코드	국세청	19	양도주택 t-1년 기준시가	국세청
9	양도가액	국세청	20	양도주택 t-2년 기준시가	국세청
10	취득가액	국세청	21	양도주택 t-3년 기준시가	국세청
11	필요경비	국세청	22	보유주택수	국세청

출처: 저자 작성

❑ (3차 시도) 다음과 같이 국세청 단독으로 제공 가능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예정신고 자료만 확보함

- ㅇ 앞서 언급한대로 확정신고 자료는 정확성 문제로 제공이 어렵다고 답변함
- ㅇ 보유기간 정보는 제공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여 추가 요청함
- ㅇ 추출 기준을 과세표준 규모와 시도 기준으로 하여 추출 요청함

〈첨표 4〉 3차 시도 데이터 요청 자료(양도 건만 포함)

순번	항목	부서	순번	항목	부서
1	과세기간년월	국세청	9	양도가액	국세청
2	신고구분코드	국세청	10	취득가액	국세청
3	가중치	국세청	11	필요경비	국세청
4	소득분위층	국세청	12	양도차익금액	국세청
5	지역	국세청	13	양도소득금액	국세청
6	성별	국세청	14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국세청
7	연령	국세청	15	과세표준금액	국세청

8	양도자산종류 구분코드	국세청	16	산출세액	국세청
			17	보유기간	국세청

출처: 저자 작성

2. 연금소득세

❑ (1차 시도) 당초 연구진은 연구 계획 시 아래와 같이 요청 자료 내역을 구성하여 국세통계센터에 미시데이터를 요청하였음

○ 아래의 자료를 연금소득 분리과세 건과 종합과세 건으로 나누어 수집 후 각각의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하였음

〈첨표 5〉 1차 시도(연금) 요청 자료

순번	구분			순번	구분
1	귀속년도			14	총수입금액(연금 외)
2	가중치			15	필요경비(연금 외)
3	소득분위층			16	소득금액(연금 외)
4	연령대			17	종합소득금액
5	성별			18	기본공제
6	지역			19	추가공제
7	총연금액	공적연금	국민연금	20	종합소득공제
8			그외 공적연금	21	과세표준
9		사적연금	연금저축	22	산출세액
10			그외 개인 연금	23	세액공제
11		퇴직연금		24	결정세액
12	연금소득공제			25	원천징수세액(연금)
13	연금소득금액			26	원천징수세액(연금 외)
				27	차가감납부세액

출처: 저자 작성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경우 재원과 세무처리 차이로 인해 이들을 분리하여 자료 요청함

- 연금재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재원의 성격에 따른 별도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분리과세 적용 여부(공적연금: 종합소득 합산 과세, 사적연금: 분리과세 가능), 분리과세 기준금액 적용 여부(사적연금: 사적연금 연 1200만원 이하),

원천징수 방법(공적연금: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사적연금: 일정률[85])에 따른 원천징수), 연금외 수령 시의 소득 분류 차이(사적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 퇴직소득) 등을 고려함

❑ 그러나, 국세통계센터에서 원천징수된 연금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종합소득되는 신고자료도 연금만 따로 분리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답변

- ㅇ 원천징수된 세금과 관련된 자료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분만 이용 가능함
- ㅇ 종합소득으로 신고된 세금의 경우에도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하나로 통합된 자료만 존재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된 연금소득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이는 별지 제40호 서식(1)과 별지 제40호 서식(4)에서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별도의 명세서로 표시되지 않고, 동일한 명세서에서 별도의 코드로 나눠짐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국세청통계센터와 추가적으로 논의한 결과, 연금소득 원천분은 미시데이터 자체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ㅇ 국세통계센터가 기본적으로 국세통계연보를 생성하는 조직으로 현재 제공되는 미시데이터는 국세통계연보 구성 자료의 일부이며, 국세통계연보에서 구성되지 않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미시데이터로 제공되지 않음
- ㅇ 그러나, 종합소득과 합산되는 원천분에 대해서는 국세통계연보에서 일부 항목만 통계표가 제공되고, 그에 대응하는 미시데이터도 제공되는데, 연금소득은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ㅇ 참고로 소득세법 별지24호 서식(5)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다음의 사항이 작성 요구되고 있음

85)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소득자 나이에 따라 다음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은 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

순번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원천징수세율
1	70세 미만	5%
2	70세 이상-80세 미만	4%
3	80세 이상	3%

〈첨표 6〉 소득세법 별지24호 서식(5) 내용

순번	항목	순번	항목
1	법인명	20	종합소득공제(부양가족)
2	대표자	21	종합소득공제(경로우대)
3	사업자등록번호	22	종합소득공제(장애인)
4	법인등록번호	23	종합소득공제(부녀자)
5	소재지	24	종합소득공제(한부모)
6	소득자 성명	25	소득공제 계
7	소득자 주민등록번호	26	종합소득 과세표준
8	소득자 주소	27	산출세액
9	귀속연도	28	세액감면(소득세법)
10	감면기간	29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11	총연금수령액	30	감면세액 계
12	연금제외소득	31	세액공제(자녀)
13	장애연금 등 비과세연금	32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14	총연금액	33	세액공제(외국납부)
15	총연금액	34	세액공제 계
16	연금소득공제	35	결정세액
17	연금소득금액	36	기납부세액
18	종합소득공제(본인)	37	차감징수세액
19	종합소득공제(배우자)	38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출처: 저자 작성

❑ (2차 시도) 이에 따라 국세통계센터로부터 (연금소득이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그 중 연금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추정하여 분석하기로 함

○ 요청자료 리스트는 다음과 같았으며, 추출 기준을 과세표준 규모와 시도 기준으로 하여 추출 요청함

〈첨표 7〉 2차 시도(연금) 요청 자료

순번	항목	순번	항목
1	과세기간년도	22	근로소득금액
2	신고서기장의무구분코드	23	종합소득금액
3	신고서소득세신고유형코드	24	과세소득금액
4	거주자구분코드	25	인적공제금액
5	내외국인구분코드	26	기본공제금액
6	성별코드	27	추가공제금액

7	연령	28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
8	시도코드	29	기타연금보험료공제금액
9	시군구코드	30	특별공제합계금액
10	주업종코드	31	실제소득공제금액
11	업태코드	32	과세표준금액
12	총수입합계금액	33	산출세액
13	부동산사업소득총수입금액	34	소득세법세액공제금액
14	사업소득총수입금액	35	공제세액
15	부동산소득총수입금액	36	감면세액
16	근로소득총수입금액	37	결정세액
17	필요경비합계금액	38	가산세합계세액
18	소득금액	39	추가납부세액
19	부동산사업소득금액	40	총결정세액
20	사업소득금액	41	기납부세액
21	부동산소득금액	42	차감환급예정세액
		43	차감납부예정세액

출처: 저자 작성